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5권 중 제5권

2005. 12.

농 립 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 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5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 현재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사업중 27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 이 지침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 maf.go.kr](http://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fax 031-299-8800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령 및 사업수행상 주의사항

1. 균특회계 설치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 사업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편성 및 지원하는 지역발전지원 시스템 마련
- 지방주도하에 지역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 발전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2. 예산신청안내

- 기획예산처는 시·도 협의를 거쳐 시·도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시달(4월중)
- 시·도는 신청한도내에서 본청 및 시·군·구의 예산신청을 종합·조정하여 부처 및 균형위에 예산신청(4. 30)
- 농림부는 지자체의 신청(안)에 대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및 중복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5.31)
- 균형위는 지자체 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예산처에 제출
- 예산처는 농림부 및 균형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3. 사업수행상 주의사항 안내

- 각 시도 및 시군은 균형발전특별회계소관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부문투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 한 농림사업실시규정상의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행하여 농림사업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차 례

제1권 관계규정해설

I. <u>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u>	1
1. 배경	2
2. 주요골자	3
3. 주요변경사항	7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12
제4장 농림사업	13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0
제6장 보칙	22
II. <u>농림사업실시규정</u>	24
III. <u>FTA 기금 과수지원사업</u>	70
1. 배경	71
2. 주요골자	73
3. 주요변경사항	77
4. 해설	82
IV. <u>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u>	101
V. <u>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u>	129
VI. <u>기타주요사항</u>	248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249

제2권 농업(식량작물, 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254

I. 생산기반확충 255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56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자율) 319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329
4. 수리시설개보수(공공) 339
 -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40
 - ② 저수지 준설사업 350
 - ③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67
5. 중규모 용수개발(공공) 376
6.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400
 - ① 지하수 자원관리 400
 -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406
 -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426
 -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430
7. 농지조성(공공) 435
 -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435
 -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453
8.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자율) 471
 - ① 해외 품종보호 출원비용 지원 472
 - ② 신품종 등록품종 개발비 지원 477

II. <u>농업기계화</u>	482
9.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83
10. 농기계임대사업(자율)	538
11. 농기계생산지원(공공)	554
12. 농기계보관창고지원(자율)	570
13.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자율)	573
III. <u>생산 및 유통개선</u>	587
14.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자율)	588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DSC)지원사업	588
②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603
『<u>농업(원예)구조개선</u>』	618
I. <u>생산기반확충</u>	619
15.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자율)	620
16. 과수원정비지원사업(자율)	657
II. <u>원예생산 및 유통개선</u>	685
17.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율)	686
①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686
②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698
18.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자율)	753
19. 인삼계열화사업(자율)	799
20. 농산물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자율)	806
21.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공공)	818
22.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827

23.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832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832
② 축산물자조금조성	843
24.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853
①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853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860
25.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867
26.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871
27. 우수농산물지원(공공)	892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892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899
28.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공공)	922

III.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947

29.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자율)	948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95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037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1066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078
⑤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111
30.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공공)	1129
31.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1150
32.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1184
33. 과원폐원지원사업(자율)	1203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I. <u>사료사육기반확충</u>	227
34. 사료사업지원(자율)	1228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228
② 사료산업 종합지원	1266
35.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율)	1275
36. 경주마 육성(공공)	1303
37. 한우사업지원(공공)	1310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310
② 품질고급화 장려금	1321
38. 가축개량사업(공공)	1335
39.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자율)	1387
40. 양봉산업육성(자율)	1398
II. <u>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u>	413
41.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1414
①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1414
② 축산물 등급판정	1437
③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442
42.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공공)	1449
①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1449
② 가축계열화	1487
③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 체인점 지원	1499
④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1506

43.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1521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1521
② 축산물검사	1528
③ HACCP 컨설팅지원	1539
④ 가축방역	1545
⑤ 가축공제	1567
44.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572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45. 친환경농업육성(자율)	158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585
②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620
46.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637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47.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1679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679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1686
③ 농업정보서비스 사업	1695
④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702
48. 농림기술개발(공공)	1715
49. 기술보급(공공)	1724
① 새기술보급시범	1724
② 농업인전문교육	1731

III. <u>인력육성</u>	736
50.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율)	1737
① 창업농지원사업	1737
② 농업인턴제	1774
③ 창업농후견인제	1804
51. 농업인자녀지원(공공)	1832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32
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845
52.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849
53.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공공)	1879
IV. <u>소득보전</u>	913
54. 농업직접지불제(공공)	1914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1914
② 친환경직접지불	195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1967
④ 조건불리지역직불제	2013
⑤ 친환경축산직불	2049
55. 농업인재해공제(공공)	2092
56.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공공)	2099
57. 취약농가 인력지원(자율)	2112
V. <u>소득원개발</u>	133
58.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2134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134
② 관광농원	2153
③ 농어촌민박사업	2174

59.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2186
60.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2217
①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2217
② 농업인경영회생지원	2224
VI. <u>생활환경개선</u>	235
61. 폐비닐 수거비 지원(자율)	2236
『<u>임업 및 산촌구조개선</u>』	242
I. <u>경영기반 확충</u>	243
62.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자율)	2244
63. 영림계획(자율)	2247
64. 사방사업(공공)	2252
65.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공공)	2257
II. <u>생산 및 유통개선</u>	260
66. 임산소득증대(자율)	2261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261
② 조정수·분재생산	2274
③ 산림복합경영	2281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2287
67. 산림조합육성(공공)	2295
68. 임산물유통개선 지원(공공)	2298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298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2336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342
69.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율)	2348

III. 인력육성	386
70.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2387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2387
② 임업기술지도	2393
③ 사유림협업경영	2397
IV. 산림자원조성	401
71. 해외조림투자지원(자율)	2402
72.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2408
73.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공공)	2420
74. 식물자원 보전관리(공공)	2427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 <u>발기반정비(공공)</u>	2431
76. <u>농지기반조성(공공)</u>	2460
① <u>경지정리사업</u>	2460
② <u>기계화경작로확포장</u>	2493
77. <u>배수개선(공공)</u>	2510
78. <u>방조제개보수(공공)</u>	2535
79. <u>농촌용수개발(공공)</u>	2552
① <u>한발대비용수개발</u>	2552
② <u>소규모용수개발</u>	2559
③ <u>지표수보강개발</u>	2582
80. <u>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공공)</u>	2601
81. <u>지역특화사업(공공)</u>	2614
82. <u>씨감자 생산기반조성(공공)</u>	2629

83.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2633
84.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자율)	2644
85. 농산물소비지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	2688
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2688
② 소비자밀착형직판장지원	2701
86.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2711
87.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2717
88.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공공)	2725
89. 농어촌생활환경정비(공공)	2742
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742
② 전원마을조성사업	2767
90.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2826
91. 농공단지육성(공공)	2854
92. 묘목생산기반조성(공공)	2872
93. 산촌개발(공공)	2878
94. 목재이용 가공지원(공공)	2888
①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2888
②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2895
95. 자연휴양림 조성(공공)	2898
96. 도시숲조성관리(공공)	2905
97.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공공)	2911
98. 생태숲조성(공공)	2917
99. 임도시설(공공)	2922
100. 야생화타운 조성(공공)	2927
101.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공공)	2930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주호, 토목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0ha이상의 우량지구부터 우선 추진)을 대상으로 정비
- 정주권 개발 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원예특작 생산 유통 지원, 품목별 주산단지 등과 병행 실시하여 효율성 제고
- 영농편리 및 농가소득 증대 위주로 개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내지 제12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9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이후
사 업 량		59	5.0	4.7	4.4	106.9
사 업 비	계	1,309,584	148,896	127,191	104,611	2,802,318
	보 조	1,029,845	115,507	102,146	84,032	2,254,970
	용 자	-	-	-	-	-
	지방비	279,739	33,389	25,045	20,579	547,348
	자부담	-	-	-	-	-

* 사업량은 착수면적 기준임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용수원 개발 : 밭작물 관개용수 개발(암반관정, 양수장 등)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 밭경지 정리 : 원지형을 살리되, 토사유실방지대책과 함께 밭두렁 정리 또는 경지 정리

나. 지원기준

(1) 재 원 : 기준단가의 8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분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부담(20%이상)

(2) 기준단가 : 25,410천원/ha(평균단가)

※ 기준단가와 개발유형별 지원내용을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신청 가능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단가의 90% 이내 지원

○ II 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용수개발+밭경지정리
- 단가의 100% 지원

○ III 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단가의 110%까지 이내 지원

※ 용수개발중 암반관정 개발은 재배작물의 소비량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발

다. 2006년도 사업비 내용

(면적: ha, 금액: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04,611	84,032	84,032	-	20,579	-
사업비	4,375	102,893	82,314	82,314	-	20,579	-
조사설계비	4,100	1,718	1,718	1,718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02-500-1993, 1997)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농정과, 농축산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농업지원과 등)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 시·도지사는 주 관개 용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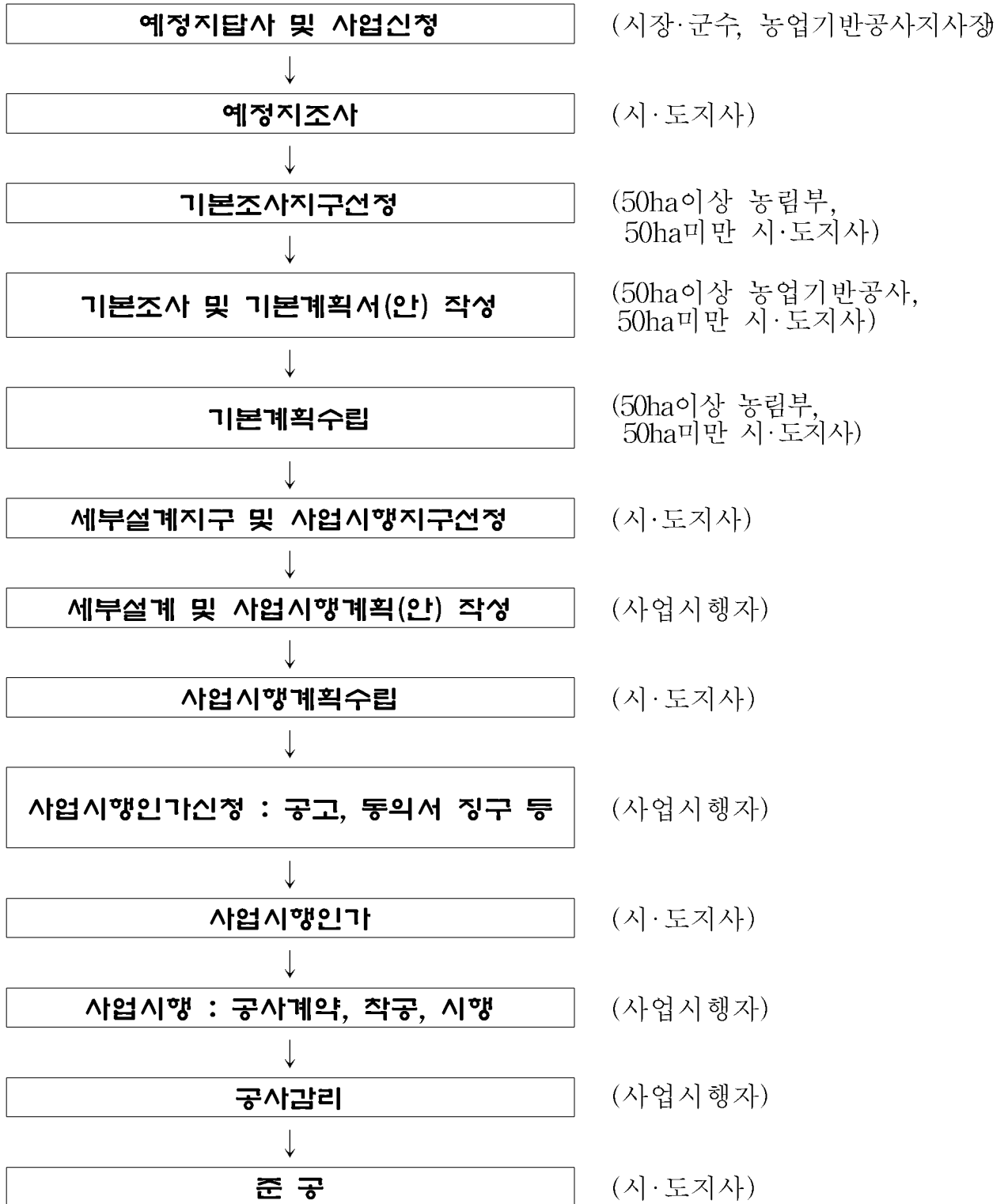
- 사업신청 → 예정지 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그림 1의 사업추진체계도 참고.

<그림 1>

받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 주 관개 용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마늘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마늘주산단지내의 밭기반정비 대상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
- '01~'02기간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밭면적이 30ha 이상 지구를 우선 선정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가 잘되고 있는 지구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농업진흥지역 또는 사업 시행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구
- 경사도가 15°이하이며, 토양, 토심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구
- 사업완료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되어 있으며, 정주권 개발, 마을정비,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및 경지정리 사업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지목이 밭 또는 과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부상 지목은 논이나 실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은 인근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에 포함개발 가능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대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여타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선정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업무내용	시행기관	완료기한
○사업예정지보고	시·도지사	전년 1월중	○지하수영향조사	시장·군수	연중
○기본조사지시	장관	전년 3월중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연중
○기본계획수립 - 50ha이상 - 50ha미만	장관 시·도지사	전년 11월중	○사업시행인가보고	"	인가즉시
○사업량 및 예산신청	시·도지사	4월중	○공사발주	시장·군수	인가즉시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 시행지구 선정	시·도지사	1~2월중	○추진상황보고	시·도지사	매분기말 익월10일
			○준공결과보고	시·도지사	즉시

※ 사업추진 및 예산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

나. 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1) 받기반정비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민대표,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특히 재배작물의 용수 수요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배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작로 정비 등 필요한 공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수혜구역에 대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개발용수량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논에 대한 용수공급 가능)
-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으로 급수면적을 늘리므로써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도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공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며,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하여 농업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발관개 계획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1998.12 농림부)의 발관개 분야 계획설계기준에 따라 조사설계 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 및 경작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밭작물 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지방도 등 상위 도로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작·진입로 공종은 제외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제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

(5) 밭경지정리

-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토심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
 - 밭두렁만을 정리(밭두렁정리)
 - 경사지에 원지형을 살려 정지(경사정지)
 - 평탄지 또는 시설농업을 위한 수평정지 등
- 정지계획 수립시에는 유기질 토양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계획하며, 무리한 정지계획은 지양.
 - 토지소유자가 시설 농업 등의 영농을 계획하고 있어 수평정지를 원하며, 토양보존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수평정지 추진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의 최소화를 위해 경사면 안정화, 유출방지 둔덕 설치 등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

(6) 고랭지 밭 비점오염저감대책

- 고랭지 경사진 밭에 경지정리 등 정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사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토사유실방지대책을 수립 추진
 - 대책 : 완충식생대, 빗물우회수로, 자연식생수로, 식생밭두렁, 낙차공, 침사지 등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농업인은 마을회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 (2)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지사장)는 사업 예정지가 '01~'02 기간중 조사한 밭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3)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채소류 주산단지 포함여부와 작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 (4)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예정지 조사대상은 '01~'02기간중 조사한 받기반정비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 요구 등 불가피하게 대상지 외의 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한후 대상지 보완조사시 반영하여야 함
- (5)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한 내용중 위 (3)항의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별 사업 우선 순위를 부여한 예정지조사 보고서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함(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수혜면적이 50ha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기본계획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위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3)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답사시 조사하여야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함과(별지 제2호 서식) 동시에 시·군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수혜면적이 50ha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함
- (3)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여부, 주민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 하여야함.
- (4)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작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할 것이며,
 - 특히 재배작물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는 작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6)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작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작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작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공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여부
 -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사업, 경지정리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혜민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고랭지 경사진 밭에 대한 토사유실방지대책(밭 경지정리에 한함)
-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8)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9) 농림부장관은 50ha이상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50ha미만)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10)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지구 중에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함

- (11)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적정 신규사업착수 예산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이 안된 지구를 예산신청할 경우에는 '01~'02년에 조사된 받기반정비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중에서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12) 시·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마.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중에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하여 위탁함
-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6)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33조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중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 활용코자 하는 등으로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 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 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7)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발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9)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작목 등에 따라 1~3년으로 설정함
- 발작물은 연중 계속 재배되는 지역이 많아 공사기간과 중복되어 휴경 보상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ha 이하 및 단순공종 시행지구는 1년
 - 수혜면적 50ha 이상인 복합공종사업 및 타사업연계지구는 2년
 - 지역종합개발차원에서 시행되는 수혜면적 150ha 이상 지구는 3년
- (10)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시행후 농업인이 지역여건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11)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로 집행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사추진

-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추가 부담함
- (3) 사업시행자는 시공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여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4)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함
- (5) 시공업체는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 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아. 용지매수 및 보상

- (1) 발경지정리로 감보처리할 수 있는 지구는 용지매수 대상에서 제외함
- (2)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자.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차.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2)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농업기반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 (5)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카.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1)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

타.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사업추진시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조직 구성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파. 기 타

- (1)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을 억제함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받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 제4호의 7 서식을 이용하여 “받기반시설”로 등록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받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부)의 “받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받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나. 보 고

보 고 사 항	서 식	보고기일	비 고
○ 예정지 조사결과보고	1	전년 1.31	
○ 기본계획수립결과보고	2	전년 11.30	
○ 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인가결과보고	3	인가후 즉시	시·도지사가
○ 공사입찰결과보고	4	입찰완료후	총괄보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5	분기말 익월 10일	
○ 준공결과보고	6	준공즉시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대상지 : '01~'02일제조사결과 받기반정비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작목반, 농업인 대표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군에 신청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군에 신청
 - 임의서식에 작성하여 신청(위치, 대상면적, 수혜농가수, 신청인 등 명기)
- 시장·군수는 예정지 답사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건의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자체 가26-16

받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I No	지구명	위치		수혜면적			소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요시설						채소류산단지정여부	작목별생산자단체조직여부	경사도	토지소유자	주민호응도	비고		
			시·군	읍·면	계	진	비진	총사업비	ha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명	%			

- ※ ○ Code-No는 행정조사결과 부여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채소, 과수, 특작, 화훼 등 대표 재배작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밭 경지정리+농로개설, 밭경지정리+용수개발
 - III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국고차등보조제에 따른 보조율,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사업지구 현황

- 위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고시 현황

품 목				
단지명				

- 주요 재배작목

재배작목				
구성비율(%)				

- 작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HP), 암반관정 : 개소(HP)
 - 양 수 장 : 개소(HP x mm x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현재 이용중인 농로등 시설현황
 - 토공농로 조 km, 포장농로 조 km
 - 기타 이용시설, 발경지정리 현황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공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 · 경작로 :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지역여건 및 재배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I 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II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또는 밭 경지정리 + 농로개설 사업
- III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밭경지정리 사업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국고차등보조 대상 여부 : 여, 부 (국고 보조율 : %)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첨부할 것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 고,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병행 가능사업

- 사업명 :
 - 추진상황

- 기 타

사업시행상 문제점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 우수사업지구 선정조건 위주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자체 가26-17

받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 선 순 위	Code 1 No	지 구 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 지 구 분	개 발 유 형	필 요 시 설					토 지 소 유 자	지 방 비 부 담 력
			시 · 군	읍 · 면	계	진 흥	비 진 흥	총 사 업 비	ha당			수 원 공 정 [^] V	진 입 로	경 작 로	용 수 로	정 지 공 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 응 도	채 소 류 주 산 단 지 지 정 여 부	작 목 별 생 산 자 단 체 조 직 여 부	사 업 지 원 회 의 여 부	사 업 시 행 에 따 른 예 상 문 점	조 사 설 계 여 부	비 고
사 업 명	관 련 기 관	예 산 확 보 여 부	관 련 기 관 과 협 의 내 容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받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년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이상 동의), 보통(67%이상 동의), 불량(67%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조사설계여부 : 세부설계 대상지구는 ○표, 세부설계 제외지구는 ×표로 표시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 논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등을 받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받으로 이동으로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자체 가26-18

받기만정비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 순위	지구 명	위 치		수혜 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05까지			'06이후			인 가 연월일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연계 사업 지구는 연계사업명을 표기
- '06이후 사업비에 '06계획 금액을 () 내서로 표기
-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협의후 인가

[별지 제4호 서식]

총26-67

받기만정비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 명	위 치		사 업 시 행 자	사 업 량	총사업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 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별지 제5호 서식]

총26-45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도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05까지	'06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자 시 행 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받기반정비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작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군	읍·면		진 흥	비진흥	채 소	화 훼	과 수	특 작	계	국고	지방비	수원관공정 개소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 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별지 제7호 서식]

받기반정비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m ³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m ³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받 경 지 정 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 타 특 기 사 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후 면)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mm					
심 도	m					
채수가능량	m ³ /일					
양 수 량	m					
우물파이프	m					
우물유공관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수중모타펌프	Hp					
제 품 명						
설 치 심 도	m					
양 수 장 옥	m ²					
저 수 조	m ³					
(재 질)						
송 수 관	m					
(재 질)						

① 경지정리사업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주호, 토목 사무관 박종훈)입니다.

1. 목 적

-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규모화·현대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 농업기반정비와 농촌환경개선 도모
- 평야부 우량농지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반경지정리는 논면적 1,127천ha중 720천ha를 목표로 추진
 - 2004봄까지 720천ha완료 (농업진흥지역은 634천ha 추진)
 - 2004가을착수부터 5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 대구획경지정리는 보전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논구획 협소,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한 164천ha 계획목표로 추진
 - 2004봄까지 92천ha(56%) 완료
 - 2004가을착수부터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이나 필지규모 및 농로 협소, 용·배수로 겸용등 영농여건이 열악한 73천ha를 중심으로 추진
 - 2006봄에 4.7천ha 완료계획, 가을착수 4.5천ha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일반경지정리 사업량(천ha)		209	1.3(-)	-	-
사 업 비	계	5,134,806	21,915	-	-
	국 고	3,555,774	17,532	-	-
	지 방 비	1,548,616	4,383	-	-
	자 부 담	30,416	-	-	-
○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량(천ha)		87	4.6(4.7)	4.3(4.9)	4.7(4.5)
사 업 비	계	2,153,653	102,324	121,791	113,732
	국 고	1,722,252	82,159	97,801	91,323
	지방교부금	371,315	-	-	-
	지 방 비	60,086	20,165	23,991	22,409

※ 사업량은 봄마무리 구역면적기준, ()는 가을착수 사업량임.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사장
-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대구획경지정리]

- 지원단가(재개발형) : (기준)26,080천원/ha, (평균)27,907천원/ha, (상한)28,690천원/ha

※ 재개발형을 기준으로 집단화형은 90%, 시설개량형은 80%수준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 일반경지정리 50ha 미만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시행

○ 사업내용

- 재래의 불규칙하고 세분화된 필지를 규격화 및 규모화
- 농기계 출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신설 및 확장 정비
- 용수로와 배수로의 체계적인 정비
- 작토층 확보를 위한 객·복토 등 토층개량
-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규모화를 위한 환지
- 농사용 공동이용시설 부지조성 (집하장, 건조장 등)

나. 2006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조	지방비	자부담
대구환경지정리		113,732	91,323	22,409	-
○ 사 업 비		112,045	89,636	22,409	-
- 봄마무리	4.7	97,506	78,010	19,496	-
- 가을착수	4.5	14,539	11,626	2,913	-
○ 조사설계비	4.5	1,687	1,687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자)
- 사업시행자 : 시·군 구역은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구역은 농업기반공사 사장
 - 시·군, 공사 혼합구역 : 시장·군수와 농업기반공사가 협의하여 결정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림 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Tel.02-500-1994·6,Fax. 02-502-6733)
- 시·도 : 인천 농정과, 경기 농업정책과, 강원 농산지원과, 충북 농산지원과, 충남 기반조성과, 전북 농업지원과, 전남 농업기반과, 경북 농업기반과, 경남 농업지원과
- 시·군 : 시군 건설과 또는 농정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도본부, 지사

다. 자금지원대상 :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통상의 사업시행절차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고시·동의서징구,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공사계약 및 착공, 일시이용지 지정, 공사완공, 본환지 및 등기의 순으로 하며,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1)과 같음.

(1)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신청

-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 농지상태와 영농불편사항, 주민호응도 비율, 지방비부담능력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03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대상지(목표물량)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으로의 편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향을 기술

(2) 예정지 조사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영농불편으로 농지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여부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가능성, 농업용수의 확보(수원공 및 지구외 간선수로)와 주변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도로계획 등 관련 타사업을 조사하고, 지방비 확보가능성, 수혜자들의 동의여부 등 신청내용확인결과를 예정지 조사서에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다음 년도 사업시행대상지구 우선순위를 농림부에 보고하면서 수혜면적이 100ha이상인 지구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기본조사를 신청하여야 함.

(3) 기본조사실시

- 농림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예정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형편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의한 시·도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기본조사 지구를 선정 통보함(조사비용부담은 (13)예산의 지원 참조)
- 수혜면적 10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실시함. 다만, 100ha미만에 대한 기본조사는 시·도지사가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실시하고, 50ha미만 지구는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본조사자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조사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도로계획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시 문제가 예상되거나, 수혜면적 100ha이상이 100ha미만으로, 50ha이상이 50ha미만으로 축소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를 실시함.
 - 현지조사시 영농불편사항(용·배수로, 농로 등)과 집단환지선호, 대구획화 실효성, 사전환지, 농지감보, 농업진흥지역편입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지적이라도 주민반대지역은 제외하며,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홍수유출증가로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민원이 예상되어 배수개선이나 하천정비사업 선행이 필요할 경우(병행사업 제외)는 설계를 중단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 등 관련사업 시행 및 계획 여부를 조사하여 1/3,000도에 Overlap표시하고 특히, 도로사업으로 지구분단, 용·배수로 근본체계의 변경 등을 검토하여 조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 장래의 규모화, 기계화영농을 고려하여 필지규모는 대구획수준으로 하고, 경사도 등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필지규모를 다양화하고 이동토량최소화로 정지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
 - 조사시 경지정리사업비 지원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만, 지자체에서 초과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술적인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저지대농지는 침수를 고려, 원지반고를 낮추지(절토) 않음.
 - 용수로구조물 단면은 최적계획으로 수립함.
 - 배수로호안 또는 구조물화 대상은 지선급이상을 원칙으로 함.
 - 농로의 확폭은 용배수로부지를 활용하고, 높이는 농기계진입이 쉽도록 낮게하며, 자갈부설 대상은 지선이상을 원칙으로 함.
* 부락간 연락도로, 2개이상 경작도로 연결도로 등
 - 여타설계기준은 최신기준을 우선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경지정리편) 및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요령[기정51350-354('95.10.13)]에 의함.
- 기본조사자는 현지 도로관리청, 하천관리청, 도시계획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 수립은 50ha미만인 경우 시·도지사가 예정지 조사서 등을 토대로 수립하고, 50ha이상 10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수립하며, 100ha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립함.
-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기본조사(또는 예정지 조사)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 적정예산을 신청하되, 예산 신청 사업량보다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조사(예정지 조사)지구의 사업량이 적을 경우, '03년도에 조사된 경지정리 대상지(목표물량)에 포함된 지역중에서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세부설계 실시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시·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지구를 선정하고 지구별 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연계되는 사업과 함께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병행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다만, 사업시행예정자가 농업기반공사로서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업무 전담계획인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용역업체와 역할분담을 검토, 조정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외·내업계획(일정, 인원투입)을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 세부설계를 실시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사항,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또한, 세부설계자는 현장에서 세부설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착수하는 것은 아님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차기 영농준비에 차질없도록 함.
- 세부설계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수혜면적 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결과를 지원단가, 설계내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세부설계를 보완토록 함.

(6)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 내역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수립 내용을 공고·열람하고, 일부 사업반대 지역은 사유, 해당면적제외, 사업비 및 공사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적정성 유무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덧붙임.

(8) 공사계약

- 경지정리 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및 제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제반계약관련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
 - 국가계약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입찰 또는 중복제한을 금지
- 사업시행자는 공사발주, 계약체결(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과 착공예정일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개괄적인 상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9)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 공정 계획

- 사업시행자는 착공후 조속히 월별공정계획(정지, 용·배수로, 농로, 공작물의 공정, 일시이용지지정, 장비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

이때,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역별 이양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완공하며, 이양시기가 늦는 지역도 가능한 5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대비토록 함.

○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인적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인원 및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현장사무소 주소, 성명, 인원, 일반 및 이동통신전화번호 등)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로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며, 현장 이탈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굴착, 집토, 자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예방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할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 업무량과 배치가능인원,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적정인원대비 배치인원, 타직무와 겸직여부, 감리기술자격여부, 공사감리비 등을 검토함

- 배수개선, 농업용수 등 병행지구의 공사감리는 병행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사감리소장의 검입은 사업시행자가 허용여부를 검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수행지침서('02.10)에 의거 감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시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하고, 시행전후 사진을 촬영보관하며,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현장에 민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명예감독제를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공정거래 위반이나, 부당한 계약, 부실시공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민원예방대책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4월말~5월초에 현장에서 수혜자회의를 개최하고, 수혜민들의 공사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을 녹음 및 정리한 후 사안별로 모내기전 또는 추수후 보완공사 등 민원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흔히 발생하는 다음 유형의 민원예방에 유의
 -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은 경지정리사업이 시한부 공사로 배수개선사업과 사전 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연계가 어려움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설명
 - 배수로 구조물화 요구 민원은 ha당 사업비 제한으로 어려움을 사전설명
 - 하천수위가 높은 저지대 농지를 절토시에는 침수피해
 - 용수로 딱 하단 농지를 과도하게 절토할 경우 용출수 발생
 - 논이 평탄하도록 물정지시 세심하게 시공
 - 우기 대비 논뚝이 높은 구역은 말뚝보강 또는 석축시공
 - 배수로 사질 사면붕괴구간에 호안 등 보강
 - 매설한 관이 중장비 통행 등으로 수로관 연결부위 하자발생 누수

- 복토작업중 섞인 석력을 토지소유자와 제거방법을 협의·조치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지대 성토구역의 수렁답화
- 일시이용지 지정말목 위치 재확인, 관리(환지관련)

(10)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증감, 계획변경이 있으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내지3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부에 시행계획변경결과를 보고함.
 - 이 때,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시·도 기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조정계획 또는 지방비 투입 등 재원대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다만, 국고추가예산 요구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전에 가용재원을 농림부에 확인한 후 승인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함.

(11) 용지매수 및 보상

- 농로,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부지는 구획정비로 감보처리하고, 용지매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취장 등 보상비지급은 직접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계약에 포함할 때에는 보상비 지불액을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함.

(12)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준공검사)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만,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 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함.

(13) 예산의 지원

○ 기본조사비

-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100ha이상지구는 확보된 예산(국고)과 농어촌정비법 요율범위내에서 지원
- 시·도지사가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 또는 계약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50ha이상 100ha미만은 기준요율내에서 지방비 또는 자체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 세부설계비

- 세부설계비는 기준요율내에서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지방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착수시 사업비 등에서 충당함.

○ 사 업 비

- 지구별 총사업비는 지원하는 단가로 하며 다만,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 증액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해당액만큼 증액할 수 있음.
- 사업시행중 노임·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비와 면적증가 없이 사업시행중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공사후 예산이 남는 지구는 부족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지구별 국고지원은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 병행지구의 관련사업비는 당해 사업비에서 확보·지원하여야 함.

○ 자금집행 및 관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민간용역의 조사설계비와 토취장보상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지원한 국고자금의 집행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집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국고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14) 환 지

○ 환지업무 요령

- 환지업무는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시달한 「환지업무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환지업무대행법인 : 농업기반공사 또는 10인이상의 환지사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
- 사업시행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 수혜자 총회시 통보하는 등의 조치로 환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 결정사항
 - 종전 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 환지구역 분할결정
 -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의 의결
 - 일시이용지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협의
 - 미납청산금에 대한 가산금부과(5/100) 여부
 - 1000㎡이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지정 여부
 - 기타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의 의결(환지청산금교부의 우선순위, 환지청산금 처리시 소요경비 처리방법) 등
- 사업지구내 공공이용시설부지를 확보, 농업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설환지제도 활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필요한 경우 창설환지에 관한 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신청접수
 - 창설환지지정은 반드시 수혜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설부지에 한하여 시행
 - 사업시행자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금 지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지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를 수혜자, 환지업무대행자, 지적관서, 대한지적공사, 등기소 등 환지업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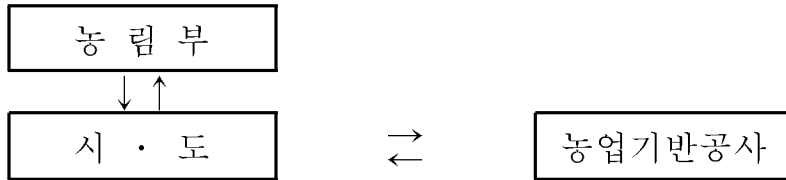
○ 기준단가

- 기준단가 : ha당 307천원

※ 기준단가를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 신청

○ 환지업무 추진체계

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시행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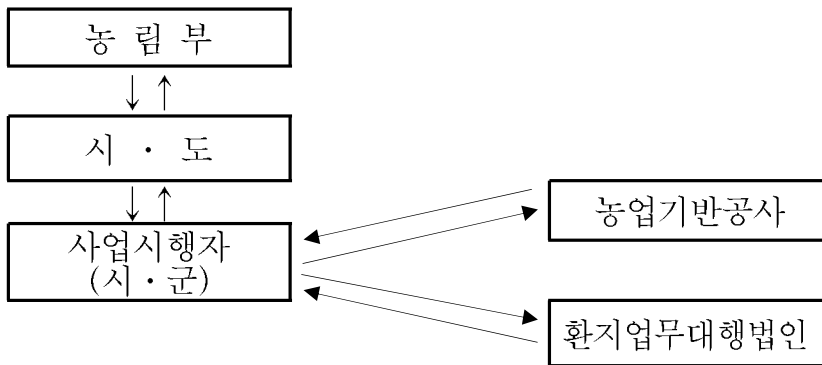


- 농림부 : 총괄

- 시·도 : 사업시행승인, 환지계획인가, 보조금지급, 업무완료보고, 업무추진 지도·감독

- 농업기반공사 : 환지사업 계획수립, 환지업무 현업수행, 환지업무 완료보고

나) 시·군의 사업시행인 경우



- 농림부 : 총괄

- 시·도 : 사업시행승인, 환지계획인가, 예산재배정, 업무완료보고, 업무추진 지도·감독

- 시·군 : 환지업무계약, 계약체결보고, 환지업무 도서인도, 보조금 지급

- 농업기반공사, 민간법인 : 환지업무계약, 환지업무 도서인수 및 현업 수행

○ 기관별 환지업무 수행기능

- 농림부 : 총괄

환지업무 대행법인 등록 및 지도·감독

환지사제도 운영 관리

- 시·도 : 환지업무 시행승인 및 환지사업비를 시·군, 농업기반공사에 배정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환지업무 지도·감독

환지계획 인가서 검토 및 승인

- 시·군 : 도에서 배정받은 환지사업비로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

계약체결후 의무이행사항 점검

환지업무 대행비 정산·보고

○ 환지사업비 지원 및 집행

- 과 목 : 자치단체자본보조(412-01)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집행 방법 : 일시이용지 및 반환지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등기비는 다음해에 이월집행. 다만, 이월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별도 예산을 편성·집행

※ 환지비(국고)는 시·도에서 사업비 예산편성시 포함하여 기획예산처에 신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환지업무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 대행법인과 계약체결시에 현행 환지업무 추진 요령상의 업무추진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환지업무 추진시 지역적인 특성을 이유로 영농시기를 일실하거나 계약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
- 민간법인이 환지업무를 수주하여 추진중 부도로 해산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므로, 인력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업시행자 : 계약체결시 사후관리 등 미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 업체간 담합에 의한 입찰불응 또는 계약체결이후 법인의 부도·해산 등으로 환지업무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
- 환지업무완료 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지계획인가 시 철저한 인가심사 및 사후관리 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
- 환지업무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 일시이용지 지정, 반환지 및 등기까지 일괄계약
 - 환지업무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 법인등록증 사본 등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사업시행자(시·군)는 환지업무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예산회계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업무유형별·시기별 환지업무 추진상황 및 민원에 대한 대비책 등을 수시 점검하여 환지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대처

- 사업시행자는 환지대행법인이 업무수행시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환지업무관련 유관기관인 대한지적공사, 법원(등기소), 지적관서, 각종 협의대상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

○ 공사일정

-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자)

- 창설환지계획수립, 증·감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접수, 실경작지 조사,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 수혜자총회소집, 환지청산금 지원대상 및 절차 홍보, 공사착수 신고

- 공사착수후

업 무 구 분		시 행 자	기 한
일시이용지 지정(가환지)	· 도서인계 · 일시이용지계획수립 · 도서작성 및 제출 · 일시이용지 지정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수혜자	1. 10 4. 10 4. 30 즉 시
확 정 측 량	「확정측량」 추진요령 항목 참조		
환 지 계 획 (본환지)	· 도서인계 ·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여 신청 · 행정구역 변경신청 · 환지도서 납품 · 환지계획인가 신청 ·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 → 환지업무대행법인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 관할지방자치단체 환지업무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시·도지사	9. 10 10. 20 10. 20 12. 20 차년 2. 10 차년 3. 10
환지청산금 정 산	·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업시행자 → 수혜자	환지계획 인기일 부터 90일 이내
등 기	· 변경 및 대위등기촉탁 · 환지등기 촉탁 · 환지 등기	사업시행자 → 등기소 사업시행자 → 등기소 등기소 → 사업시행자	5. 31 6. 30 9. 30

○ 사전환지 추진

- 목 적 :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
- 대 상 : 주민호응도가 양호하고, 농가의향조사결과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를 원하는 지구
- 대상지구선정, 추진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은 필요시 별도 시달

< 확정측량 추진요령 >

- 정비사업은 지구경계의 불분명과 내분할 증감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고 확정측량 지연 등으로 본환지 계획수립에 지장이 있는 바, 확정측량시행을 다음과 같이 구분시행함
 - 확정측량은 지구계 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과 내분할 측량(지적확정측량)으로 구분하여 시행
 - 지구계 측량은 공사기간 중에 시행하여 구역 경계점의 조기 확인으로 토지분쟁 요인해결과 측량수수료의 변동금액을 산출
 - 내분할 측량은 일시이용지 지정이 완료된후 즉시 추진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를 등록하도록 실시
- 추진절차

주요업무명	기 한	추진체계	비고
(1) 업무협의	1월	사업시행자→ 대한지적공사	
(2) 계약 및 착수	2월	사업시행자→ 대한지적공사	
(3) 지구계측량실시	2~4월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4) 내분할측량 실시	5~6월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5) 확정측량 도서 납품	7~8월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6) 확정측량 도서 인계	9.10	사업시행자→환지업무대행법인	
(7) 이동지정리 신청	9.15	사업시행자 → 관할지적관서	

- 사업시행자는 계약 1개월전에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측량에 필요한 관련도서(사업계획평면도, 시행전면적조서 등)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전 까지 지구편입과 제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한지적공사와 확정측량계약을 2월중에 일괄 계약체결하되 계약조건에 지구계 및 내분할 측량을 구분함
- 대한지적공사는 공사감독(공사감리) 입회하에 지구계 측량시 확정측량의 기준점 및 표석설치를 하고 불분명한 필지에 대하여는 경계확인하여 지구계 측량성과 및 예상 확정측량 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추후 면적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측량 수수료를 확정 가능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측량성과에 의거 토지분쟁 예상지역은 주민과 협의하고 시공보완 실시한 후 지구계 내외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환지업무대행법인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가 일시이용지지정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면 대한지적공사는 공사감독(공사감리) 입회하에 내분할 표지를 설치한후 내분할측량을 실시함.

○ 환지계획인가

- 농어촌정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추진. 다만, 사업시행관할구역이 일부 타도 구역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사전에 일부 편입 시·도와 사업 계획, 사업비부담문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후 추진

○ 확정측량업무수행시 유의 사항

- 사업시행자는 계약의뢰 및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별 추진절차와 시기를 준수하여 시행하며 조기 준공정산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지구계 측량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구역면적의 편입 및 제외 여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결정해야 함.
- 지구계 측량이 완료되어 기준점 표석을 설치한 경우 이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다시 설치하도록 함.
- 공사감독(공사감리)은 지적측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서류 제공 및 현지 확인시 입회하도록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대한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추진

마. 사업비 실행검정 및 정산

- 농촌개발사업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의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바.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사. 기타사항

- 경지정리 시행시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지정함 [참조:정비16330-229('99.5.25)]
 - ①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시 농지관리 부서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포함여부 협의
 - ② 사업시행전 징구하는 동의서 내용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③ 시·군 경지정리 사업부서는 경지정리 사업 준공시에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에 필요한 토지조서, 지형도,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
 - ④ 시·군 농지관리부서는 농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 농지관리부서에 제출
 - ⑤ 시·도지사는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 고시 후 농림부장관(농지관리부서)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관정은 최대한 존치, 활용토록 하여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폐공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폐공이 불가피할 경우는 지하수법,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 (수리51322-444('94.9.23))』 등 관련규정에 의한 엄격한 폐공처리와 폐공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및 관정사후 관리 철저
[참조 : 정비16330-10142('00.9.28)]
- * 폐공된 소형관정(심도 10~30m, 구경 50mm정도의 충적층관정으로 PVC관이 많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논·밭에 있는 농약 등이 빗물과 함께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소형관정 폐공시 원상복구 요령
 - 지하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원상복구요령에 따라 폐공처리
 - * 관체를 완전히 인양한 후 지표에서 1~1.5m 심도까지는 점토를, 그 이하는 시멘트슬러리를 주입한 후 깨끗한 점토로 다짐하여 되메움.
 - 폐공관리대장 기록
 - 경지정리구역내 소형관정을 폐공시킨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 * 우리부에서 기시달한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수리51322-444('94.9.23))』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한 관정을 폐공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공관정 사후관리에 철저
- 경지정리공사지연 등으로 직파 재배나 이앙 등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관개급수 차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는 사전에 물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영농과정 등에서 논두렁 및 수로부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식되면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여 기능을 회복토록 함.
- 시설관리자는 기간농로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시설관리자는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농지보전에 노력함.

나. 보 고

구 분	보 고 사 항	보고기일	서식번호
2006봄마무리지구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7호
	준공결과 보고	즉 시	별지9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8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4호
2006가을착수지구	신규·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결과보고	1월	별지2호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즉 시	별지3호
	입찰결과 보고	즉 시	별지5호
	추진상황 보고	주 간	별지6호
	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과보고	필요시	별지7호
	예산배정결과보고	즉 시	별지4호
2006가을착수지구	예정지조사 보고	'05.12	별지1호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청 또는 농업기반공사

나. 신청자격

- 경지정리는 공공사업으로서 개인별, 소유토지별, 필지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구로서 해당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2/3이상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의 대표, 리동장 등
 - 비닐하우스, 감보면적 등에 대한 영농보상을 원하지 않은 지역
 - 농업용수, 하천개수 등 경지정리와 병행추진에 문제가 없고 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사업시행으로 영농환경이 개선되며, 대형농기계작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

다. 신청절차

- 농민들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지사)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농민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임의서식이나 구두로 사업시행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
-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는 경지정리 예정지를 현지조사한 후 조사보고서식에 의함

마. 사업대상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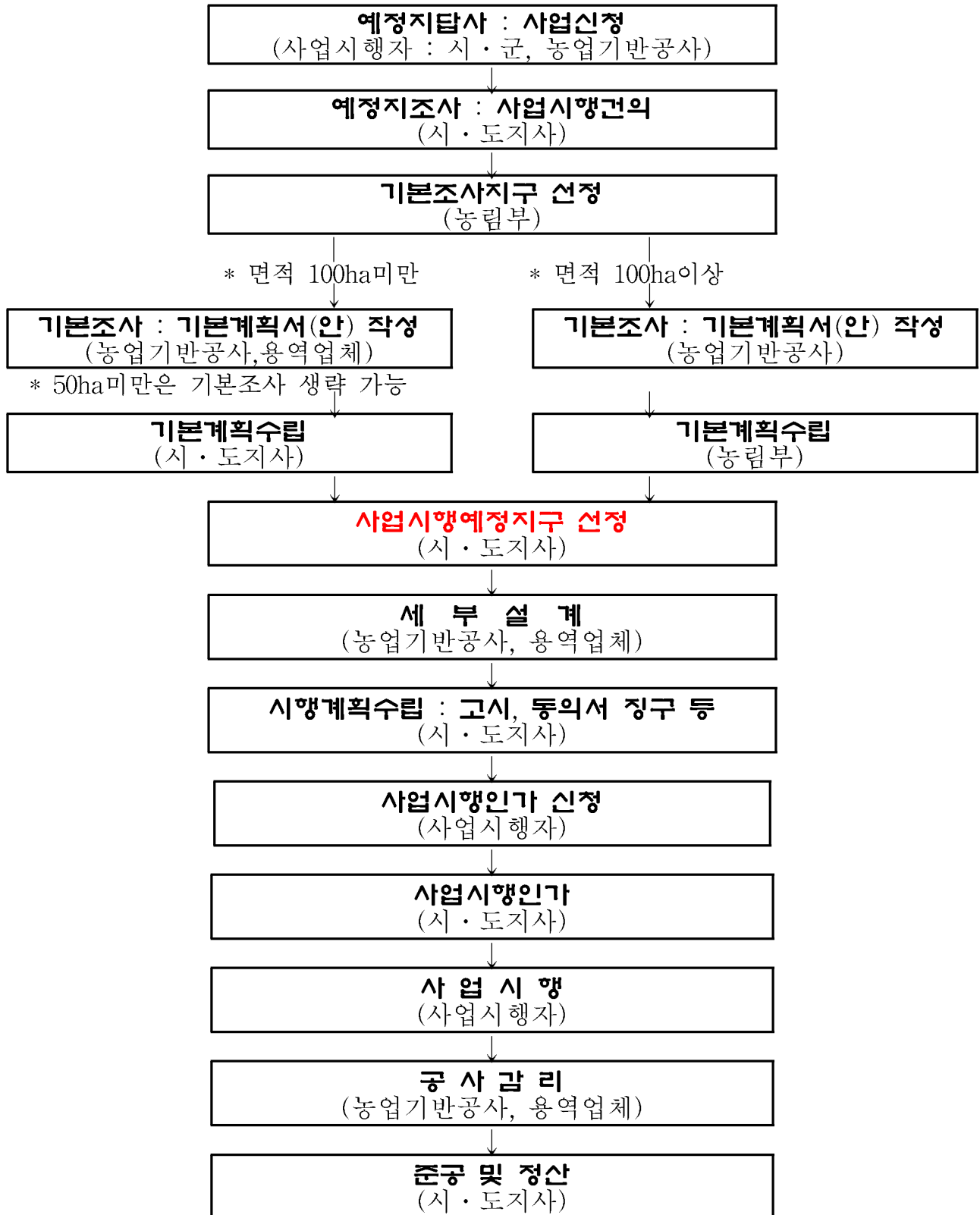
- 선정기준
 -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은 대상지구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 '03년도에 조사한 경지정리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50ha이상 집단화된 지역) 다만, 대상지이외 지역을 주민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포함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 보고서 시·도지사에게 누락한 사유 등을 첨부

- 농업진흥지역에 한하여 우선선정, 단, 사업구역내 일부 비진흥지역은 경지정리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가능한 지역
 - 사업시행에 대한 농민(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 소수의 농민이 사업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지구나 지역은 제외
 - 농업용수 수원공 등이 완비되어(차기 영농기내 완공포함)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농업용수 부족지구는 농업용수확보대책이 있어야 대상지로 선정
 - 사업비가 저렴하여 예산단가(지방비 확보포함)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초과사업비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이 가능한 지구
 - 타법, 타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 도시, 공단, 도로계획 등 타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 비닐하우스설치비와 감보면적 보상 등 각종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지구
 -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하천개수, 집단마을정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등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높은 지구
 - 하천직강·확폭 등 정비계획지역, 상습침수지역(저지대)이나 염해발생이 우려되는 간척농지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지에서 제외
 - 배수개선이 필요한 지역(예정지, 기본조사, 세부설계중인 지구)
 - 배수개선 사업이 착수는 되었으나 추진공정계획상 경지정리와 병행이 어려운 지구
- 우선순위
- 주민호응도가 매우 양호하고,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
 - 사전환지, 타사업과 병행 및 연계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구
 - 대구획경지정리는 농지정리된 연도가 오래되어 영농불편이 많은 지구
- 선정절차
-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고 예산형편에 따라 선정·추진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참조)

< 표 1 >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1호 서식]

자체 가26-25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 보고

< 총괄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예정지	추정사업비		용수확보율	주민동의율	진흥지역밖지역의진흥지역편입가능여부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사업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액	ha당						
									백만원	천원	%	%	(O,x)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추진현황 *신규, ○○년도조사(설계)완료														
	지구명	사업시행예정지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ha	기반공사구역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지역여건	경사도	동서 1/ , 남북 1/														
	도로	전체 km	미접속농지 ha		농로폭	지선: m	지거: m									
	용수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배수겸용 ha	월답식	ha									
	배수로	전체 km	전용 ha	*농지기준	용수겸용 ha	월답식	ha									
	용수조건	용수확보율 %	수원공		*수원공명 (간선명:)											
	배수조건	침수면적 ha	하류하천정비여부													
	토양조건	토 대책 *복토 등(ha, cm)														
투자소요액		백만원 (ha당 천원)														
사업시행효과																
시·도지사의견																
사업타당성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적극반대유무		*비닐하우스휴경, 감보면적 보상 등										
		진흥지역편입가능여부														
필요한사항	병행또는연계사업	*사업명		추진현황	병행사업비 확보계획											
	타사업관련	*도로계획 등														
	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기타 특기사항																

- 주. 1. 기본조사,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그 결과 첨부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총26-66

경지정리 사업시행예정 및 세부설계(보완) 대상지구 선정결과보고

< 총 관 >

우선순위	코드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예정자	추정사업비		용수확보율	주민동의율	조사설계추진상황	병행사업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지역		총액	ha당					
									백만원	천원	%	%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조사설계추진현황	기본조사: 년년		세부설계: 년년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수혜: ha	시.군구역 ha	기반공사구역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사업비	백만원		ha당		천원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ha		기타				
지구여건	주민호응도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용수확보율	%		주수원공			경사도	동서1/ , 남북1/			
	제약요인 (관련사업)	*하천개수, 도로사업, 공단, 도시계획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조사설계자 의견 (기관명)	*제약여건 등										
사업시행자 의견	*제약여건 등										
시·도지사 의견	*제약여건 등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천원		순공사비				자재대			
	예산서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주. 축척 1/25,000 도면 첨부 (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 시행자	사업비		재원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 현황	코드번호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시.군구역		ha	기반공사구역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사업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진흥지역 편입가능여부								
주요 사업 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기타							
제약요인 해소계획	*용수공급계획(용수확보율 70%이하지구), ha당 40백만원 초과지구 등															
병행사업	*농업용수,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명, 계획, 진도, 완공예정일 등)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백만원)								
조사.설계기관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기관									
사업비 수지 예산서	구분	과목		총사업비		1차년도 (2006가을)		2차년도 (2007봄)		비고						
	수입	계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계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별지 4호 서식]

자체 가26-

경지정리사업 예산배정 결과 보고

【2006봄마무리('05가을착수) 경지정리】

(단위 : 천원)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사 업 시 행 자	예 산 배 정									비고	
	시군	읍면			총 사업비			2005 가을착수			2006 봄마무리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별지 5호 서식]

총26-6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입찰결과 보고

□ 사업명 :

(금액 : 천원)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면적 (ha)	총사업비	설계가격 (A)	예정가격 (B)	낙찰가격 (C)	낙찰율	
	시군	읍면							C/A	C/B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입찰일	낙찰자			계약사항			비고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 주. 1. 입찰방법 : - 일반경쟁(전국)은 “일반”으로 표기
 - 지역제한(도내)은 “도내”, 금액실적제한은 “금액”, 면적실적제한은 “면적”, 수의계약은 “수의”로 표기
 - 중복제한은 제한내용을 기재
 예) 면적 및 실적을 동시에 제한(중복제한)한 경우 “면적+실적”
 2. 일반경쟁외의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별지 6호 서식]

총26-45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명 :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공정계획 (%)	진도 (%)			장비(대)		비고
	시군	읍면					전주까지	금주까지		도자	백호우	
								계	토공			

[별지 7호 서식]

총26-44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결과보고

[총 괄]

사업명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자 시 행 자	면 적 (ha)			사 업 비						주요변경 내용 및 변경사유	증 가 사업비 확보방안	
	시군	읍면		기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c=b-a)	재 원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				
								기승인 (A)	금회 승인 (B)	증감 (B-A)	계	'05			'06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시행계획변경승인 신청 지구별 내역

지구명 :

위 치 : 시·군 읍·면 리·동 (사업시행자 :)

면 적 : (기승인) ha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변경안) ha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 변경사유 :

사업비 : (기승인) 백만원 → (변경안) 백만원

- 변경사유 :

- 증액사업비 확보대책 :

(금액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 고
	기승인 (A)	변경(안) (B)	증 감 (B-A)	계	2006가 을	2007봄	
○ 합 계 -국 고 -지방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 보 상 비 ○ 기본조사비 ○ 세부설계비 ○ 공사감독비 ○ 사업관리비 ○ 확정측량비 ○ 환 지 비							

주. 1. 농림부 지원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는 ()내서, 환지비는 < >외서

공사변경 주요내역

○ 정 지 : ha → ha, (증감 백만원)

○ 용수로 :(총연장) km → km (구조물율: % → %), (증감 백만원)

○ 배수로 :(총연장) km → km (구조물율: % → %), (증감 백만원)

○ 농 로 :(총연장) km → km (자갈부설: km → km), (증감 백만원)

○ 주요공작물(교량 등) : 개소 → 개소 (증감 백만원)

- 구조물명 및 규격

○ 기 타 : 복토(예: ha에 두께 cm~cm로 총 m³)등, (증감 백만원)

경지정리사업 준공결과보고

【 일반경지정리 】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논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비		재원		비고
	시군	읍면	계	진흥	진흥밖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구역:		ha	시.군구역		ha	기반공사구역		ha	진흥지역		ha	진흥지역밖		ha	
	사업비	수혜:		ha													
	주민동의율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m		감보율							
	도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용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배수로		m	구조물				m		(구조물율 %)							
	객복토		ha,								기타						
병행사업	*사업명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세부설계				시공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사업비수지예산서	구분	과목			총사업비			1차년도 ('05가을)			2차년도 ('06봄)			비고			
	수입	계															
		국고															
		지방비															
	지출	계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측량비																	

- 주. 1.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2.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 대구환경지정리 】

< 총괄 >

(단위 :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비		재원	
	시군	읍면	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총	ha당	국고	지방비

< 지구별 >

일반현황	코드번호					일반경지정리기시행	년도		ha		
	지구명					사업시행자					
	위치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	구역: ha	수혜: ha	재개발형		집단화형		시설개량형			
	사업비	백만원 (국고, 지방비)						ha당	천원		
	주민동의율	%		수혜자	명		사전환지여부				
주요사업내용	정지	필지		표준구획	$m \times m$ (당초: $m \times m$)		감보율	%			
	도로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도로폭	지선		m, 지거	m (당초: m~ m)					
	용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배수로	km		지선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지거	km	구조물	km (구조물율 %)						
객복토	ha, cm		습지	ha		기타					
병행사업	*사업명				병행사업비		백만원				
관련기관명	기본조사		년도		ha	기본조사기관					
	세부설계		년도		ha	세부설계기관					
	사업시행					공사감리					
사업추진현황	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수지예산서	구분	과목	총사업비			재개발	집단화	시설개량	비고		
			계	'05가을	'06봄						
	수입	계	천원								
		국고									
		지방비									
	지출	계									
		순공사비									
		자재대									
		보상비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추량비											

주. 사업비 외의 별도의 국고로 지원된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는 ()내서로 표기

※ 축척 1/25,000 도면 첨부(병행지구는 병행사업 계획을 표기)

[참 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업무 지침

1.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면적이 50ha이상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100ha이상)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농업기반공사는 위탁받은 사업중 공익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자체 시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민간기업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철저한 감독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기본조사 미흡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 개발면적 100ha미만의 사업지구는 민간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촌용수개발·배수개선·경지정리·하구둑·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소득원 개발사업 등 2개이상 사업이 복합된 병행사업지구 및 농업종합정비사업
 - ② 토목·수문·지질·토질·토양·기계·전기·건축 등 다양한 전문직과 고도의 전문기술, 수리모형 실험 등을 요하는 사업
 - ③ 지방2급 이상의 주요하천이나 해안과 연계되어 수문분석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 ④ 길이 100m 이상의 교량·터널·지방도급 이상, 도로이설 등이 포함된 사업
 - ⑤ 용지매수 및 보상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등 많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

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주호, 토목사무관 박종훈)입니다.

1. 목 적

-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농로,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간의 농로 등을 확포장
-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농로 우선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내지 제12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km, 백만원)

구 분	'95~'03	2004	2005	2006	2007이후
사 업 량	13.88	1.20	1.28	1.16	17.48
사 업 비	1,412,790	124,980	134,025	121,420	1,913,910
- 국 고	1,132,027	100,063	107,313	97,217	1,532,280
- 지방비	280,763	24,917	26,712	24,203	381,630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포장규모 : 노폭 4~7m규모의 경작로를 폭 3~5m로 포장
 - 포장면적 3,000㎡이상
 - ┌ 포장폭 3m인 경우 1km이상
 - | 포장폭 4m인 경우 0.75km이상
 - └ 포장폭 5m인 경우 0.60km이상
- 포장방법 : 비포장 경작로를 시멘트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팔트) 및 기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포장
- 확 장 :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는 확·포장가능
- 용·배수로 개거화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구조물 공사 병행 추진
- 용·배수로 관수로 : 경작로와 부설된 흙수로의 관수로 공사 병행 추진

나. 지원기준

(1) 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초과소요액은 지방비 부담)

(2) 기준단가 : 104,080천원/km

※ 기준단가를 참고로 하되 지구(지역)별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요예산 신청

다. 2006사업비 내용

(사업량 : km,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21,420	97,217	97,217	-	24,203	-
사업비	1,159	121,015	96,812	96,812	-	24,203	-
조사설계비	1,126	405	405	40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02-500-1994, 6)
- 시 도 : 농정국 (농림수산국)
- 시 군 : 건설과
- 농업기반공사 : 본사, 도본부, 지사

다.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구역 : 농업기반공사
- 시군구역 : 시장·군수

라. 사업시행절차

- 사업신청→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사업대상지구 선정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 그림 1의 사업추진체계도 참고.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일반 선정기준

- 사업시행예정자는 예정지조사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포장폭 3m인 경우 1000m 이상, 4m인 경우 750m 이상, 5m인 경우 500m 이상)이상인 기본조사지구를 선정하여야 함.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여건과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대중규모 평야지로서 들녘단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
 - 대구환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구
 - 농촌소득사업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구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우수생산조직으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병행 확포장이 동시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주변상위도로와의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사업효율이 높은 지구
 - 도시,공단 계획등 타법, 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구
 - 경작로중횡단구조물(교량,암거등)의 개보수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단, 지방비 등이 확보되어 중횡단구조물 개보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구환경지정리사업 예정지로서 대구환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구는 제외
- ※ 포장계획면적이 3,000㎡미만인 소규모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그림 1>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 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대중규모(500ha이상) 평야부 들녘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 대구환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 간척농지개발사업지구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100ha이상)
- 부설된 용배수로가 이미 구조물화되어 있거나 구조물화가 필요없는 지구 또는 중형단구조물의 개보수가 필요없는 지구
- 수리시설개보수 등 타 관련사업과 병행지구
- 주변상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
- 농기계 보급 및 수혜마을이 많은 지구
- 시군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구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 (1) 농업인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할 수 있음.
- (2)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시군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m²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포함여부, 대구환경지정리 예정지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여 답사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지방비 확보 및 타사업 시행여부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4) 시·도지사는 지구별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한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함(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매년 11월말까지)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기본조사 건의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지구를 선정, 기본조사를 실시함.
 - 기본조사기관 : 농업기반공사

- (2)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조사지구의 변경, 조사물량의 증감 등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조사내역을 변경하고 사유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기본조사자에게 통보).
 - 기본조사자는 시·도지사의 기본조사내역 변경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기본조사내역 변경에 대해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3)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4)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내용에 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 기본계획 확정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은 기본조사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6) 기본조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산정함
- (7)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 (8)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또는 기본조사(또는 예정지조사)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신청하되, 예산신청사업량보다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조사(예정지조사) 지구의 사업량이 적을 경우 사업대상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9) 시·도지사는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1)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착수 사업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함.
- (2)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세부설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농업기반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 (3) 세부설계자는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인근 농지의 농로 및 타도로와의 연결부분을 포함하여 도로의 연결성,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
 - 농기계 교행 등을 위하여 포장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3m이상)하거나, 교행장소(대피소)등 설치계획 수립
다만, 국고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부담
 - 농로에 부설된 흙수로의 개보수계획이 있을 때에는 병행토록 계획
- (5) 세부설계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설계 및 시공요령(농림부, 농업기반공사)에 의하되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관한규칙(행자부) 등을 적용함.
- (6)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야 함.
 - 들녘별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구별 완공위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대규모 평야지구는 2~3년차로 사업시행하여 완료토록 계획수립
※ 한 사업지구에 대해 설계·계약·시공·준공 등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하여야 함.
 - 포장 대상노선의 종횡단 구조물중 노후, 파손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병행시행토록 하며, 관개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일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와 사업계획을 미리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

라.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공람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 때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본계획 준수여부(기본조사시행여부, 노선변경여부 등)

-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여부
 - 소요단가가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여부
 - 타사업과 병행 추진할 경우 병행사업비 확보여부 등
- (3)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입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수의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분할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마. 공사추진

- (1)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 및 수혜농민 대표와 협의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도록 영농기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함.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 지구내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된 노선간의 시행 계획변경 또는 현지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포장공법의 변경 등 주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사업비가 국고지원 기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부담함.

바. 용지매수 및 보상

- (1) 경작로 부지 등의 용지매수보상은 가급적 억제하되, 불가피하게 용지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부담함.

사.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시행함
 - 시장·군수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에 협조요청하며, 농업기반공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하여야 함.

- (2) 공사감리요령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시공요령을 참고함.
- (3) 공사감리자는 포장시공시 현장에 주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전, 시행중, 시행후 등의 전경사진을 동일장소에서 촬영하여 시행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

아. 준공검사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2)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신청이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3)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농업기반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됨.

자.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1)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차.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카. 기 타

- (1) 세부설계, 공사감리, 공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별표5]에서 정한 기준요율의 70% 이내에서 사용
 - 사업시행자가 세부 설계 및 공사관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시행한 경우도 같음
- (2)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지구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는 완공한 후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판을 경작로 입구 등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포장노면을 선량하게 관리
- 사업완료 후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등록(변경)을 하여야 함.
-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 등 유지관리 실시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는 도로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의 중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서식번호	보고기일
○ 기본조사대상지 보고	1	전년 11월말
○ 예산배정 결과보고	2	배정완료후
○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	3	인가후 즉시
○ 공사입찰 결과 보고	4	입찰완료후
○ 사업추진 상황 보고	5	분기말 익월 10일
○ 준공 결과 보고	6	준공 즉시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대상지 : 본 지침의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지구

나.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담당부서(건설과), 농업기반공사 지사

다. 신청자격 : 대상지에 포함된 농업인

라. 신청절차

- 농업인이 시·군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군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에 신청(구두 또는 임의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건의

마. 선정절차

- 사업시행절차에 의하여 조사설계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자체 가26-2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우선순위		들녘 명	지구 Code	지구 명	위 치		면적 (ha)	지구내 농어촌도로현황				
					시군	읍면		노선명	총연 장	포장 %	미포장 (km)	미포장도로 포장계획 연도
순위	선정사유											
합계												

경작로현황							사업 구분	사업시행 예정자	관련사업
총연장	노폭 구분	포장계획							
		계	'06까지 완료 %	향후계획					
				포장폭	연 장				
			'07계획		'08이후				
	합 계			계					
	6m초과			50					
	5-6m			40(50)					
	4-5m			30(40)					
	4m미만			30					
	계			계					
	6m초과			50					
	5-6m			40(50)					
	4-5m			30(40)					
	4m미만			30					

※ 기본조사 대상지 도면(1/25,000)과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요령>

- 대상지구 : 지구단위 포장계획면적이 3,000m²(지침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가)항 사업내용 참조)이상인 지구
- 순위 : 우선순위에 의거 순위부여
- 선정사유 : 사업대상지구 선정 기준에 의한 선정사유
 - 작성(예)
 - 대중규모 평야지
 -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연계 확포장(시행계획년도, 사업비, 규모 등)
 - 농촌소득사업(영농체험,팜스테이 등)과 연계(사업년도, 사업명, 향후계획 등)
 - 부락간 연결로, 유통시설과 연계 등(자연부락명, 이용 농가수 등)
- 들 녘 명 :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들녘명으로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들녘명
- 지구Code : 농림부 장바51340-114('98.5.14)호 또는 농림부 시삽51350- 10284('00.9.21)호로 시달한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별 Code로 기재
- 지 구 명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지구명 기재
- 면 적 : 경지정리 대상지구 내역의 면적을 기재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면적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된 면적을 기재
- 지구내 농어촌도로 현황
 - 노선명 : 지구내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면도, 리도, 농도의 노선명
 - 작성(예) : 불은선(불은101호)
 - ※ 불은 : 읍·면, 노선번호 - 101 : 면도, 201 : 리도, 301 : 농도
 - 총연장 : 총연장(총연장=포장+미포장)
 - 포장 :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중 포장된 연장(%는 포장율)
 - 미포장 도로 포장계획 : 미포장도로 포장계획 연도(계획이 없을 경우는 미정으로 기재)
- 경작로 현황 : 지구내 경작로 총연장 및 경작로 포장계획 기재
 - 향후계획에는 포장폭원별 사업연장 기재
- 사업구분 : 대중규모(면적500ha이상), 대구획, 연계 및 병행, 일반, 간척지구로 구분
- 관련사업 : 대구획경지정리와 연계 및 병행지구에 대한 사업 지구명

자체 가26-2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관련사업
	시군	읍면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이외 추가지방비와 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 사업비는 ()로 외서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천원)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업량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인 가 연월일	관련 사업
	시군	읍면		포장폭	연장 km		계	국 고	지방비		
				계							
				5.0							
				4.0							
				3.0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 사업비로 배정한 사업비 이외 추가 지방비와 수리시설개보수 등 병행 사업비는 ()로 외서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원별 구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총26-67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계가격(A)	예정가격(B)	낙찰가격(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 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단, 노선별로 분리 입찰한 지구는 노선별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 명	위 치		사업 시행자	○년계획		○월계획		○월실적		진도(%)		부진 사유	비고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C/B	C/A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진도는 사업량 기준
- 부진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 3m 기준으로 작성

심사제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준공결과 보고

(단위 : km, 천원)

지구명	노선명	위치		면적 (ha)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포장재료
		시군	읍면				

인가 및 변경승인 (A)					준공 (B)					증감 (B - A)					증감유 관사	련업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포장폭	연장				포장폭	연장				포장폭	연장					
계					계					계						
5.0					5.0					5.0						
4.0					4.0					4.0						
3.0					3.0					3.0						
계					계					계						
5.0					5.0					5.0						
4.0					4.0					4.0						
3.0					3.0					3.0						

<작성요령>

- 시군별로 작성(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인 경우도 해당시군에 포함)
- 본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이외의 추가된 지방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련 사업비는 ()외서 작성
- 사업량은 포장폭원별 구분 작성

77	배수개선(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주호, 토목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배수개선 대상지를 자원조사한 배수개선대상지보완조사를 기초로 하여 침수피해가 극심한 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추진
- 농업진흥지역내의 상습침수지역을 우선 개발함.
-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함.
-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을 우선 개발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이후
사업량		81	5	1.4	4.5	53.9
사업비	계	1,760,192	216,700	216,474	217,881	1,631,634
	- 보조	1,760,192	216,700	216,474	217,881	1,631,634
	- 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사업량은 완공면적 기준임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및 승수로 등 홍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홍수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2)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내 수해상습 농경지
- (3)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6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기타		
계		217,881	217,881	217,881	-	-	-
사 업 비	130지구	215,526	215,526	215,526	-	-	-
기본조사비	5,000ha	2,355	2,355	2,35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02-500-1993, 1997)
- 시 · 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업정책과, 농업기반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 시 · 군 : 건설과 농지계(기반조성계)
- 농업기반공사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반공사사장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사업시행 → 준공
- ※ 사업추진체계도는 붙임(표 1)과 같음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수해면적이 50ha 미만인 경우는 시·도에서 지방비로 시행함. 다만, 극심한 수해피해 지역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가능함.

(2)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상습침수지역 농지
- 주민호응도가 높으며, 타법·타사업 저촉 등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는 지구
-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되어 배수개선 효과가 큰 지역
- 동일수계에 수개의 배수개선사업대상지구가 있는 경우는 하류부에 위치한 지구 우선시행
- 기타 수해 피해가 심하거나 빈번한 지역

나.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예정지 신청

- (1) 사업시행 예정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는 예정지에 대한 사업시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제출함. 이때, 수계의 하천상태와 정비계획, 농경지의 수해상황(과거 10년간) 등을 기술함.
 -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 예정지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 해당 도본부에서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다. 예정지 조사

- (1) 시·도지사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을 신청하거나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2)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조사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지조사 대상항목, 시·군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면적과 하천의 상황 및 정비계획 등 수계의 홍수대책을 조사하고, 수혜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예정지조사서에 기술하여야 함.

- (3) 예정지조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거나 경지정리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기본조사를 신청함
- (4) 수혜면적이 50ha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사업시행예정자가 부담

라. 기본조사 실시와 기본계획수립

- (1)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2)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3) 기본조사자가 실시하는 기본조사는 시·도지사의 예정지조사서를 참고하여 구역별(수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하천개수, 경지정리, 수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함께 1개 지구로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 (4) 기본조사자는 당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조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을의 분포와 인구 변동의 추이, 산업별 배치사항및 경제활동 상황,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함.
- (5) 기본조사자는 현지 하천관리기관 등 행정기관과 농업기반공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 (6) 경지정리,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7) 기본조사자는 지구별 수혜면적이 50ha미만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계속조사여부를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현지의 여건이 시·도지사가 보고한 예정지조사서와 상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

(8) 기본조사자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계획서(안)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천의 정비상태와 하천관리청의 하천정비계획

나) 배수장 및 배수갑문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우의 시간별 유출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와 운용지침

다) 배수장설치로 인한 하천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하천개수정비대책

라) 수혜지역의 농어촌발전대책 포함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마) 조사지역의 과거피해이력 및 피해잠재성 등 피해정도

(9) 기본조사자가 기본계획서(안)를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기본계획수립 확정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

(10)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요율범위 내에서 집행함

(11)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함.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를 실시하며,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함.

(2) 세부설계 실시자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 대한 측량 설계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3)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세부설계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실시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5) 세부설계서에는 공사가 완공된 후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갑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빈도별 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 홍수 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건표 및 시설운영지침을 제시하여야 함.
- (6)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 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7) 시·도지사가 세부설계 성과품을 검토하여 세부설계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주요 설계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함. 이때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성과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하도록 함.
- (8)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도지사는 경제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개요와 세부설계비 산출내역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함.
- (9)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공고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시설의 인수·관리에정자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시행인가보고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 변경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3) 지시조건의 보완은 조기에 이행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 (4)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 발주를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액, 계약방식, 예정가액, 입찰가액, 낙찰율, 도급회사와 착공예정일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공정 계획

- (1)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 주요 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시 기간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함.
- (3)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예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별첨 서식에 따라 월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2월말까지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 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또는 계획보완으로 공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시행계획의 변경

- (1)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하며 (단가변경은 가급적 계획변경에 우선하여 별도 처리토록 함.), 물량변경에 의한 계획변경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 47조의 2의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배수장, 배수갑문 규모·구조 변경과 주요 배수로 노선변경, 제수문·취입보 등 우수장애 시설물의 신설 및 위치 변경
- (2)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조치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 평면도 (1/25,000~1/50,000, 1/3,000~1/6,000)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 (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설계도면 작성요령 : 보완전 청사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토록 할 것.)

④ 보고 서식 (별지 제4-1호~제4-11호 서식)

⑤ 기타 주요사항

(3)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시·도지사는 총사업비 변경(단가인상 포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자. 용지매수 및 보상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2)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차. 공사감리

(1) 공사감리는 농업기반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3)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4)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하여야 함.
- (6)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카.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가)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나)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다)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 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자금의 운용관리

- 가)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 다)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 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함.

타. 기타사항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되는 미정비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개수사업(국가·지방1급·지방2급)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연계성을 검토함.

파. 사업준공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3)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 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하. 사업의 평가

-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2)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3)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거. 배수개선 및 경지정리 병행사업 추진

(1) 예정지 조사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 결과보고시 배수개선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행지구임을 명기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조사를 요청함.

(2) 기본 조사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병행지구임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농업 기반공사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세부 설계

가)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배수개선부분과 경지정리부분을 총괄하여 설계하되, 배수개선사업계획과 경지정리사업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함.

나) 병행하는 배수개선사업계획은 하류부 배수장과 연결되는 배수간선으로 하되, 배수로에서 발생하는 토량은 경지정리사업에서 유용하도록 계획함.

다) 복토계획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배수로(인수로)부지는 감보처리토록 계획함.

라) 병행지구 세부설계실시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설계과정에서 사업계획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사항변경 등이 불가피할 때는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시설관리과)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

마) 공정계획수립

병행지구 하류에 위치한 배수장, 배수문 등의 시설물이 홍수배제에 지장없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경지정리공사를 실시토록함.

(4) 예산 지원

가)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되, 사업비는 해당 사업별로 지원 및 정산함.

나) 배수개선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 경지정리사업 해당 물량,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을 별도로 산출하여 ()내서로 표시함.

다) 경지정리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 배수개선사업계획상의 경지정리사업비에 의거한 사업비 수지예산서, 공사비 내역 등에 []외서로 표시함.

(5)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 → 예정지조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사업시행 → 준공

(6) 기 타

기타사항은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통합지침서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함.
- 전산입력 절차 및 요령은 『농림사업평가실시요령』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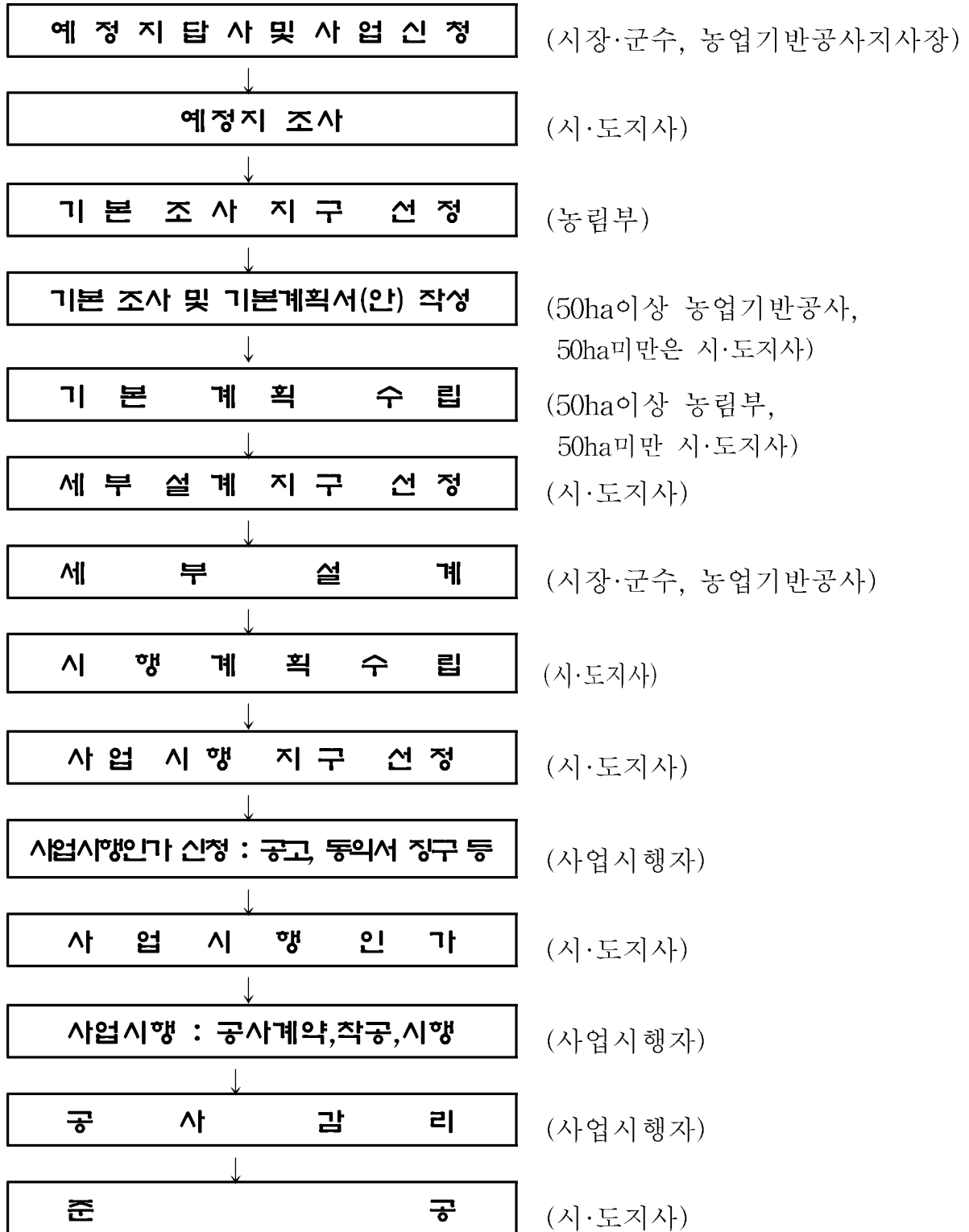
나. 보고 및 기타

-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시도 총괄표 포함)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진도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3) 준공처리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4)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 표 1 >

배수개선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 서식]

총26-68

배수개선사업사업시행인가 및 공정계획보고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업자 : (인), 작성자 : (인)

○위 치 : 도 군 면

○사업시행자 :

○지 구 명 : (내지구명 :), 면 적 : ha,

○ha당 증수량 : M/T, 당초승인 : 착공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중 승인액	년까지 정 산 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 산 액	공정(%)
과 목	공 종 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배 수 장 평 야 부					
	- 배 수 로					
	- 배 수 로					
	- 배 수 문					
- 자 재 대	소 계					
	-					
	-					
용 지 매 수 및 보 상 비	기 타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기 타						
- 예 비 비						

월 별 계 획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도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현재)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구분	면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연도 예 산
	시·군	읍·면							
계									

실행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 주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3)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4)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배수개선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지구명 :
 - 위치 :
 - 면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및 규모
 - 배수장 : $m \times m$ 대 ($Q = m^3/sec$), 유역면적 ha
 $m \times m$ 대 ($Q = m^3/sec$), 유역면적 ha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B=$, $h=$, $H=$)
 - 승수로 : m (최대단면 : $b=$, $B=$, $h=$, $H=$)
 - 배수문 : $m \times m$ 른, SILL m, 유역면적 ha,
 $m \times m$ 른, SILL m, 유역면적 ha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사업효과
 - 증수량 : M/T, - I.R.R : - B/C :
-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수로조직표를 첨부할 것.

[별지 제3-2호 서식]

2. 년도별 검정내역

가.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계									
국 지 기	고 방 타								

나.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비고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 및 보 상 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기타 -예 비 비									

3. 준공처리의견

총26-70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 · 결과보고

심 사 서				
1. 지 구 명 : 2. 위 치 : 3.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배수장 : 개소, 배수문 : m× m× 런, 배수로 : km, 승수로 : km 6.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7. 공사개요				
총계획	까지	계획	이후계획	비고
8.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4-2호 서식]

9. 보완내용

총사업비 변경

(단위 : 백만원)

항 목	총사업비			까 지	계 획	이 후
	당 초	변 경	증 감			

총사업비 변경내용

항 목	당초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증 감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합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물량보완						
-저수지						
-양수장						

※ 물량보완의 항목별 당초 및 변경총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보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공사비+자재대+공감비+축설비+사업관리비 등 수반되는 사업비를 합한 금액임

총사업비 변경사유

항목별	당초계획내용	변경계획내용	사 유

공사추진상황

항목별	총계획	까 지	계 획	이 후

[별지 제4-4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국 고							
지 방 비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 회 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계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평 야 부 · 부 대 공 사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 설계 비 - 공사 감리 비 - 사업 관리 비 - 잡지출 · 기타 - 예 비 비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공사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비 고
공사명	공종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를 대상으로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4-6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 ²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년 도 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년까지 정산액		년계획		년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7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기 승인액	금 회 승인액	정 산 내 역			보완전 잔공사비	보완후증감액				비고
공사명	공종별			년까지	년	계		단가 인상	단가 개정	수량 이동	계	
합계												

- ※ 1. 본 조서는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할 것
- 2. 순공사비는 공종별 제잡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4-8호 서식]

단가개정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단 가			물량	공사비	단가개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 단가개정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별지 제4-9호 서식]

계획보완에 따른 공사비 이동조서								
(단위: 천원)								
공종명	공사 물량명	단위	물 량			단가	공사비	공사물량이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합 계								

- ※ 1. 공사물량 증감사유를 반드시 작성할 것
- 2. 본 조서는 자재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3. 공사물량명에는 변동이 있는 것에 한한다.

[별지 제4-10호 서식]

설 계 자 의 견			
당초 설계자 의견		금 회 설 계 자 의 견	
		당초설계자 : 소속	성명 인
		금회설계자 : 소속	성명 인

※ 주요계획의 변경사항만 작성

[별지 제4-11호 서식]

농림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검토 내역			
지 시 사 항		이행여부 및 검토의견	
		확 인 자 : 소속	성명 인
		검 토 자 : 소속	성명 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주호, 서기관 김일환)입니다.

1. 목 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균열·파손된 노후 및 재해취약 방조제 개보수
- 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 단면 보강
- 노후 및 작동이 잘안되는 배수갑문 개보수

3.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구분	'92~'03	2004	2005	2006	2007이후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량	81	9	1	8(34)	90
	사업비계	268,643	34,300	30,577	34,000	475,223
	- 보조	268,643	34,300	30,577	34,000	475,223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량	792	69	56	78(198)	2,179
	사업비계	311,509	49,286	50,713	56,428	943,109
	- 보조	191,273	34,500	35,499	39,500	660,176
	- 지방비등	120,236	14,786	15,214	16,928	14,786

※ () 시행지구수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 배경

-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가 우려되는 관리(국가·지방)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필요

- (나)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국가관리·지방관리방조제
- (다) 사업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개보수
- (라) 지원조건 : 국가관리(국고 100%), 지방관리(국고 70%, 지방비 30%)

(2) 2006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사업비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기 타		
계	232	90,428	73,500	73,500		16,928	
국가관리	34	34,000	34,000	34,000	-	-	-
지방관리	198	56,428	39,500	39,500	-	16,928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전화 : 02-500-1990~1)
- 시·도 : 농정국
- 시·군 : 건설과 농지계(시·군에 따라 기반조성계)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사장

(4) 사업추진절차 : [별표1] 참고

-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예정지신청) →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및 착공 → 준공

<사업 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개년계획”에 반영된 지구

(2) 우선순위

- 안전진단 결과 재해취약요소가 있어 재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 시설 운용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 해일, 호우 피해 방조제중 개량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추진>

(1) 사업시행예정자가 예정지 조사신청

- 시설관리자(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후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 지방관리방조제는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개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의 반복성, 위험성, 노후정도,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을 하여야 함

(2)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한다.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의 기술능력을 판단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농림부 시행방침에 따라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보수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획예산처)전까지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 포함)
 - 사업별 추정사업비 현황
 - 사업별 추정사업비 내용(공사비포함)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사진포함)
 -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유의사항

- 시·도지사는 신청 또는 예정지조사시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물관리자에게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시 시설물 개보수 우선순위 결정은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계획수립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조제 및 부속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중에 대하여는 제외함

(3)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지구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다만, 재해발생우려 등 시급을 요하는 시설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원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설계의 난이도 사업시행자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여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토록 할 수 있다.
- 세부설계 실시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측량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때는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방조제 높이 및 단면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B.M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지구는 필히 설치하여 보존 관리토록 함.
 - 배수갑문의 홍수배제 능력이 현 설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 세부설계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를 완료한 때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고시 및 동의서 징구(필요시)등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고시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함.
-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인가후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시행 위치평면도(1/50,000, 1/25,000)
 - 방조제 및 배수갑문 보수, 보강 단면(시행전후 구분)

(2) 공정계획

- 재해위험 공종은 우기전에 완공토록 공정계획 수립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 변경(물량변동)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한함.
-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규모 형식, 구조의 변경 및 공법변경 등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부분(물가인상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함
 -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 확보계획
 -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구조도)
(보완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변경 전후 비교가 쉽도록 작성)
 - ④ 보고서식(별지 제4-1호~제4-4호 서식)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5) 공사감리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난이도 기술 인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공사상 원인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사업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 확인(사진촬영) 공정계획의 이행상태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

(7)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8) 기타사항

-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범위내에서 산정

<사업비지원>

(1) 예산의 지원

- 재해대비 긴급성 고려 및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 사업기간이 오래된 지구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효과 조기거양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 운영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지 못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6.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주요공종의 사업 시행전후의 사진등을 기록 보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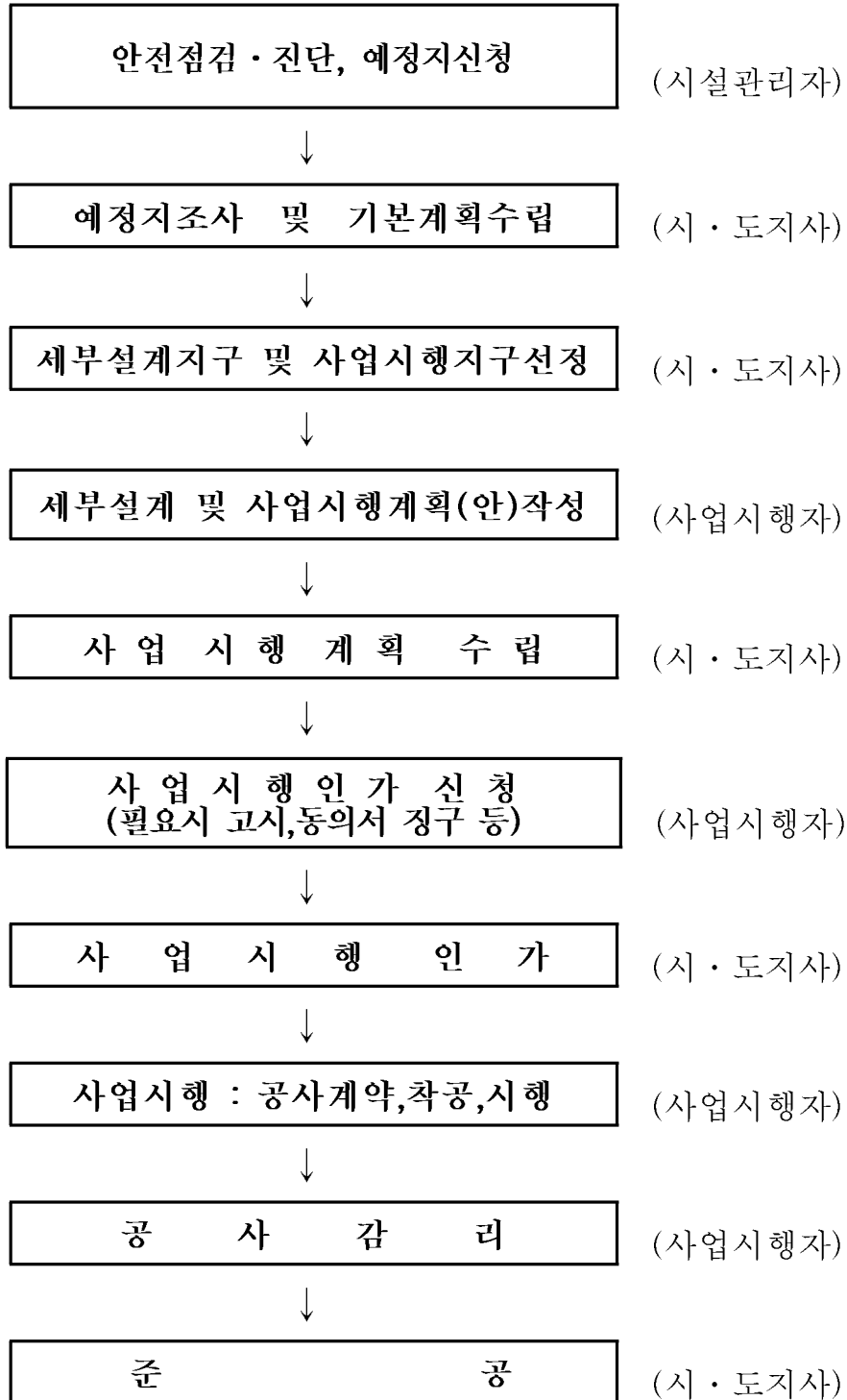
(2) 보 고

- 사업시행인가결과 보고(시도총괄표 포함) : 즉시보고 (별지 제1호 및 5호서식)
- 사업추진상황보고 : 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제2호서식)
- 준공결과 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 보고 : 즉시보고 (별지 제4호서식)

[표 1]

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인가결과보고(시행계획수립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기존시설규모 및 제원
- 개보수공종 :
-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일 :
- 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사업량>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 수원공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세부설계시 기본계획에 따른 검토사항 이행내용>

검 토 사 항	이 행 사 항

<지시조건 등 이행사항>

4. 조치내용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1-2호 서식]

지구 방조제개보수 공정계획표

지구명	지 역 사무소명	연도예산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작성방법 : 지구별 계만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지구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 수혜면적 : ha
- 사업기간 : 년 ~ 년
- 사업시행자 : , 시공회사(토목: , 기전 :)
- 주요사업내역(예)
 - 방조제(제당) : 총연장 m, 높이(→ m), 폭(→ m), 사석 m³(m²)
 - 배수갑문(수문) : 기존 런 → 보수 런(교체 런, 보수 런)
 - 수제공(용수로) : 신설 개소, 보강 개소
 - 기 타 :
- 공사추진현황(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까 지		계 획		이 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국 비 지 방 비								
○순공사비								
- 방조제								
·								
- 배수갑문								
·								
- 수제공								
·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비								
○축설비등								

[별지 제2-1호 서식]

총 26 - 13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도)

시행자	지구명	위 치			사업 착수 년도	수혜 면적 (ha)	개보수공종		총사업비	기 정산액
		시· 군	읍· 면	리· 동			수원 공명	용수로 (km)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00지부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2) 추가예산내시사업이 있을때에는 이를 추가함
- 3) 방조제개보수는 수원공명에 방조제연장, 용수로에 배수갑문 런수 표시
- 4) 지구별 계만기재(한줄)

(단위 : 백만원)

당해연도 예산액	실형액	진도 (%)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 진도 (%)	차년도이후		부진 사유
		계획	실적			금 액	공종	

[별지 제3호 서식]

총 26 - 9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시설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
- -
- -
- -
- 사업시행인가 연월일 :
-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공감 기관 :
- 시공 회사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년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인가액	년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의 사업시행 전후 사진(4"×6")을 첨부함.

[별지 제4-1호 서식]

자재 가26-37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신청) 보고

심 사 서

1. 사업명 :
2. 위치 :
3. 수혜면적 : ha(○○지 ha, ○○지 ha)
4. 개보수공종 :
 (당 초)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는 수원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저수지> - -							
<○○양수장> - -							
<평 야 부> - -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8.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하 낙찰차액 물량보완 - - 공감비 등				증액사업 비를 말 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별지 제4-2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 공사비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부대공사							
자 재 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1) 방조제개보수는 순공사비 구분을 방조제, 배수갑문 등으로 함

[별지 제4-3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³,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4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 산 액	당 해 년 도	차 년 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5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사업비증감내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79 농촌용수개발(공공)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원규, 시설서기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 국지적인 가뭄 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뭄지역 긴급예산 지원으로 사전대책 추진
- 가뭄극복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

3.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총계획	2004까지	2005예산	2006예산	2007이후
545,352	410,352	11,741	15,927	107,332

※ '93이전에는 타사업비에서 이전용 '94부터 예산에 편성 지원

< 과거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0까지	'01	'02	'03	'04
사업량	암반관정 (공)	8,980	4,942	3,063	422	267	286
	간이용수원(개소)	36,530	18,942	17,497	27	48	16
	양수저류 (개소)	1,701	1,607	-	31	20	43
	저수지준설(개소)	2,457	290	1,798	201	86	82
	소형관정 (공)	66,504	38,672	27,832	-	-	-
사업비		410,352	190,400	167,952	22,000	15,000	15,000

* 2001년도는 기정예산(22,000백만원) 외에 재해대책예비비 등 145,952백만원 추가지원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하천바닥굴착, 포강개발 등 간이용수원개발, 양수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 등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비(예산): 지자체 균특예산요구에 대해 기획예산처 심의 지원

나. 2006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05년 (A)		'06년				증감 (B-A)	비고
			지자체신청		조정(B)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741		14,353		15,927	4,186	
광주				380		380	380	
울산		796		950		950	154	
경기		1,088		637		637	△451	
강원		544		544		544	-	
충북		759		760		760	1	
충남		1,000		1,844		1,844	844	
전북		1,752		2,349		2,349	597	
전남		2,669		2,000		2,300	△369	
경북		1,524		3,289		4,563	3,039	
경남		1,609		1,600		1,600	△9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전화 : 02-500-1978, 1980)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농정과, 산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

- 가뭄지역조사(시군) → 사업비(자금)지원요청(시·도) → 예산(자금)지원(기획예산처·농림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시·도)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사업대상지구선정>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이 어렵거나 예상되는 지역(천수답 등 농경지)
 - 가뭄상습지 가뭄대책 집중관리지구 우선 등(1,600지구, 58천ha, 농림부 용수51320-610(2002.8.30)호)
 - 지자체별 가뭄대책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지원
- 예) 수혜면적 5ha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로 수리시설 불비 및 내한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단, 5ha미만 우량농지는 자체 별도 선정 기준 마련 추진 등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1)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
- (2)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나. 가뭄지역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

- (1) 시장·군수는 가뭄이 발생하면 현지의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지사에게 사업시행을 건의함
- (2)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위치도, 가뭄상황, 농지의 고갈, 균열, 저수율, 항구 시설가능성 등)
 -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효과,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다. 가뭄대책지역 선정·추진 및 예산배정(자금교부)신청

- (1) 시·도지사는 금년예산 범위내에서 시급성에 따라 재해대책지역 선정, 사업종류와 규모등을 가뭄대책 사업지구 선정 기준 및 사업내용에 따라 연중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추진
 - 상반기에 사업지구 조기 선정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가뭄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추가 소요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방안 강구 등
- (2)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은 금년도 영농기부터 다음년도 봄가뭄전까지 시행할 계획공종을 신중히 선정 추진하여 가뭄에 대비
- (3) 가뭄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자금)을 소요내역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교부 신청함.

라. 시·도지사는 가뭄의 장기화와 전국적 확산에 대비한 가뭄극복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의 유관기관(민간, 공공, 소방서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동원 등을 함

마. 가뭄대책 장비 및 자재 확보

- (1) 간이용수원개발 위한 중장비 등 확보
 - (가) 시장군수는 하천굴착용 백호, 도자, 트럭등 확보에 노력
 - (나) 지하수개발을 위한 착정기 확보에 노력
- (2) 자재확보 공급
 - (가) 양수기,송수호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 (나) 비우심지역의 장비 및 자재 활용방안 강구

바. 사업시행과정에서 안전관리

- (1) 하천굴착등은 소나기성 강우에 대비 제방안전, 기자재의 유실 및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에 대비하고 배수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풍수해 사전대비 간이용수원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2) 전기모타를 설치 양수할 경우 감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가) 시도지사의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균특예산배정 및 자금을 지원함

(2) 자금운용 및 관리

- (가) 교부된 국고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시장군수는 준공시설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규정등에 따라 유지관리 함.

나. 보 고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7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항구수리시설의 정도와 가뭄우심지역을 고려하여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함.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2).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3).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기획예산처

[별지 제1호서식]

1. 200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가. 총괄

(금액 : 백만원)

시·도 (시·군)	농업용수개발계획(개소)					사업비			비고
	계	관정	소규모 양수장	저수지 준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계									

나. 세부내역

○ 사업명 :

시·도 (시·군)	지구명	위치		수혜 면적 (ha)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 ※ 1. 사업명 : 관정, 양수장설치, 저수지준설 등 (해당사업별로 작성)
- 2. 사업량 : 관정개발(공수),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천 m³)

2. 2006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사업명	계획		추진실적 (개소수)					비고
	사업량	사업비 (A)	착수 준비중	공사중	완료	실형액 (B)	B/A (%)	
계								
○ 관정								
○ 양수장								
○ 준설								
...								

- ※ 1. 사업량 : 관정개발(공), 양수장설치(개소), 저수지준설(개소) 등
- 2. 사업비 : 국고기준, ()외서 지방비
- 3. 추진실적 : 상단에 개소수, 하단에 ()로 완료예정일 기재
 - 착수준비중 : 미착수지구(개소)수 기재
 - * 사업량(계획) = 착수준비중 + 공사중 + 완료지구수 임

② 소규모 용수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원규, 시설서기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인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진흥지역내의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
- 사업효과 조기거양을 위하여 준공위주로 집중투자
- 공사중 부분급수가 가능하도록 시행
- 경지정리등 타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 1」 (‘04~’13)	‘04까지	‘05	2006
사업량(천ha)		15.0	4.2	0.1	0.2
사 업 비	계	157,800	84,775	24,452	34,438
	보 조	78,900	54,180	12,226	17,219
	용 자	-	-	-	-
	지방비 자부담	78,900 -	30,595 -	12,226 -	17,219 -

※ 주1 :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
-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사업범위 : 수혜면적 30 ~ 49ha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6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완료)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소규모용수개발	0.2	34,438	17,219	17,219	-	17,219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전화 : 02-500-1978, 1980)
- 시·도 : 농정국 기반조성과(농지개발과, 농업기반과, 농산(업)지원과)
- 시·군·자치구 : 건설과(농정과, 산업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사업대상지구선정>

가. 선정기준

- (1) 수혜면적이 50ha미만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2)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을 선정할 수 있음.

- (3)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지구

<사업계획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1) 저수지

- (가)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 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농지가 과다하게 수몰되거나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나) 가뭄상습지역에서는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
- (다)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 - 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특히 간접유역에서 도수할 경우에는 그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라)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
- (마)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를 저수량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바) 저수지 하류부에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용수수요도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2) 양수장

- (가)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나)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압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3) 용·배수로

- (가)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나)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다)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나. 예정지 답사 및 사업시행 신청

- (1) 사업시행예정자(시장·군수)는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2) 예정지답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및 시군농업·농촌발전계획포함 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효과
 -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 의견

다. 사업시행지구 선정 및 예산신청

- (1)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함.
- (2) 신규지구 선정은 전문가위원회(10인 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라. 기본계획수립

- (1) 시·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기본 조사를 지시함.
- (2)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3)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물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확보계획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4) 용수개발계획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후 당해 지구에 부존하고 있는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5)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6)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물관리자동화시스템(홍수 예정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등) 구축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7)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및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시·군농어촌발전계획 포함여부,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기본설계도서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사업비 내역
- 사업효율 분석결과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 조사자 종합의견

(8)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함. 이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시·도지사의 지시에 의거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9)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정함.

(10)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마.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예정자로 하여금 세부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단, 기본계획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세부설계시 반영토록 지시

(2) 사업시행예정자는 세부설계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시행할수 있고, 이경우 우수한 설계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세부설계서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예정자와 수혜민의 희망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4)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5)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 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6)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경제성과 타당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통보함.

바.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1)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결과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즉시 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3)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사. 공정계획

- (1)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별지 제3호 서식)
- (2)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 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3)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를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해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6)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7)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8)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 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9)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10)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아. 시행계획변경

-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자.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다음년도 공사계획물량은 전년도에 매입토록 하여 협의불응을 이유로 계획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 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할것.
- (2) 농작물 보상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3)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할것.
- (4)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할것

차. 공사감리

- (1)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규정에 의거 농업 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함.
- (2)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하여야 함.
- (3) 공사감리원은 감리수행지침,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 (4)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5)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6) 공사감리를 위탁시행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 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7)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
- (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부 고시 제1996-31호('96. 6.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 10. 25)호)에 의하여야 함.
- (9)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여야 함.

카. 사업준공 및 검사

- (1)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 (2)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3)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수 있음. 단, 준공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다.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다)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시켜서는 안됨.

(라)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자금운용 및 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지방비 부담액은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

(다) 자금은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여야 함

과. 기타사항

(1) 자재 공급 및 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

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나)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 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다)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라)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풍수해 사전대비

- (가)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뚝,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나)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다)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라)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등의 침수방지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3) 타법 관련사항

- (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나)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는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하므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업의 평가

- (1)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계약요건 포함)
 -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함.
-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나. 사후관리

- (1)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2)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3)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4)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우리부 고시 제1996-31호, '96.6.18)에 의하여야함

다. 보 고

- 사업시행인가 보고 : 사업시행 인가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준공인가결과 보고 : 사업준공인가 직후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6. 2007년도 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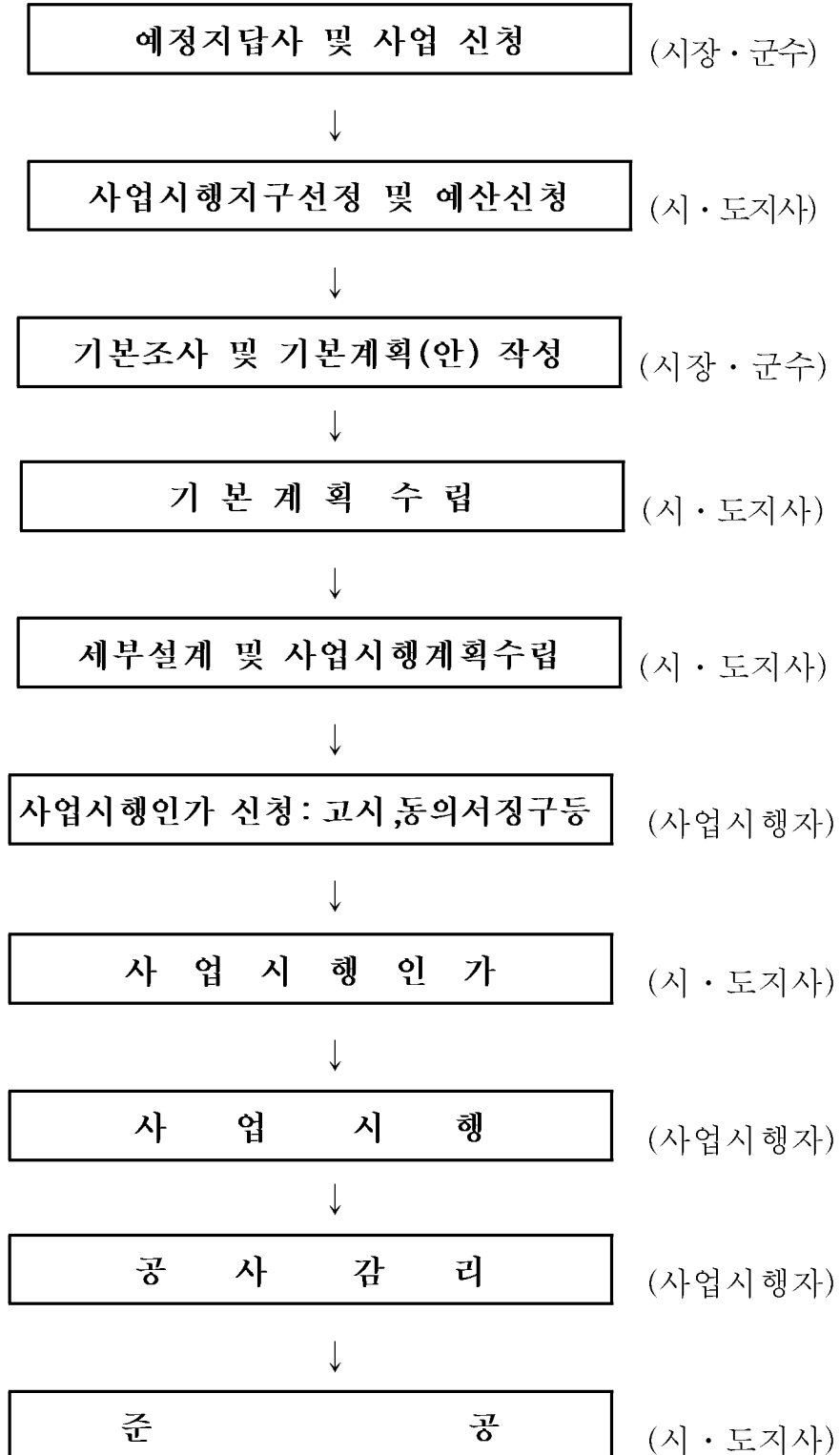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예정지역 관할 시장·군수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기획예산처

[별표 1]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군

(단위 : 천원)

사업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요시설명	수혜면적(ha)	총사업비	00년 까지	00년 계획			00년 이후	비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2호서식]

0/4분기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시·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업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 배정액	시·도 자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 2005까지 : ha ○ 2006년도 : " ○ 2007이후 : "
순공사비												
개담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시·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해면적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해년도예산			실형액	진도(%)		공공후계형 착이누실	%	비고 (부진사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시	읍면																				
계																					

- 주) 1.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2.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3.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4.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1. 사업명 :
2. 지구명 :
3. 위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 · -○○양수장 · · ○평 야 부 ·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사업비 (천원)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당초	변경	증감		
○ 단가인상 ○ 낙찰차액 ○ 물량보완 - - ○ 용지매수보상 ○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 다. 사업계획 개요
-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8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 아. 지급자재조서
-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업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공사감독배치상황

도	사 업 시 행 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③ 지표수 보강개발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기반정비과(과장 이원규, 시설서기관 김길영)입니다.

1. 목 적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내한능력이 부족한 수원공 보강개발로 가뭄지역의 해소
- 수원공 위주의 집중개발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 발용수 확보가 필요한 지역도 포함하여 개발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조내지제12조, 제16조내지제18조, 제90조, 제94조, 부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계	2004까지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 업 량		32.0	20.1	0.9	1.5	9.5
사 업 비	계	744,257	355,257	59,239	62,150	267,611
	보 조	729,982	340,982	59,239	62,150	267,611
	용 자	-	-	-	-	-
	지방비	14,275	14,275	-	-	-
	자부담	-	-	-	-	-

※ 1. 사업량은 준공면적 기준임

2. 사업비는 '96까지(국고 70%, 지방비 30%), '97이후(국고 100%)임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수원공 시설이 열악하거나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는 지역에 대한 추가소요 농촌용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곡생산기반 확충

(2)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 시설규모 확장

(3)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사장

(4)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비등 추가투입지구 우선지원

나. 2006년도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지표수보강개발	77지구	62,150	62,150	62,15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02-500-1979)
- 시·도 : 농정국 농업기반과 (농정과, 농산지원과, 기반조성과)
- 시·군 : 건설과 등
- 농업기반공사 지사 기반조성부

다. 자금지원대상자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선정기준

-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우선순위

-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속하여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수리시설도 개발가능
-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에 포함되고, 가뭄 상습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장기적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

(2) 사업시행 예정지 신청

- (가) 사업시행예정지(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는 우선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을 검토한 후 예정지를 답사하고, 저수지나 양수장의 규모확장 등 보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

- (나) 사업시행예정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한능력조사표,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포함 여부, 위치도 등을 첨부.

(3) 사업시행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 (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예정지에 대하여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내한능력, 사업효율성, 시행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시행지구를 선정,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함.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예정지구현황 및 위치도 (시군농어촌발전계획포함여부, 경지정리현황 기재)
- 주요공사계획 및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효과
- 개발여건 (기존시설현황, 사업계약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 지역주민의견 - 기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 신규지구 선정은 전문가위원회(10인이하로 민간전문가 포함)를 운영하여 사업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장기화

를 방지하는 예산규모를 감안한 적정사업량 범위내 추진

- (나) 농림부 장관은 지구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50ha미만의 지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50ha이상 지구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
- (다) 50ha미만지구의 기본조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용역업체(이하 조사설계전문기관이라함)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라) 기본조사자는 우선적으로 타법, 타사업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시행여건 등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마)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자원 확보·이용 체계의 개선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

< 공 통 >

-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충용수 개발이므로 유역상황 및 당해지역의 기존시설의 이용체계나 용수계통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대단위농업종합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촌정비 사업을 당해지역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 또는 병행가능여부 검토

<저수지>

- 수혜지역 수자원의 수급과 수질의 변화 전망
- 기존저수지 유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
- 내한능력을 10년빈도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미흡할 시 그 대책안(案)
- 저수지 제당의 안정성(단면부족, 누수 등), 여수토방수로의 홍수 배제능력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시 그 대책안

<양수장>

- 하천의 갈수량, 수질현황 및 전망에 대한 대책
- 홍수시 침수방지대책과 취입부의 퇴적에 대한 대책

<용수로>

○ 현행 용수이용체계와 수로조직표 및 수로조직체계 개편 구상안

(4)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세부설계를 실시토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함.
- (나) 세부설계자는 조사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서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하되, 기본조사 미흡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조사자에 대하여는 조사비 감액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사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개산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 (라) 세부설계자는 저수지, 양수장의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에 시설관리자가 시설물 운용지침을 요청할시는 제공하여야 함.
- (마) 시·도지사는 성과품을 엄격히 검수하여 설계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사유를 규명하고 사업시행전에 보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 (바) 수혜면적은 수리안전담면적, 보강개발면적 및 신규편입면적의 합계 면적과 개발 면적으로 표시

(예) 수혜면적 100ha(수리안전담 60ha, 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개발면적 40ha(보강개발 30ha, 신규 10ha)

※ 면적구분

- 수리안전담 : 내한능력 10년빈도 미만의 기설 수원공의 수리담을 내한능력 10년빈도 담면적으로 환산한 면적
- 보 강 개 발 : 기설수원공의 수리담면적에서 수리안전담 면적을 뺀 면적
- 신 규 : 보강개발로 인근 수리불안전담 신규 편입면적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가) 사업시행자는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고시내용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나)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 (다) 시·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 사본(계속지구는 예산배정결과 포함)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시행인가 보고시는 사업계획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행계획의 변경내역서를 첨부.

(마)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이행.

(6) 공정계획

(가)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중 영농급수와 하절기 홍수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나)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우기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 기·자재(마대, 말뚝, 중장비 등)를 확보하고,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함.

(7) 시행계획의 변경

(가) 기 착공하여 시행중인 지구에 대한 계획변경(물가변동에 의한 단가 변경은 제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억제하며,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혜면적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수혜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감하는 경우. 다만, 공사비를 국비외의 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저수지의 제당높이, 만수위, 물넘이 형식의 변경과 양수장 규모의 변경 등

(나)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① 준공예정지구인 경우에는 재원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계획

②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1/50,000, 1/3,000~1/6,000)

③ 변경되는 공종의 주요 설계도면(평면도, 표준도, 주요구조도)

- 설계도면은 보완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붉은색 선으로 삽입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

④ 보고 서식 (별지 제3-1~3-5호 서식)

⑤ 기타 주요사항

(다)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 소홀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조사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현저한 과오로 당초 조사설계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경우에는 조사설계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보상규정에 의함.

(나)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작물 보상 등은 피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9)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시행

(나)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시·군직원 등을 공사감리자로 임명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용역업체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함.

(마)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 여부 및 공정계획을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수시 확인(사진촬영 포함)하여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함.

(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의함.

(10)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가) 시·도지사는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년도사업예산을 신청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다)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시켜서는 안됨.

(라)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조사설계비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자금운용 및 관리

(가)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은 당해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도록 함

(11) 사업준공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나)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

(다)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기존 계속지구 예산을 전·이용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전·이용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12) 기 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대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행정사항>

가. 사업의 평가

(1)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 인센티브 또는 역인센티브 제도로서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규모를 증감토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평가 주요항목은 신규착수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필요시 조정
 - 지자체별 적정사업량 범위내 착수(사업장기화 여부등)
 - 전체지구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지구 선정
 - 선정된 신규지구의 기본조사 등 사전 실시
 - 신규지구 사업규모, 사업성, 시급성 등 타당성(제약요건 포함)
 - 시행중 사업지구의 과도한 임의 변경(지구변경, 규모확대 등) 여부
 - 준공 또는 주수원공 완공여부 추진 여부
 - 전문가위원회 운영 여부

나. 사후관리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업시행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

다.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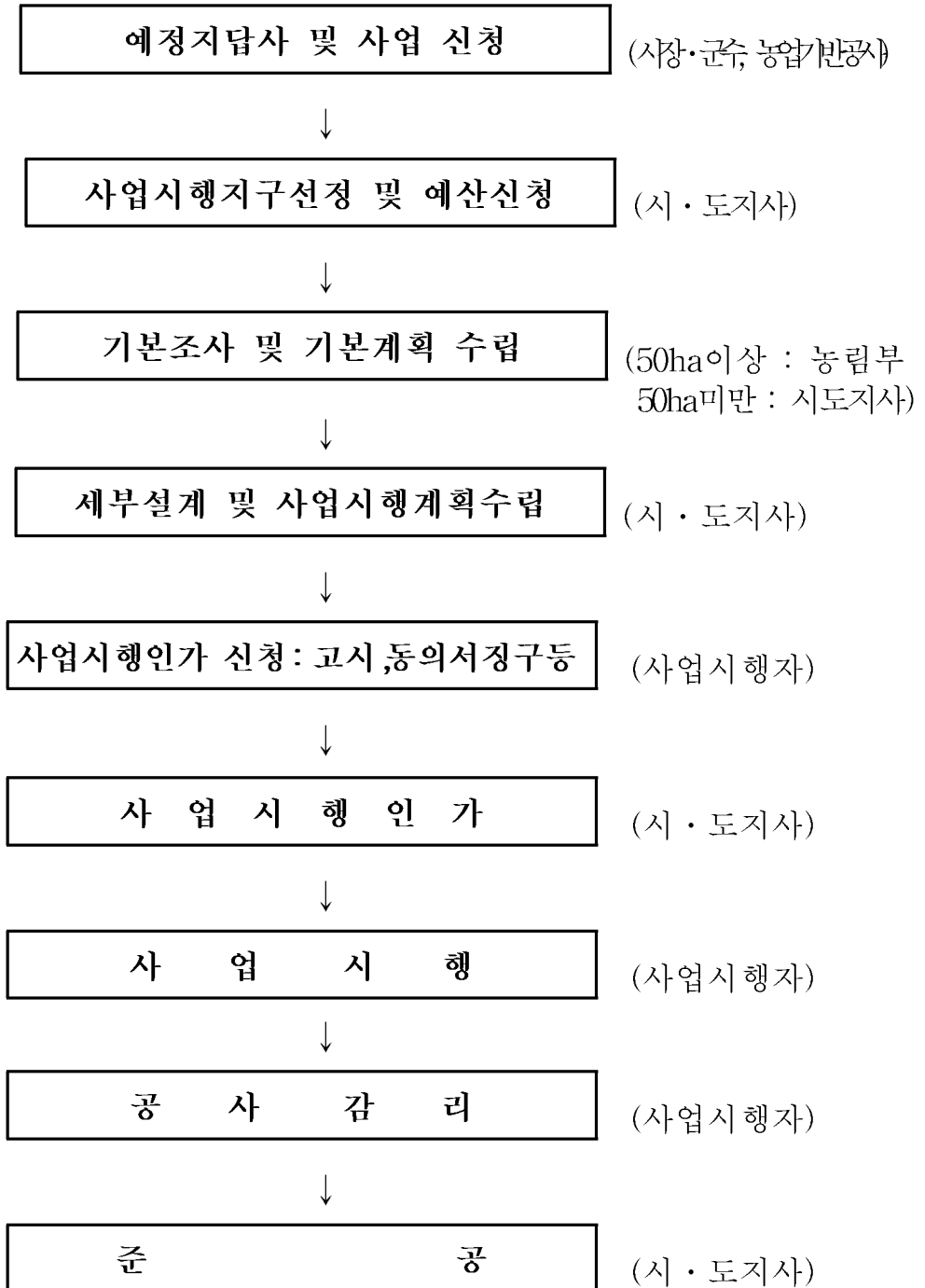
-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시·도 총괄표) : 즉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즉시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별표 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체계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총 26-36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인가(예산배정) 결과보고(총괄)

(시 · 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 농기공)	지구명	위 치		수원공		주요사업내용		사업착수년도	사업비 현황				2006 주요 공사	2006분기별 사업비					
		시· 군	읍· 면	시설명	개발적 개	시설명	사업량		총사업비	'05 까지	'06 계획	'07 이후		1/4	2/4	3/4	4/4		
합 계																			
- 준 공																			
- 계 속																			
- 신 규																			

※ 지구내역은 사업시행자별 준공, 계속, 신규지구 순으로 작성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2006년 /4분기)

(시·군)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농조)	지구명	위 치		시 설 명	개발면적 (ha)	사업착수년도	총 사 업 비	'05 까지	'06 예산	'06년 실형액	진도(%)		공 래 누 계 실 형	누 계 진 도 (%)	'07 이후	기 타 (부진 사유)	
		시· 군	읍· 면								계 획	실 적					
합 계																	
- 준공																	
- 계속																	
- 신규																	
농조계																	

- ※ 1) 매분기말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예산추가지원 등 변경조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여 보고

총 26-36

OO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승인결과보고)

1. 사업계획개요

- 위치 : 도 시·군 읍·면 리·동외(※사업구역위치도 S=1:25,000 첨부)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내역
 - 저수지 : L= → m, H= → m(제당송상 m)
 - 여방수로 : L= → m, H= → m
 - 양수장 : HP × mm × 대 → HP × mm × 대
 - 용수로 : L= m(B×H= ×)
 - 이설도로 : L= m(B= m, con'c포장, 아스팔트포장, 사리부설 등 구분)
 - 기타
- 공사기간 : 20 . . ~ (당해년도 준공계획지구 표기)

2. 주요 보완내용

- 단가인상 : 백만원(%)
- 단가개정 : 백만원(구체적인 사유 및 금액변동내역 기재)
- 낙찰차액 : 백만원
- 물량변경 : 백만원
(작성예)
 - 제당 덧쌓기(L= m, H= m →) : 백만원
 - 여수로·방수로 (L= m, H= m →) : 백만원
 - 양·배수장 (HP x mm x 대 →) : 백만원
 - 용수로 (B x L x H m →) : 백만원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까지	계획	이후	증감내역				
	기승인	변경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낙찰차액	물량변경
합계										
공사비										
- 순공사비										
·저수지										
·양수장										
·평야부										
·부대공사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										
기타										

[별지 제3-2호 서식]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공사개요

총 계 획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계획	비 고

6. 보완내용

공 종	보 완 내 용		보완사유 및 심사의견
	당 초	변 경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 저수지							
· 양수장							
· 평야부							
· 부대공사							
- 자 재 대							
○ 용자매수보상비							
○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예 비 비							

[별지 제3-4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m²,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2005까지		2006계획		2007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3-5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05까지	'06계획	'07이후	계	단기인상	단가개정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총 26-9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준공처리 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총사업비 : 천원
- 수혜면적 : ha(기설 , 보강 , 신규)
- 개발면적 : ha(보강 , 신규)
- 사업시행자 :
- 주요 공사내용
-
-
- 사업시행인가연월일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 설계 기관 : ○ 공사 감독 :
- 시공 회사 :

2. 사업시행전후 시설제원 변동현황

시 행 전	준 공 후

※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규모 및 용수량 변동사항 비교 기재

3.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 고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S=1/25,000 지형도) 및 주요공종의 시행전후 사진(4"×6") 첨부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설관리과(과장 김주호, 토목사무관 박종훈)입니다

1. 목 적

-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등 권역중심으로 묶어서 종합개발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 계획적인 투자로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 및 중복투자 방지
 - 조사·설계·입찰·계약 등의 사업시행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합개발방식의 시범모델 개발을 위해 조사설계후 '99년 시범사업 착수(4지구)
- 농경지대구획화, 수로구조물화, 자동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된 영농기반 구축
-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하고,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된 경지
 -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 2-3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종합개발이 가능한 지역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조 내지 제2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구 분	계	'92~'03	2004	2005	2006	2007이후
사업량(지구)	4	(4)	(4)	1(3)	(3)	(1)
사업비(백만원)	147,963	88,593	20,340	14,825	15,722	8,483
- 국 고	132,518	80,085	18,306	13,342	14,149	7,636
- 지방비	14,445	6,508	2,034	1,483	1,573	847

※ 사업량 ()내는 계속지구수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 내용

(1) 추진 배경

-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수,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다양한 개발 공종을 package화하여 연계 추진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절차간소화 등 사업효과 극대화
- 계획적인 투자로 단위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 및 사업시행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개발 지원방식의 도입이 필요
- '98~'99년 조사설계 및 '99하반기 사업 착수

(2)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지역실정에 맞게 단위사업 구성)
 - 농업진흥지역내 용수개발 대상지역내에서 2-3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종합개발
 - 농업용수 신규·보강개발 (저수지·양수장·용수로 설치 및 보강)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받기반정비
 - 경지정리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재정리)
 - 배수개선
 - 기타 종합개발이 가능한 생산기반정비사업

(3) 지원 대상

- 시장·군수(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지역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
- 지원기준
 - 사업비 : 국고90%, 지방비10%
 - 조사설계비 : 국고 100%

나. 2006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3	15,722	14,149	14,149	-	1,573	-

<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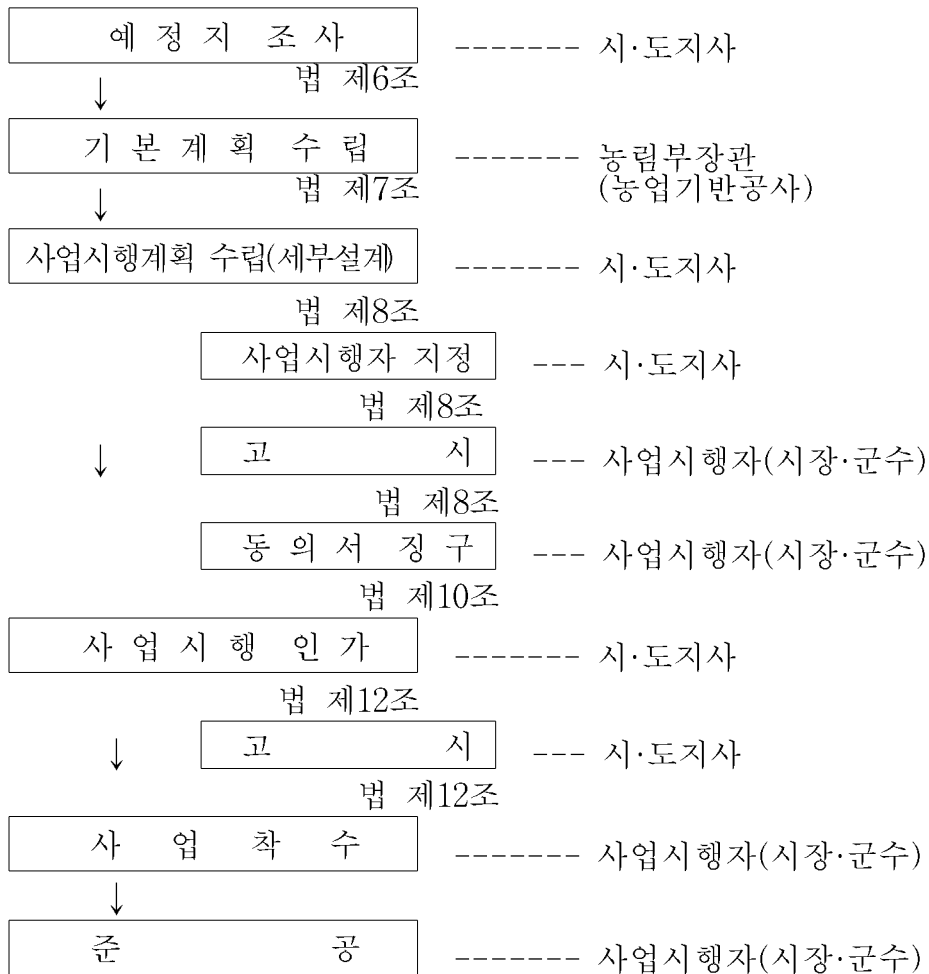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농업기반공사 사장)

나.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02-500-1996~7)

(2) 사업시행자 : 해당 시·군 건설과(농업기반공사 지사)

《 사업추진 체계도 》



다. 사업시행

(1) 예정지조사

- (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지조사를 실시함
- (나) 농업생산기반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을 통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 농업진흥지역
 - 단위사업간 연계성 유지가 가능하고, 공사비·용지매수비, 설계·공사감리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
 -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단화되었으며, 소요사업비가 저렴하고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지역, 도시·공단 등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 사업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
- (다) 예정지조사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가)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기본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개별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함
- (나) 기본조사시에는 공종(工種)별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주요 공종에 대하여는 대안별 비교 설계를 통하여 최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3)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 (가) 세부설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예산형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 (나) 세부설계시에는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마) 시장·군수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세부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지구여건·예산형편 등을 감안한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한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명시된 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나) 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5)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동의서 첨부)
- (나)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를 한때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라)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연도별 사업시행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나)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공종을 우선 시행하되, 병행 시행이 가능한 공종은 최대한 병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다) 종합개발을 통하여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지정리 병행시 지구내 도로, 용·배수로, 배수로구역의 감보처리 (용지매수비 절약)
 - 용·배수로, 정지 굴착토량의 유용성토 처리(공사비 절감)
 - 세부사업을 일괄 설계함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효율 인하(설계감리비 절감)
 - 기타 입찰공고료 등 절감
- (라)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공종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 도지사는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대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무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바) 사업비수지예산서의 연도별 내역은 총괄표 및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사)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정계획에 비해 공사추진이 부진한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 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7) 시행계획변경

- (가) 시행계획변경(설계보완)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계획변경을 실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내지3호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음 》

- 주요시설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수원공과 배수장·방조제·배수감문 및 터널의 규모·형식·위치 등의 변경
- 길이 100m이상 교량공사의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터널·댐 등의 특수한 구조물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기타 특수 전문기술의 추가 또는 공법의 변경
 - 중요 수문처리기법의 변경
 - 기초지반개량공법
 - 특수공종의 신설 또는 변경

(나) 총사업비 관리대상지구(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는 계획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계획변경에 있어 당초 설계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설계비 회수 및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8) 용지매수 및 보상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집행하되, 사전에 대상물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애물 보상은 보상비 지급후 철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공사시행 시기에 부합하도록 용지매수 및 보상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보상 적기를 놓쳐 작물경작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설계시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실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비교하여 적정을 계상함으로써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많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용수로의 경우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도록 용지의 매수 및 보상을 실시하되, 용지매수 불응 등을 이유로 공사를 분산 시행하여 용수공급이 지연되는 등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공사감리

(가) 공사감리원은 경험이 많은 전문기술자를 복수로 고정 배치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음

(다) 공사감리원은 공종에 따라 자격있는 기술자가 담당하고, 공사물량에 상응하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업무규정, 계획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마) 주요구조물의 경우에 시공 후 매설되는 부분(기초처리 포함)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의 공종에 대하여는 복수확인제를 실시하고, 시공 확인자료와 현장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

(바) 주요구조물(양배수장, 댐, 배수갑문, 평야부의 대형공작물 등)의 기초터파기 공사는 공사감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전문기술 요원과 2급기술자의 공동검사결과 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함

(10) 검 사

(가) 기성고 확인

○ 사업시행자는 기성고 확인을 필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함

(나) 연도말 검정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준함

(다)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시·도지사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를 기초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함
 - 사업준공시에는 사업비, 개발면적, 시설물의 관리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

라.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함.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마. 기타 사항

- (1) 하천개수가 되지않은 지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시행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하천개수 사업비를 확보(하천관리청 부담)한후 병행 시행하여야 함

<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후,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보 고

- (1) 사업시행계획수립 보고 : 시행계획수립시 (시·도지사 →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항[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포함]
- (2) 사업시행계획변경 보고 : 시행계획변경시 (시·도지사 → 농림부)
- (3) 공정계획수립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시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첨부
- (4)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말 현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림부)

다. 기 타

- 본 요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개별사업의 시행지침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발면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세정리)	경지정리	받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단 위 사 업 별 내 역						비고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세정리)	경지정리	받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o								
계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사업비수지예산서

지 구 명 :
 사업시행인가일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개발면적 : 증 수 량 : M/T

< 수 입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천원)

과 목	총사업비	연 도 별 내 역			비 고
		전년까지	금년계획	내년이후	
공 사 비 o순 공사비 o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o측량설계비 o공사감리비 o사업관리비 o잡 지 출 o					
계					

※ 총괄표 및 공종별로 작성

○○지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 진도보고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 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국 고 지 방 비 지방교부금 기 타											
계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 계 획		전년 까지		금 년 계 획					누계 진도 (%)	내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진도 (%)	총계획 (A)	○/4분기 계 획 (B)	○/4분기 까지실적 (C)	C/A (%)	C/B (%)		
공 사 비 ○순 공사비 ○지급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 지 출 ○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서재연, 사무관 김중현)입니다.

1. 목 적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전략품목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적으로 얼굴 있는 품목 및 브랜드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책임농정 추진능력을 배양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개발 및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전략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
 - 신기술·신지식·신유통을 활용한 차별화·브랜드화된 상품개발 및 육성으로 수익성제고
- 지역의 농업적 특성과 고유의 자연자원·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상호 연계 하는 향토자원의 개발·육성 등을 통해 농촌활력 증진
-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7-'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07~'13
○ 지역특화사업	계	928,907	80,000	122,420	164,996	2,692,584
	국 고	516,738	40,000	61,210	82,498	1,346,292
	지방비	412,169	40,000	61,210	82,498	1,346,292

※ '04년까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2006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1) 예산 : 82,498백만원(국고)

(2) 배정기준

- 예산배정 : 국회에서 확정된 시·도별 예산은 시·도별 조정 없이 배정
- 자금배정 : 시·도별로 월별 자금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 진도에 따라 배정

나.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사업시행 : 시장·군수)

다.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02-500-2084·5)
- 시·도(총괄) : 농정국 농정과
- 시·군·자치구 : 농정과(또는 산업과) 등 관련부서

라.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농업인, 생산자단체)

마. 지원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략품목의 개발 및 육성 사업
- 지역의 농업특성과 자연자원, 전통문화자원 등을 연계 한 향토자원 개발 사업
- 재해방지대책 및 친환경농업관련 사업

※ 다음항목은 지원대상이나 총 사업비에서 제외

- 부지매입비, 음식점·숙박시설 설치비 또는 임대비, 해당지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판매장 설치, 행사성·경상적 경비

바.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방비는 국고 지원분 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며, 자부담을 부과 가능
 -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사업단위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 사업 조건과의 형평성 및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을 위하여 일부 자부담을 부과하여 사업 추진

○ 아래의 예시를 적용하여 추진

- 농협·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의 경우 : 자부담40%(가공공장은 50%)
- 작목반·개별 농업인의 경우 : 자부담50%
- ※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을 사전에 일부 조정하여 시행 가능 (이 경우 농림부 보고 : 2월 10일)

사. 사업시행체계

- 사업신청(보조사업자→시·군) → 시군 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 심의(시·군) → 기획예산처의 한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신청(시·군→시·도→국가균형발전위·농림부) → 검토 의견 첨부 예산신청(국가균형발전위·농림부→기획예산처) → 예산확정(기획예산처→국회) → 예산배정(기획예산처→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추진기본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시·군→시·도) → 사업검토 보완 및 승인(시·도→시·군) → 사업시행(시·도, 시·군, 보조사업자) → 자금배정(농림부→시·도→시·군)

아. 전략품목 지정

- 시장·군수는 전략품목으로 육성코자하는 품목을 정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 제출함
- 시·도지사는 시·군이 육성코자 하는 전략품목에 대하여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연도 1월 30일까지 시·군별로 전략품목을 지정하고 사업추진
 - 시·도지사가 직접 육성해야 할 품목은 시·도의 전략품목으로 지정 가능
 - ※ 시·군간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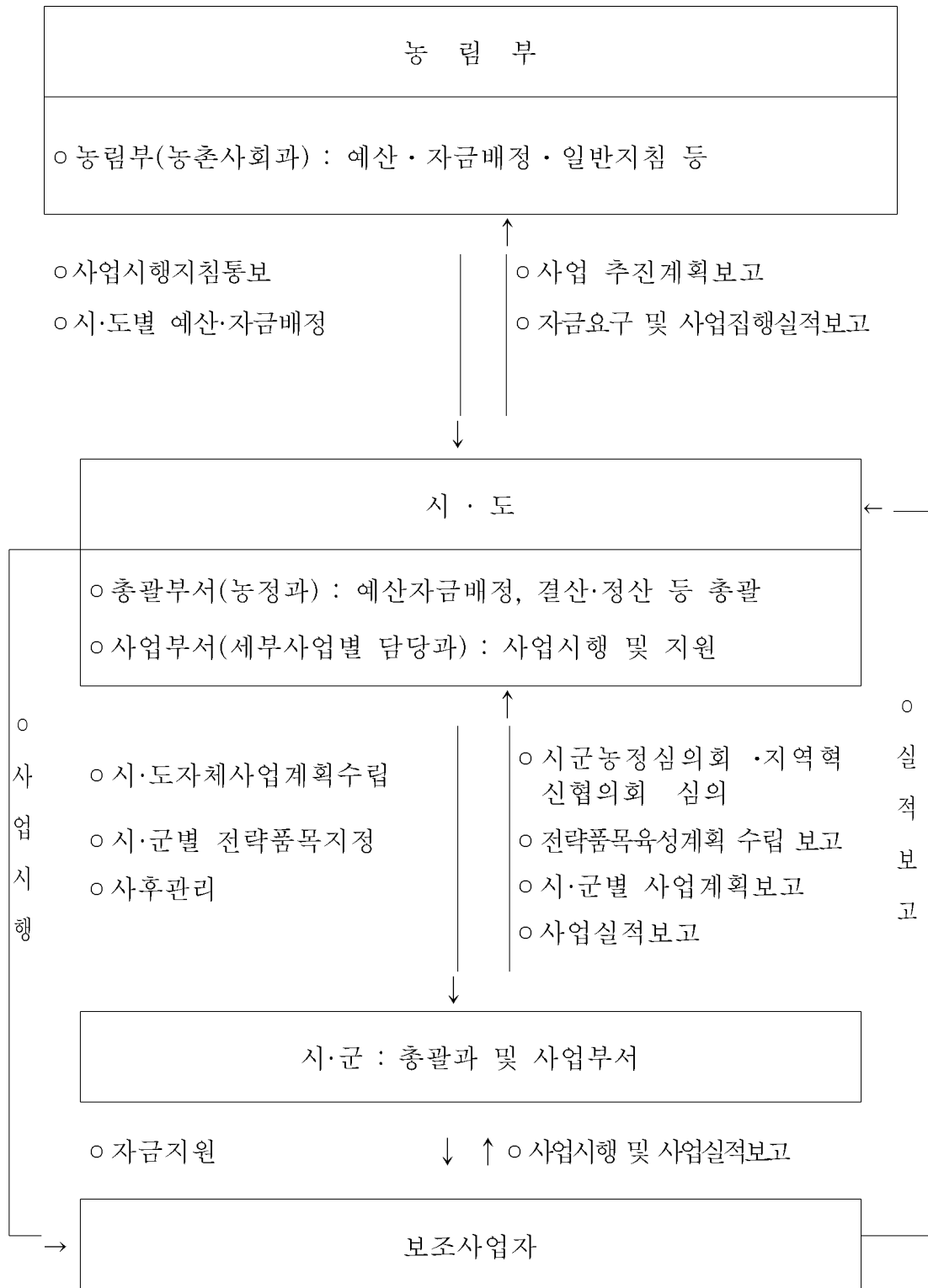
○ 전략품목지정 기준

- 특정 브랜드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
- 관내의 농업인 등이 전문기술(특허, 신지식농업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품목 육성 및 생산 조정 등과 관련 과잉생산 방지 등에 의지가 있는 품목
- 전체 농경지 면적 중에서 특정품목의 생산 면적이 전국평균보다 10%이상 많은 품목 (특화계수가 1.1이상인 품목)
 - 특화계수 = $\frac{(\text{시·군의 해당작물 재배면적})/(\text{시·군 경지면적})}{(\text{전국의 해당작물 재배면적})/(\text{전국경지면적})}$
-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은 전략품목 지정에서 제외

자.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시행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시책 및 추진방향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 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보조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일 경우에는 최소 5호 이상의 농가가 포함되고, 단위 사업당 국고기준 500만원 이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 전략품목에 대한 클러스터화, 구성주체간 조직화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거나, 기존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시군농정심의회·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별지 제6호서식 “지역특화사업 추진 계획서” 활용)을 작성함
- 시장·군수는 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전략품목 등을 검토, 전체 사업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2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함

< 사업시행체계도 >



차. 사업비 집행

- 시·도지사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담당과(또는 시·군)로부터 자금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별지 제3호 서식)을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총괄 자금배정을 요구
- 농림부장관은 예산 집행상 필요하거나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 소관 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전용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전용이 필요한 경우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요청하여야 함
 - 지자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농림부는 지자체의 전용 요청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당초 사업목적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전용을 제한 할 수 있음

카.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사업과는 소관 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함
-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에 현지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국고 50백만원 이상이 지원된 단위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업의 특성상 농림사업의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 도난 등 표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방침을 통해 안내판 미설치 가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림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함
 - 필요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사업비의 20% 범위안에서 이월할 수 있음

다.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

파.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함(서식 별도통보)

하. 보고·기타

- 전략품목 지정 및 육성계획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사업시행 전년 12월 30일까지
- 사업 세부 추진계획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 시·군 → 시·도 : 1월 30일까지
 - 시·도 → 농림부 : 2월 15일까지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시·군 → 시·도

- 시·도 총괄부서 → 농림부(전월 15까지)
- '07년으로 이월한 현황보고
 - 시·도 → 농림부 : '07년 3월 10까지
- 정산보고
 - 시·도 → 농림부 : 사업비 정산내역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Excel서식 별도통보)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또는 시·도

나.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다. 신청절차 : 보조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마. 2007년도 예산신청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07년도 농림부소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2006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함
- 시·도지사는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 소요예산액을 2006년 3월 31일까지 농림부(정책기획팀)에 전산입력하며,
 -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을 2006년 3월 31일까지 농림부(농촌사회과)에 제출함
 - 농림부는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예산 검토의견 설명자료로 활용

※ 2007년부터 추진되는 향토산업육성시범사업은 농림부(농촌사회과)에서 마련한 별도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예산신청

※ 2007년도부터 지원되는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향후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되면 현행지침의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중 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서 통보할 계획임(2006년도 사업까지는 현행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별지 제1호서식]

2006년 지역전략품목 지정 및 육성계획

□ 농산물

시도	시군	품목	재배면적 ha	연간생산량 M/T	참여농가 호	전략품목지정사유

□ 축산물

시도	시군	축종	사육두수 천마리	참여농가 호	전략품목지정사유

□ 농산물 가공 등

시도	시군	가공품목	연간 생산량		가공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 사용량		전략품목지정사유
			생산량	단위	품목	소비량	

2006년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 ○○시·도

(금액 : 백만원)

시군	사업명	전략품목 현 황	지원 품목	보 조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합 계										

주: 1) A4 형서식으로 하되, 사업량은 대표적 물량을 기재

2) 도 전체 사업별 합계분과 시군별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명 :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사업개요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

○ 보조사업자 :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또는 시·군 (과)

○ 사업대상품목 :

○ 주요사업내용

-

-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계	(100%)	(%)	(%)	(%)	(%)	(%)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공 중)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						

※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사업 공종별로 구분

2. 전략품목개발 및 육성여건

□ 전략품목육성을 위한 여건

○ 생산 및 판매현황

※ 전국·해당지역의 재배 또는 생산현황, 수출현황, 과잉생산 여부 등 검토

○ 기후여건

※ 강우량, 온도, 일조시간 등이 전략품목 생산에 적절한지 등

○ 유통 및 소비여건

※ 전략품목을 판매하기 위한 현재의 유통구조 여건과 소비현황, 소비자의 반응 등 기재

○ 육성코자 하는 전략품목과 관련된 주변의 생산·가공시설, 연구기관 및 특허보유 등 현황

※ 해당 품목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 등

○ 애로사항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 당해 품목에 대한 기술능력
 - 재배경력
 - 영농기술
 - 기타(특허보유, 신지식농업인 여부 등)
- 자부담 가능성 :
- 기타 : 수출실적, 판매계약 등 사업추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및 자료 등

사업부지 확보 가능성

3.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 공종별 규모,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추진 일정(사업추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확보
- 세부설계
-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
- 공사추진(공종별로 기재)
 -
 -
- 공사완료

사업비 정산

행정사항

※ 각종 보고 및 점검사항 등 기재

사업 완료후 운영(활용)방안

※ 사업완료후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전과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효과

- 수익성
- 지역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타

5. 기 타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참여자
- 주요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 관계 전문가의 의견은 별첨 첨부

기존 유사사업과의 비교

구 분	기존 유사사업(사업시행지침서)	본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시행자 -대상지역 -지원내용 -지원단가 -재원별부담액 - -		

기타사항

※ 전략품목육성 중장기계획,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 요약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할 것)

6. 사업주관기관의 장 검토의견

 년 월 일
(사업주관기관의 장) (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과장 김윤중, 농업서기관 송명식)입니다.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강원도 감자 원종장 이전에 따라 원원종, 원종 생산에 필요한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량 씨감자 생산
- 씨감자의 안전한 저장으로 재배농가에 우량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 방향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를 이양 받은 지자체와 정부 감자 종자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씨감자 생산기반시설사업에 한하여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 '06년도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주체 : 강원도, 경북 영양군, 봉화군
-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강원도의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경상북도 영양군 및 봉화군의 씨감자 저장고 신축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씨감자 생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
- 예산은 당초 지원목적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해당 지자체에서는 '07년 1월 15일 까지 사업실적 보고서를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
 - 사업완료 전에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붙임양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

○ 사업 내용

- 강원도에 감자 원종장 이전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망실하우스 설치(64.6ha) 및 창고·관리사·야적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 지원
- 경상북도 영양군, 봉화군에 씨감자 저장고 4동(78평)에 대한 신축비 지원

- 부문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강 원	경북
		원종장 생산기반조성	씨감자 저장고
합 계	7,317	7,132	185
국 비	3,656	3,566	90
지방비	3,624	3,566	58
기 타	37	-	37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06년(총 3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개발계정	혁신계정				
2004				990	990	990	1,980
2005		6,982			6,982	6,982	13,964
2006		3,656			3,656	3,624	7,317

□ 차년도 사업의 기본방향

- 신규사업신청 지자체가 없을 경우 사업 종료

() 분기 사업추진 실적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2. () 분기 추진상황

* 분기중 일자별 추진상황을 자세히 정리

3.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 재원별 사업비 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천원)

		계 획(A)	실 적(B)	비 율(%)
분 기	계			
	국비			
	지방비			
누 계	계			
	국비			
	지방비			

<사업비 미확보사유 및 대책>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적 요	예 산 액	전분기말 집행액	금분기 집행액	집행누계액
계				

주) 적요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기타 등으로 세부하여 기재

4. 추진계획

- 다음분기 추진 계획
- 사업종료시 까지 추진 계획

5.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6. 사업추진책임자

기관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현수, 사무관 진종철)입니다.

1. 목 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물류표준설비인증),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및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2003까지	2004예산	2005예산	2006예산(안)
사 업 량(개소)		1,419	196	222	294
사 업 비 1)	계	85,040	11,772	13,346	17,618
	보 조	32,588	5,886	6,673	8,809
	응 자	33,106	-	-	-
	지 방 비	-	-	-	-
	자 부 담	19,346	5,886	6,673	8,809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2006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현행 “표준출하규격” 및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도록 정비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System)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나. 대상사업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074호(2004.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장비 중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및 향후 인증대상장비를 지원 대상으로 함
 - '05년 「물류표준설비인증」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윈바디차량, 냉동·냉장차량, 컨테이너, 결속기, 제함기, 램핑기, 테이블핑기
 - 향후 인증대상장비 : 비파괴당도측정기, 마늘탈피 및 분쇄기, 당도측정기, 선과(별)기(단순 저울기능의 음성선별기는 제외), 진공포장기, 라벨기, 오토덤프, 세척기, 오토체크라인, 도크기 등.

다. 지원대상자

- ① 생산자조직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의 별표 3의 농업법인지원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 작목반은 [별표 1]의 지원기준에 의거 지도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 ②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하역노조,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산농산물 가공공장 · 저온저장업체등

라. 개소(조직)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 200백만원(사업단가)

마. 세부 사업별 사업단가

- 사업단가는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한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장비별 지원 한도액 : 보조금 5천만원 이하
 - 장비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지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에 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확정

바.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 50%, 자부담 50%

사. 2006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계	보조	용자	자부담
물류표준화사업	17,618	8,809	-	8,809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시·도.(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 “다”항의 지원대상자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농산물의 규모화된 공동출하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조직에 우선지원
 - 농산물 파렛트화 출하실적과 연계지원
 - 공영도매시장 등은 파렛트 취급실적,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순위

- ①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하는 농림부 지정 산지유통전문조직
- ② 파렛트 취급실적이 우수한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 ③ 농림부선정 최우수·우수 원예전문생산자단체
- ④ 농산물 파렛트출하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종합유통센터
※ 파렛트출하 실적은 지역농협에서 물류기기공동이용실적을 출력 제출
- ⑤ 기타

○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인터넷으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
-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실시규정(제4장)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
※ 파렛트출하 실적 및 제20조·제21조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첨부, 제23조에 의한 심사와 제25조에 의한 농정심의회 심의 철저 이행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별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장비별 사업단가 1억원(보조금액 5천만원) 이상은 시도에서 결정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3~4)
- 시·도(시·군) :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농정과 또는 산업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 지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보한 후에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집행시에는 당해년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제품규격, 일련번호 등)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한 [별표 2]의 스티카형 표지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물류표준인증설비가 아닌 것,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금을 장비구입처에 지급한다.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도별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계획변경 및 승인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에 의거, 작목반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원된 시설·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내용년수 참조)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내용년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5호서식]의 작성요령에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함
 - 5년 : 차량, 운반구, 파렛트, 고정식 플라스틱상자, 기타 철제품
 - 3년 : 접철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기타 플라스틱 및 목재
- 사업지원대상자는 사업이 변경 되어 지원 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매각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 별지 [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림사업통합전산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반기별로 정리하고, 연도말 현재 상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장비는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부당사용 하는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차량, 불량제품차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 매각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나 차량수리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군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사업비 집행 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완료보고

6.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수립

- 2006년도 사업계획수립은 2005년도에 기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본지침에 의거 심사 및 심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시군담당자는 '05물류표준설비인증 완료장비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비인증품은 지원에서 제외됨을 사업대상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물류장비 제조자 및 공급업체에도 본 지침을 인지토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일정

-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전산 입력(사업대상자) : '06.3.1~3.10까지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 '06. 3.10까지
(균특회계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계획 보고 : 시군(3.10) → 시도('05.3.20)→농림부('05.3.30)
- 사업계획 확정(농림부) : '05.3.30까지

7. 2007년도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06.1월 이후 연중 신청 가능(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입력)
- 대상사업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물류표준설비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 2006년도와 동일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2006년도 기준과 동일

【 별표 1 】

작목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지역농협에 속해 있는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사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 가.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인 자조조직으로서 반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영농기술의 도입 및 영농개선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유통개선을 통하여 반원의 소득증대와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조직이어야 한다 (법인, 비법인 포함)
- 나. 작목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조직일 것
 - 반원수 10명 이상 또는 면적 20ha(시설 7ha, 벼식류 0.7ha) 이상
- 다. 작목반 규약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일 것
 - 규약에는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을 부당사용한 반원에 대하여 제재(제명, 탈퇴 등)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라. 작목반 단위 생산 및 출하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실천하는 조직
 - 공동출하, 공동선별을 위한 품종통일 및 공동계산 실시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불안정시 자체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노력 실시 등
- 마. 농림사업 지원내역 공개
 - 작목반원에게 매년 1회 이상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한 내역 및 관리현황을 공개할 것
- 바. 농산물 품질관리를 적극 실천하는 조직
 - 자율품질검사원을 운용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할 것
 - 자율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할 것
- 사. 작목반원 50% 이상이 관할 지역농협의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조직은 다른 작목반 보다 우선 선정할 수 있음

2. 사후관리 기준

- 가. 농림사업 신청시 반드시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 나. 지역농협에서는 작목반에 지원된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해 보조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관리현황을 점검
- 다. 작목반은 당해 농림사업 지원시설의 종류, 금액,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기록·비치 의무화
- 라.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에 대해 정부 물품 내용연수 기간동안 수시 현지 방문하여 당초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점검 및 관리실태 점검
- 마. 농림사업 지원시설·자금에 대해 부당사용시 작목반 대표 및 총무가 연대하여 변상 또는 원상회복 의무
- 바.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작목반에 반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당해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제한 처분을 받은 반원이 포함된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별표 2 】 스티카형 표지

본 (차량)은 농업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0000년도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입니다.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 물류표준화사업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별지 제1호 서식]

(년)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신청인 내역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설 립 일		담 당 자 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거 래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는 사업대상자의 확정 후 기입가능

전년생산(매출)현황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매출실적)/톤	출하시기

전년시설 운영현황					
출 하 량				품질인증량	파렛트출하 (취급)실적
총 계	공동출하/공동계산	공동출하	일반출하		
톤 (100%)	톤(%)	톤(%)	톤(%)	톤	개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 파렛트 출하실적은 농협에서 확인가능

공동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동 수	규모 (평)	년간 사용일수
집하장			
직판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물류기기 보유현황				
기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간 사용일

2. 물류기기 및 포장화 부대시설 세부사업 신청내역

세 부 사 업 신 청 내 역						
품목명	수 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부담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
	규격/ 업체명/인증번호/기타		/	/	/	/
신 청 합 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 인증번호가 없는 향후 인증대상장비는 생략가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현수, 사무관 김정주)입니다.

1. 목 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농산물의 집하선별·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등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을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유통시설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APC지원 3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지원 및 지자체 책임하의 자율적 사업관리 강화

< APC지원 3원칙 >

원칙 1 :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 농림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등 안정된 원료확보, 사업능력이 검증된 조직을 지원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기존에 활용중인 중소규모 유통시설 및 산지공판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보완 및 확장을 우선추진하고, 사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소규모 신규 APC 억제
 - * 거점 APC권역내 원료확보 경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APC 신규지원 중단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원 및 관내 산지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및 신규시설간 경합여부, 통합조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

- 지역 농업생산 전망, 기존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산지별로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지원
- 기존시설 보완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상품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산지유통기반 확충
- 소규모 시설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사업물량 확보 등 유통사업의 규모화(군단위 또는 2개 읍·면 이상) 및 기존시설과의 사업연합, 계열화가 가능한 운영주체의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형 시설을 지원
 - 생산자단체 컨소시엄 등 운영체제 및 상품개발, 마케팅계획,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등 엄정한 사전 사업성 진단을 거쳐 지원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사전·사후관리 강화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 확정 후 사업신청 및 착수
- 유휴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 제고 촉진 및 산지유통시설간 사업연합 및 계열화 촉진 유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04까지	'05지원	'06예산안	'07이후
사업량(개소)	288	210	7	7	64
사업비(억원)	737,697	282,052	45,692	46,246	363,707
- 국 고	326,200	146,728	15,975	18,014	145,483
- 지방비	205,134	63,983	16,556	15,483	109,112
- 자부담	206,363	71,341	13,161	12,749	109,112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임, 총사업비는 예산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 경과

- '94년에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
- '98년부터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지원
- '99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자를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까지 확대
- '99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사업명칭 변경
-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2001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으로 일원화
 -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을 통합
- '05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 지자체별로 예산한도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사업성·규모화·조직화 달성 여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산지유통혁신 모색

2)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출자법인
 - 농안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특용·약용 작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산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함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 회원농협이 신청한 경우 농협중앙회와 사전 협의(자기자본 비율,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시설설치 적정성 등) 후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전년도 산지유통센터 평가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시행) 하위 5% 이하 사업자는 시설지원 일체 제외
 - * 단, 당해연도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농림부 시행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 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고보조 50%, 시·도(시·군)비 50%
 -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시·군은 관할내 사업신청 수요가 있거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시·도와 지방비 부담비율에 관한 협의를 완료 한 경우에는 예외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규모화 신규시설 20억원, 기존시설 보완은 8억원을 표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원료조달권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할 수 있음.

4)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예시)

-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포장장·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 시설 등(1.0백만원), 차압식예냉고(3.5백만원), 저온저장고(2.7백만원), 품질검사실(2.0백만원)
-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봉합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세척시설 등
-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 제거기 등
- 전체사업비 2%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 ※ 시장·군수는 산업자원부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고시 제2004-074호 /'04.7.9)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 품목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 위에서 열거된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으로만 지원가능함.
 - ※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 기준단가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 지원단가에 준함.
 - ※ 신규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참 고 사 항 >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표준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음.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예 : 깎마늘 관련 기계, 비파괴 당도측정기, 자동선별기 제함기, PC, 오페수처리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시설(기계 장비 설비 등) 중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인 것은 동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 다만, 수량단위로 확연하게 구별되고 工程上 독립적인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수량이 동 사업에서 정한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수량을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설계 및 설비설치에 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공사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5) 지원대상 선정기준(우선 순위)

- 시·도(시·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야 함.

① 공동마케팅조직

- * 공동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 *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조직 여부는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 ③ 기존 유희 또는 부진 사업장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여 시설보완(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 ④ 수 개의 읍·면 사업연합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지방자치단체형 시설의 설치 및 보완
 - * 지자체형 운영주체 선정은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그 외 시장·군수가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직
- ⑤ ①항내지 ④항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업성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5% 사업자 (운영주체 포함), 거점APC(재원 : FTA기금) 사업권역내 신규APC

6) 지원 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예냉·냉장수송 권장품목
 - 주로 여름철에 수확되는 것으로서 저장성이 적어 선도유지가 어려운 신선과일 및 엽채류 등
 - (예) 딸기, 토마토, 고랭지배추, 양상추, 양채류, 대파, 썩갯, 복숭아, 포도, 버섯 등
 - 예냉·냉장수송 선택품목
 - 주로 봄·가을에 수확되는 것으로 선도저하가 비교적 느린 품목
 - (예) 단감, 배, 사과, 밤, 마늘, 양파, 당근, 가을배추 등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일괄지원의 예외 >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단, 집하·선별·포장장 등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2억원 미만)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균특회계 참조)으로만 지원가능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배방법의 특성상 생산량이 소량이어서 100평 이상의 시설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이 인정하는 때에는 50평 이상 100평 미만도 가능

< 시설보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

- 정부지원 또는 생산자단체 보유(자체투자 또는 지자체 투자)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규모 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200평 이상인 경우
 - 유통시설 : 저온유통기반시설, 집하·선별·포장장 등

나. 2006년 지원계획(예산안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 산지유통센터설치	52	46,246	18,014	18,014	-	15,483	12,749
- 생산자조직	40	25,400	7,591	7,591	-	5,060	12,749
- 지방자치단체	12	20,846	10,423	18,014	-	10,423	-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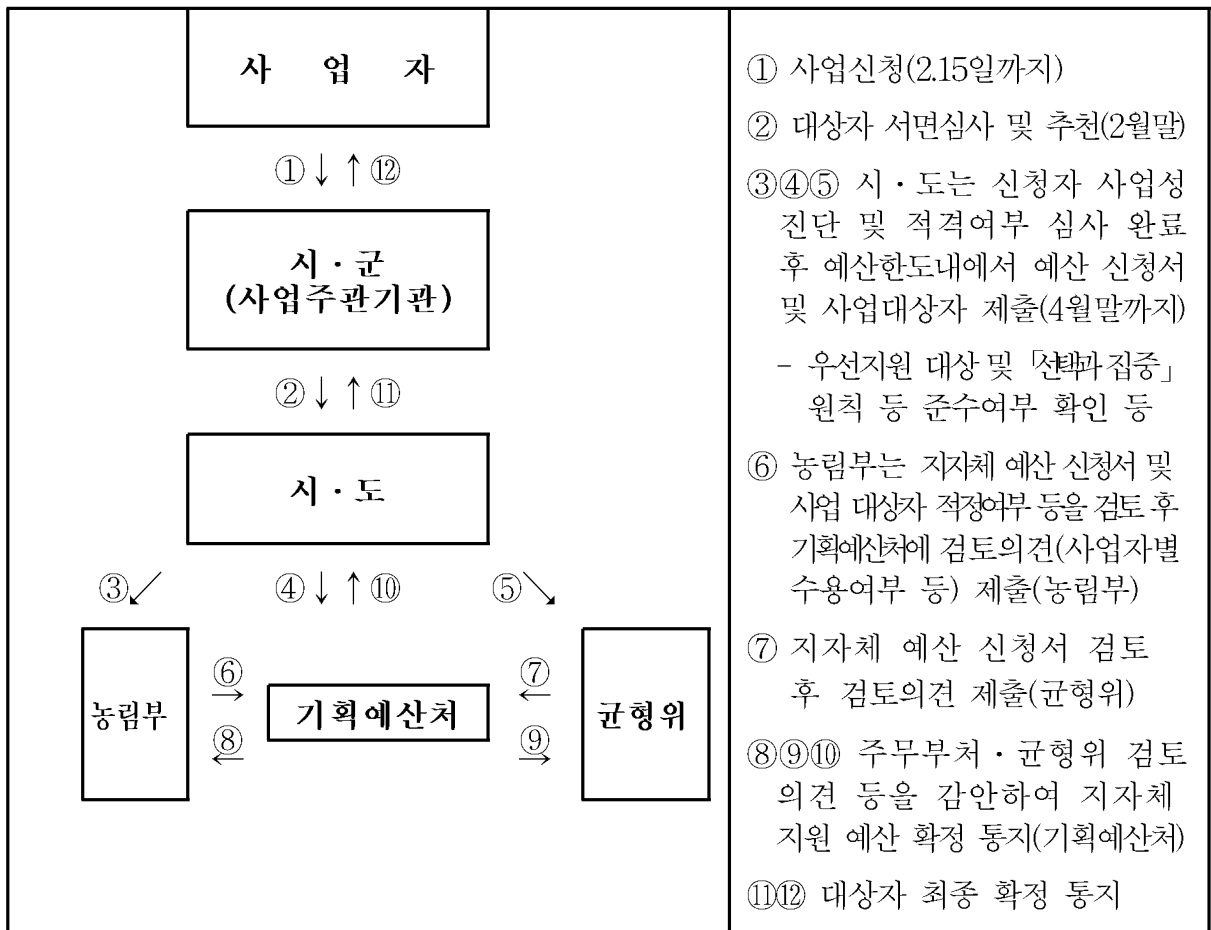
※ 사업성 진단,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등은 시·도지사 주관으로 실시

나. 사업기간 : 1년(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2개년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는 해당연도 사업분에 한함)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0-1829~30)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농정, 농업, 유통 등)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산업, 농정, 유통 등)

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업성 진단절차>

- ① 신청자명세서 제출(시·군) → ② 사업성 진단 및 예냉기술검토 등 심사 실시 (시·도 주관, 전문기관을 활용/ 『선택과 집중 및 우선지원대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 → ④ 사업성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후 농림부에 제출(시·도)

마.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2월 15까지)을 받은 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작성(『붙임 4』)하여 『붙임 1』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후 시·도에 제출(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부실운영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업성진단 결과를 신청자 심사시 반드시 반영하고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산지유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조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 소규모 유통시설지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방지 대책을 반영

<심사항목 외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 등
- ②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③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참여 조직
- ④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농산물 자조금단체 가입 조직
- ⑤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조직
- ⑥ 무·배추·양배추 등 공동규격출하가 어려운 품목을 취급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 등

-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시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에 의해 사업신청자 명세서 작성, 사업성 진단 계획(세부일정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진단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와 해당 시·군에 제출(통보)하여야 함(2월말)
- 시·도지사는 반드시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을 하여야 하며, 균특사업 예산신청 기한(4월말) 이전까지 완료(3월말까지)하여야 함.
 - 시·도에 추천된 모든 사업 신청자(단, 지자체형인 경우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운영능력 진단)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해 사업성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단,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전문기관이외 농협중앙회, 컨설팅업체 등 관련기관의 사업성 진단 가능

.....<사업성 진단시 준수사항>.....

- ① **전문기관** : i) 농수산물유통공사, ii)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인가된 회계법인으로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발주한 농산물 산지유통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최소 1억원 이상인 업체, iii) **전문 컨설팅업체**(조달청에 전문컨설팅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로 최근 1년이내 사업성진단 신청조직의 컨설팅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
 - * 객관적인 사업성 진단을 위해 사업성 진단 전문기관을 위 기관으로 제한함.
 - * 사업성 진단보고서 표준안 및 진단비용 표준단가 (예시)는 매년초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별도 공지 예정임.
- ② **진단비용** : 사업신청자 또는 지자체 부담
- ③ **진단보고서** : 사업계획 개요(원료조달 및 처리), 주변 여건분석 (생산 및 관내 유사시설), 사업수행능력 및 시설지원 타당성, 시설규모 적정성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개년) 등을 반드시 포함

- 지자체형 사업신청의 경우는 실제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법인(위탁운영계약서 등 첨부 필수)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은 후 사업성 진단 실시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부 훈령제11183호, '04.12.17) 제46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 시장·군수는 생산자단체형 중 사업주체가 회원농협인 경우 농협중앙회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승낙서 등의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징구·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사업성 전문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진단일정을 수립후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은 전문기관 주관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붙임 5』의 심사와 병행하되, 사업계획 수행능력 및 적합성, 운영주체의 조직체계, 원료농산물 조달 및 처리 계획, 공동브랜드 활용 등 농산물 마케팅 계획, 추정 손익계산 등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격여부 및 사업규모 조정 검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성 진단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시 문제점 등 지적사항 반영 현황 『붙임 6』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는 진단서 하단에 소속·직위·성명을 기재·서명

- 예냉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성 진단 단계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진단 등)를 반드시 거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성 진단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성진단 기간내에 해당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3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성진단 및 「붙임 6」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결과를 반드시 선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농림부에 우선 보고(4월 말까지) 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 결과 및 심사를 반영한 잠정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시·군에서 균특회계 사업 예산한도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 단, 동 지침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예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부처 균특회계 예산신청서 검토시 불인정을 원칙으로 함.
- 시·도지사는 지자체별 균특회계 예산안 한도를 최종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기 보고한 「붙임 7」의 내역을 정정한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서 제출자료(4월말까지)

- ① 붙임 1~7 작성자료 각 1부(최종사업자에 한함)
- ② 전문기관 사업성 진단보고서 각 1부(최종사업자에 한함)

바.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붙임 8)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 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를 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시·도지사가 사업타당성·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 7」 과 사업포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로 확정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함.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 또는 자부담 추가된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사업부지 변경, 운영자(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로서 시설운동을 위탁하는 경우)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후 초기년도에는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의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결과를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
-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 특히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초과 또는 사업계획을 현저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불가**

2)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 설계는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 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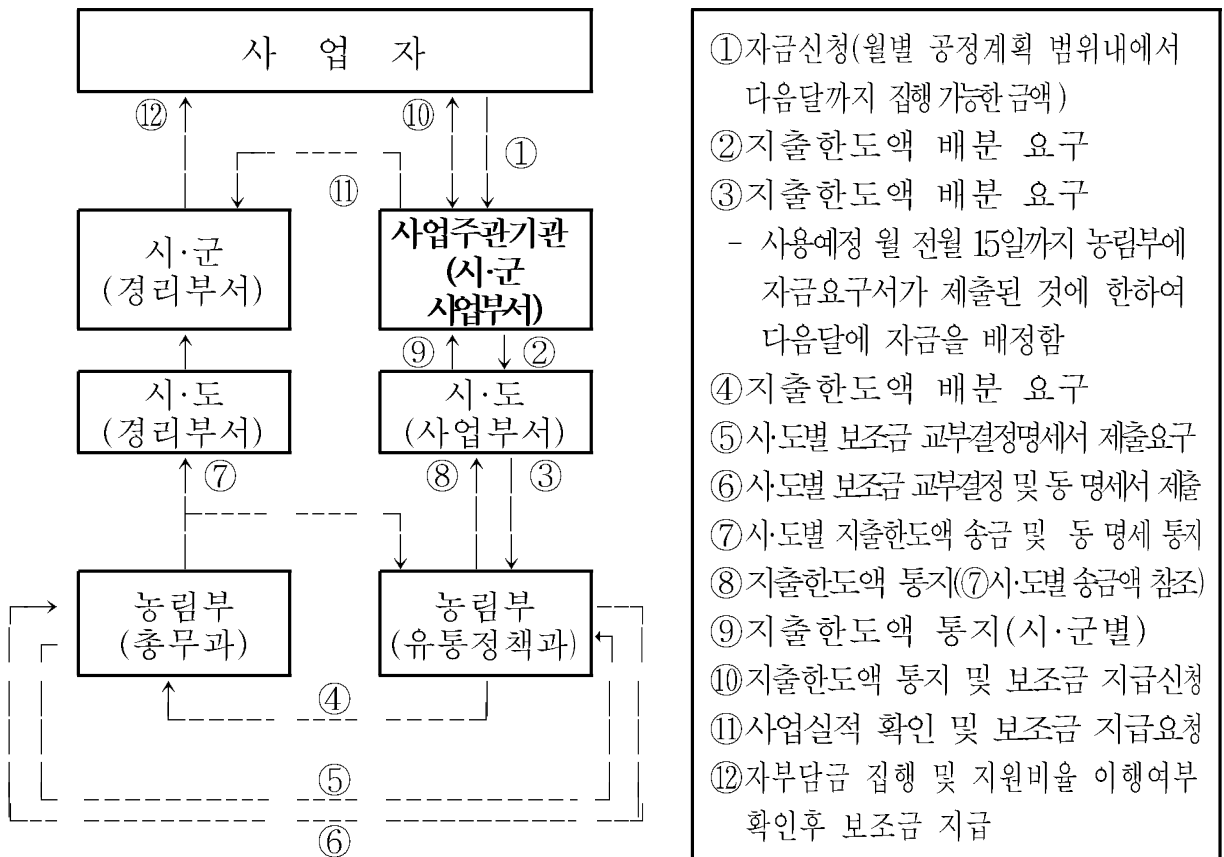
○ 시설업체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유형의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농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하여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공공유형의 산지유통센터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업체를 선정
-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3)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자(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 ① 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금액)
- ② 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③ 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 ④ 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⑤ 사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 ⑥ 사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 ⑦ 사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서 통지
- ⑧ 지출한도액 통지(⑦사·도별 송금액 참조)
- ⑨ 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 ⑩ 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 ⑪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 ⑫ 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4) 감 리

-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등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사. 기타 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산지유통팀),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유통연구단)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아. 행정 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림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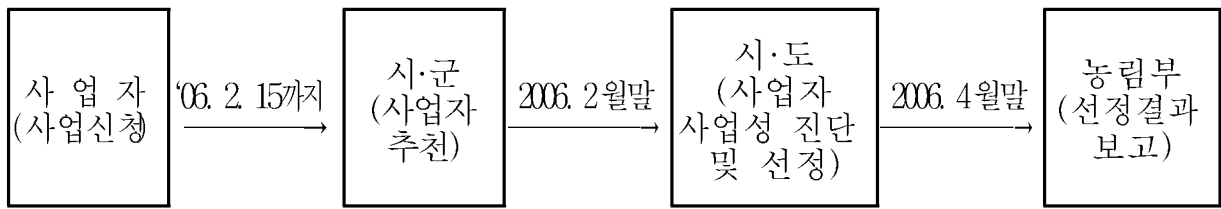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2)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붙임 9」 양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하여야 함.
 -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할내 다른 사업지를 동 지침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에 의거 재선정하되,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6. 2007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 및 예산한도 신청 일정



- 균특회계 예산한도 신청은 시·도별로 사업성 진단 및 심사 결과를 반영·통보한 대상 사업자에 한해 균특사업 예산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균특회계사업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성 예산지원도 당해 연도에 선정된 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되어야 함.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붙임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인원, 지적도 축척(1/500),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농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 위탁운영계약서(사업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위탁운영자에 관한 계약서, 동의서 등)
 - 산지유통센터 설치 예정지 조서 『붙임2』
- 시·도는 2007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붙임3』 및 예정지조서 『붙임2』를 일괄 작성·비치하여야 함(4월말)
 - 예산요구 및 사업성진단 대상자 자료로 활용

나. 신청자격(2006년 지원대상자 범위 참조)

- 2006년도 사업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007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함.
- 2005년 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2007~2009년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타 안내사항

- 지원조건, 지원내용, 우선순위 등은 2006년 사업추진요령 내용 참조(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산지유통센터 사업실적 평가(농림사업시행지침 제2권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고)

가. 원 칙

- 매년 산지유통센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06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 (자유경쟁입찰)
 - 용역분야 선정기관 : ① 전년도 평가지표 보완 및 종합분석 등 총괄(전수조사)
② 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
- 평가기간 : 1~6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붙임10」의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 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8. 산지유통센터 경영컨설팅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

1) 경영평가 우수조직(농업경영컨설팅사업지원/농림부 경영인력과)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일정 수준이상의 우수조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 사업부서 : 농림부 경영인력과(T : 02-500-1865)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신청 자격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 다만, 농업법인의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림부 농특회계사업) 지원대상이 되며, 회원농협(농협조직)의 경우 정부지원대상이외 조직(평가결과 상위 25% 이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자체컨설팅사업(농협중앙회 지도사업)으로 추진(역할분담 정립)
- * 동일지역내 다수 신청시 평가결과 상위등급 사업자를 우선지원하며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개소수 조정 가능
- 사업비 한도 : 3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2) 경영평가 부진조직(경영클리닉지원/농림부 유통정책과, 협조 유통공사)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유통공사, 농협, 전문컨설팅기관, 회계법인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재원 : 농안기금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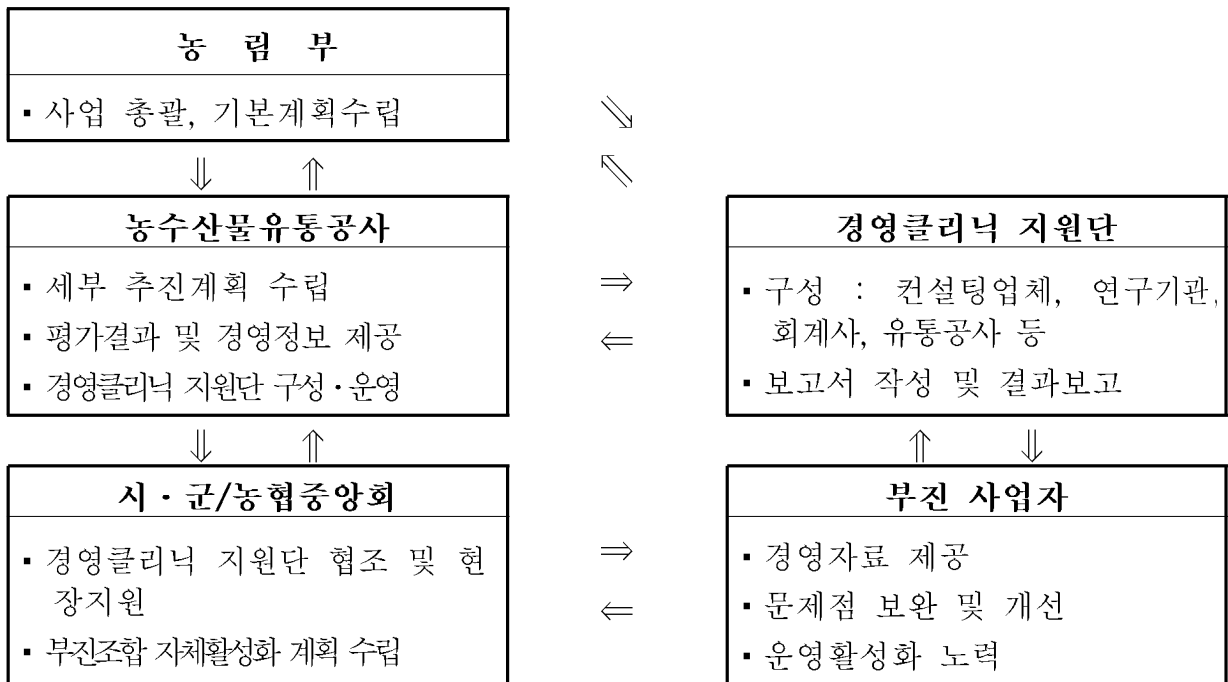
《경영평가 우수조직》

-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파악 : 농림부(지자체 및 농협 협조)
- 2) 지원대상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8월까지)
 - 시장·군수는 관내소재 전문조직 및 APC중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희망 경영체를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3) 시·도별 지원대상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추천 : 시·도지사(9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붙임 11」)
- 4) 사업계획 및 시·도별 지원대상 확정 통보 : 농림부(10월말까지)
 - 각 시·도별 신청 및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농림부(경영인력과)에서 시·도별 일괄 배정하되, 계약이행상황 확인후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 공급업체는 양질의 컨설팅지원을 위해 컨설팅업체인증 심의팀(경영인력과 별도확정)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컨설팅업체 Pool을 구성·운영(4~5개소 예정)할 계획이며 해당 조직은 반드시 컨설팅업체 Pool 가운데 1개업체를 선택·계약해야 함. (세부적인 사항은 '06년도 농림사업시행시침서에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참조)

《부진조직 경영클리닉》

1) 경영클리닉 지원단 구성·운영

-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유도
 - 컨설팅업체, 농협 등 관계 전문가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운영
- 사업 대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하위5% 사업자 또는 영업손실과다 사업자 중심으로 적정 개소수내에서 실시
 - 부진사업장에 대한 공통·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컨설팅업체 : 경영클리닉 지원단 총괄, 현장조사·분석을 위한 조사양식 개발 및 분석틀 마련, 총괄 보고서·업체별 컨설팅보고서 작성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기관(KREI, 한식연 등), 회계법인, 유통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현장조사·분석반을 편성·운영
- 사업시행 체계도



2) 결과보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지원단」에서 실시한 클리닉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후 해당 사업자별로 개별 통지하여야 함.
 - 익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종료시까지 전년도 경영클리닉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클리닉 실시 이후의 이행상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다음 경영클리닉 사업계획에 반영

<붙임 1>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운영권자)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설	저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 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조	
평	평	평	평	평		
()	()	()	()	()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물						
- 장비 등						

- (주)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지자체형(시장·군수)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생산자 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목
○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방저온저장 겸용고 - 사무·회의실 · ·	평 평 평 평 평 · ·			저장능력 일 " " -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 대 대 · ·			처리능력 시간 "		
○ 장 비 - 냉장탑차 - 팔레트 - 수송차량 - 운반상자 · ·	대 개 대 개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 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체자금	
○ 자부담금		○ 신규출자	
○ 운 영 비		○ 외부차입	
- 매취자금		○ 기 타	
- 관리비 등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붙임 2>

2007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예정지(부지) 조서

신청자	소재지			면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 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 (작성요령)
- 소재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소유, 타인소유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의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붙임 3>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명 :)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천원	주요 품목	비고
			에너지 저장고	온 저장고	예냉 저장고	냉 동 저장고	냉 동 보관 시설	사무실	냉 장 탑 차	간 마 늘 시 설	비 파 괴 糖 度 機			
()	(/)	기 존 신 청 계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	(/)	기 존 신 청 계												
()	(/)	기 존 신 청 계												
()	(/)	기 존 신 청 계												
()	(/)	기 존 신 청 계												
()	(/)	기 존 신 청 계												
()	(/)	기 존 신 청 계												
()	(/)	기 존 신 청 계												

- (주)○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간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1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시설보완”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안에 기재하고, “확장·시설보완”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붙임 4>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시·군별 사업 신청자 현황

(시·군명 :)

순위	신청자	시·군	구분	주요시설									사업비		주요품목	비고
				예냉고	저온저장고	예냉온겸용	접혀선별포장장	사무실	냉장탑차	칸마늘시설	비과외糖度機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1	()		신청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조정													
2	()		신청													
			조정													
3	()		신청													
			조정											< >		
4	()		신청													
			조정											< >		
5	()		신청													
			조정											< >		
6	()		신청													
			조정											< >		
7	()		신청													
			조정											< >		
8	()		신청													
			조정											< >		
9	()		신청													
			조정											< >		
10	()		신청													
			조정											<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붙임 5>

2007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생산자 단체형 : 농협, 농업법인 등)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5	10	7	5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 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사업 실적	10	8	6	4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B : 평점 16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형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카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 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법인 또는 대표자의 직책 타인명의, 사용승락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10 6 4 0	제한 없음 조건부로 설치가능 제한 있음	5 3 0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10	양호	5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7	보통	3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4	미흡	0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3-5.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시설설치 및 보완시, ②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③타 조직 유통시설·장비에 대한 양수 실적이 있는 조직 ○입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가점							
		감점							
		기본점수+加減點 합계					△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통보내용 기재 : 1.0~3.0%(예 : 1.0%)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 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2007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지방자치단체형 : 시장 또는 군수)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2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0	8	6	4	A : 특허청에 등록(또는 출원)된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하고 있으며, 공통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선별·출하 C :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별 농가별로 출하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규격 출하 사업 실적	5	4	3	2	A : 규격출하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90		
2.사업수행 능력 (20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능력	5	4	3	2	A : 평점 20점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분사장 책임경영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판매사업전담부 서(상무이상)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 인력	5	4	3	2	A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4명 이상 B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3명 C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2명 D : 품질관리 및 마케팅전담인력 1명				
	2-3. 재무구조의 건전성	10	8	6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3.지자체 사업추진 여건 (20점)	10	8	6	4	A :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지방비)에 반영 B : 예산(지방비)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C : 자체지원계획 수립 중 D : 별도 지원계획 없음				
					3-2. 위탁운영자 선정	10	8	6	4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4.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4-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경상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4-2.부지 확보 계획	15	10	7	5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법인 또는 대표자연락 타인명의, 사용승락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10 6 4 0	제한 없음 조건부로 설치가능 제한 있음	5 3 0
	4-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 확보 여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4-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입지여건	평점	
					유사시설이 없고,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유사시설이 있고 물량확보 곤란	10 7 4	양호 보통 미흡	5 3 0	
4-5.사도지사 조정	5	4	3	2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15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120일 이상 15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12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합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가점부여(각 5점) : ①사업타당성, 마케팅 계획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 첨부, ②위탁운영자가 관내 조합과 사업연합·계열화를 위한 협약서 제출시						가 점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감 점	△		
						기본점수+加減點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통보내용 기재 : 1.0~3.0%(예 : 1.0%)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 운영실태평가 결과(농수산물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심사자					

<붙임 7>

2007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도별 선정결과 보고

1. '07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지자체별 최종선정 결과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사업권자 (운영권자)	지원 형태	총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부담	세부지원시설 내역 및 규모(지원액, 백만원 단위)
						계	시·도비	시·군비		
										(예시) 저온저장고 60평(162), 선별포장장 242평(242), 선별 포장기5종(1.5), 진공예냉기 100 (6), 건조설비 100 (100)

주> 엑셀로 작성할 것.

2. '07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정 사업자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자 현황(신청)									최종 결과조정(선정)				참고사항				
시도	사업 유형	시군	사업권자 (운영권자)	구분	형태	시설 및 장비명	수량 (단위)	단가	사업비 신청액	수량	단가	사업비 조정	증감	취급 품목	산지유통 전문 조직 여부	APC 평가 등급	부지 확보 여부
합계																	
	지자체형																
	생산자 단체형																

주 1> 엑셀로 작성할 것.

주 2> 형태란 기재방법은 신규(확장 또는 시설보완 사업장이 아닌 경우), 확장(기존 APC에 대한 추가지원), 시설보완(200평 이상의 자체 유통시설 보유) 각각 구분하여 기재

3. '07년도 시·도별 신규 사업대상자 APC지원(선정)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사업권자 (운영권자)	총사업 비	국고보 조	지방비			자부담	신규 선정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계	시·도 비 (%)	시·군 비 (%)		
합계									

<붙임 8>

20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月別 工程計劃書(例示)

□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工種	구분	月別 工程計劃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 공 전	부지 확보	工程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工程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工程		농지 전용 신청	농지 전용 건축허 가 신청	건축허가 완료							
공사 계약	工程				공사계약 체결	제작계약 체결	구매계약 체결						
착 공 후	토목 공사	工程				착공	완료						
	건축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工程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工程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http:// 006.sa y-ting. com/	20	20 (40)		
구매	工程									납품			
제작	금액 (백만원)								착수	50%	100%		
사업비계	工程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工程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
- 工程은 累計工程이며, 금액란의 ()안은 累計金額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함

<붙임 9>

2006년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사업완료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비율 (B/A)
				사업계획			사업실적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비율 (B/A)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계	국고 보조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지방비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에너지 시설	기타	계	선별 기	포장 기	콘베 이어	테핑 기· 밴딩 기	제함 기	지게 차	냉장 차	파렛 트	운반 상자 ·

주> 현재 사업완료 보고를 하지 않는 기 지원된 사업은 모두 해당됨.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주요내용 · 평가기준

지표	세부 지표		배점		측정 수식	의 미
			농협	영농법인		
규모화 지수	매출 실적	매출액	15	15	매출	▪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를 통한 매출 규모 확대 정도를 측정
		매출액 성장률	5	5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과거 성과에 근거한 미래 성장의 잠재력 및 전기 대비 노력도를 측정
	설비투자액		10	10	최근 5년간 투자액의 가중평균	▪ 신규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유도를 위해 측정
부가치 지수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10	10	매출 / 총자산	▪ 동일한 자산으로 많은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본이라는 점에 바탕, 총자산이 얼마나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투하된 총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측정
		영업 이익률	10	15	영업이익 / 매출	▪ 본연의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출 기준 수익성을 측정
	시설 가동률		5	5	평균시설 가동률	▪ 유통시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여부를 측정
	부채비율		5	10	총부채 / 총자산	▪ 경영안정성의 기반 하에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측정
공공성 지수	공동 계산 실적	공동 계산율	10	5	공동계산실적 / 매출	▪ 농산물의 규격화 및 산지유통 조직화의 핵심 요소인 공동계산 실적 측정
		공동 계산 성장률	5	3	(당기 공동계산실적 - 전기 공동계산실적) / 전기 공동계산실적	▪ 공동계산 제고를 위한 노력도를 측정
		규약 체결 여부	5	2	조합과 공동계산 조직의 협약 및 계약	▪ 공동계산의 실질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문서화된 협약 및 계약 여부를 확인
	물류효율화율		10	10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비 정부보조분	▪ 물류 효율화 제고를 위한 규격출하 노력 정도를 측정 ▪ 향후 출하량 데이터 관리 개선을 통해 (파렛트출하량/총출하량)으로 지표 수정 가능여부 검토 중
	인적 자원	전문 인력 육성	5	5	유통전문인력 및 유통전담인력의 수	▪ 유통단계 및 분야별로 특화된 유통전문인력을 양성
조합원 유통 교육		5	5	선진지견학, 외부유통전문가 초청교육 등 유통과 관련된 교육으로 조합원이 30명 이상 참여한 교육실시 횟수	▪ 유통활성화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장려 목적으로 교육실시 횟수 측정	

* 사업자금 운용실적에 따른 감점조치 : 100%이상(감점 없음), 100~90%(-2점), 90~80%(-4점), 80~70%(-6점), 70~60%(-8점), 60%이하(-10점)

<붙임 11>

‘0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전문조직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대상 사업자 현황

(시·도명 :)

시·도	시·군	사업 유형 ^{주1)}	신청자 현황			
			업체명	대표	연락처	담당자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주1) 사업자 유형은 ①공동마케팅조직, ②산지유통전문조직, ③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로 구분함

※ 농업경영컨설팅 대상 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에 함(“8. 산지유통센터 경영컨설팅지원” 참조)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전건호)입니다.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 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물류 및 상류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대도시 소비지 유통권 중심으로 건설
- 신규건설은 민간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기존 유통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3개소만 2007년까지 건설완료하고, 신규건설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비 절감형 구조로 설치 권장
 - 집배송장, 소매매장, 포장·가공실 및 저온창고 등 현대적 경향에 적합하게 설치
 - 사무실, 편의시설 등 영업활동에 직접 공하지 않는 시설은 최소 설치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임대는 불가)으로 한다.(단,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규정하는 특정매입거래방식은 시설물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매입거래 방식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양곡, 청과, 축산 등 주요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 형태 운영
 - 가공식품, 특산식품 및 생필품 등도 일정비율 취급하여 농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편의 제공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4-'04년	2005년	2006년	2007이후
사 업 량 1)		16(13)	3(2)	1	1(1)
사 업 비	계	백만원 787,387	14,400	9,000	10,000
	보조	441,828	8,080	4,500	5,000
	용자	74,908	-	-	-
	지방비	160,516	6,320	4,500	5,000
	자부담	110,135	-	-	-

* 1) 사업량은 계속지역 포함, ()내는 개장지역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94. 5 농안법과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의 핵심과제로서 대도시 외곽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결정
 - '05.12현재 14개소 개장, 2개소 추진

(2)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시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직영점, 가맹점 및 소매상 등에 배송하고,
 - 농수산물의 가공, 소포장, 보관, 현장판매 및 산지 물류체계 개선 선도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지원

(3) 지원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4) 지원비율

- 단독추진

유 형	'95~'96 신정지역	'99~'02	'03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 업체에 위탁운영)	부지구입비 : 70%용자 건설비 : 70% 보조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총사업비의 50% 국고보조, 50%지방비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부지구입비 : 50% 용자 시설비 : 50% 보조	부지구입비 : 50%용자 시설비 : 50%보조

* 용자조건 : 연리 4.0%(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 컨소시엄추진
 - 각 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비율을 각각 적용

(5) 지원조건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평가 등 농림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준수

(6) 지원범위

□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매입비

□ 시설비

- 집배송장
 - 농산물(양곡, 청과, 축수산, 가공농산물) 집배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 제외
- 소매매장
 - 설치기준
 - 소매매장 면적은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계산방법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필수지원시설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 기타 지원시설
 - 종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 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 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속에 포함되지 않음

□ 물류설비

- 지원대상 :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종합유통센터운영지침의 [별표] 참조)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지게차, 대차, 카고테이너, 팔렛트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채소류 신선도유지 및 상품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팔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 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배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다만 업무용PC, 업무용 집기류, 주방기구 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7) 사업계획 승인전에 이루어진 사전기성고

- 사전기성고 인정의 필요성
 -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므로
 - 사업기간 축소와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부담 우선 투입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 것
 -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 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외 사용방지
 -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지원금액이 종합유통센터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

(8) 지원범위 초과시 대책과 예외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비 정산대상이 아님)
 예) ① 집배송장 설치기준 미달면적(필수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의 초과면적)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등
- 설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가능한 것
 - 농림부장관이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	9,000	4,500	4,500	0	4,500	0
<계속지역> 울 산	1	9,000	4,500	4,500	-	4,5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02-500-1833)
- 시·도 : 농산물유통과 또는 농정과
- 시·군·구 : 농산물 유통담당과(농림과, 산업과 등)

다. 사업시행

(1) 계속지구 사업시행

- 사업주체는 2006년 1월 30일까지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서(별지

-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사업예산의 85%이내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업비 집행상황 제출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12월 31기준으로 연도말 집행상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생산자단체 등 기타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연도말 정산신청을 농림부에 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대상자는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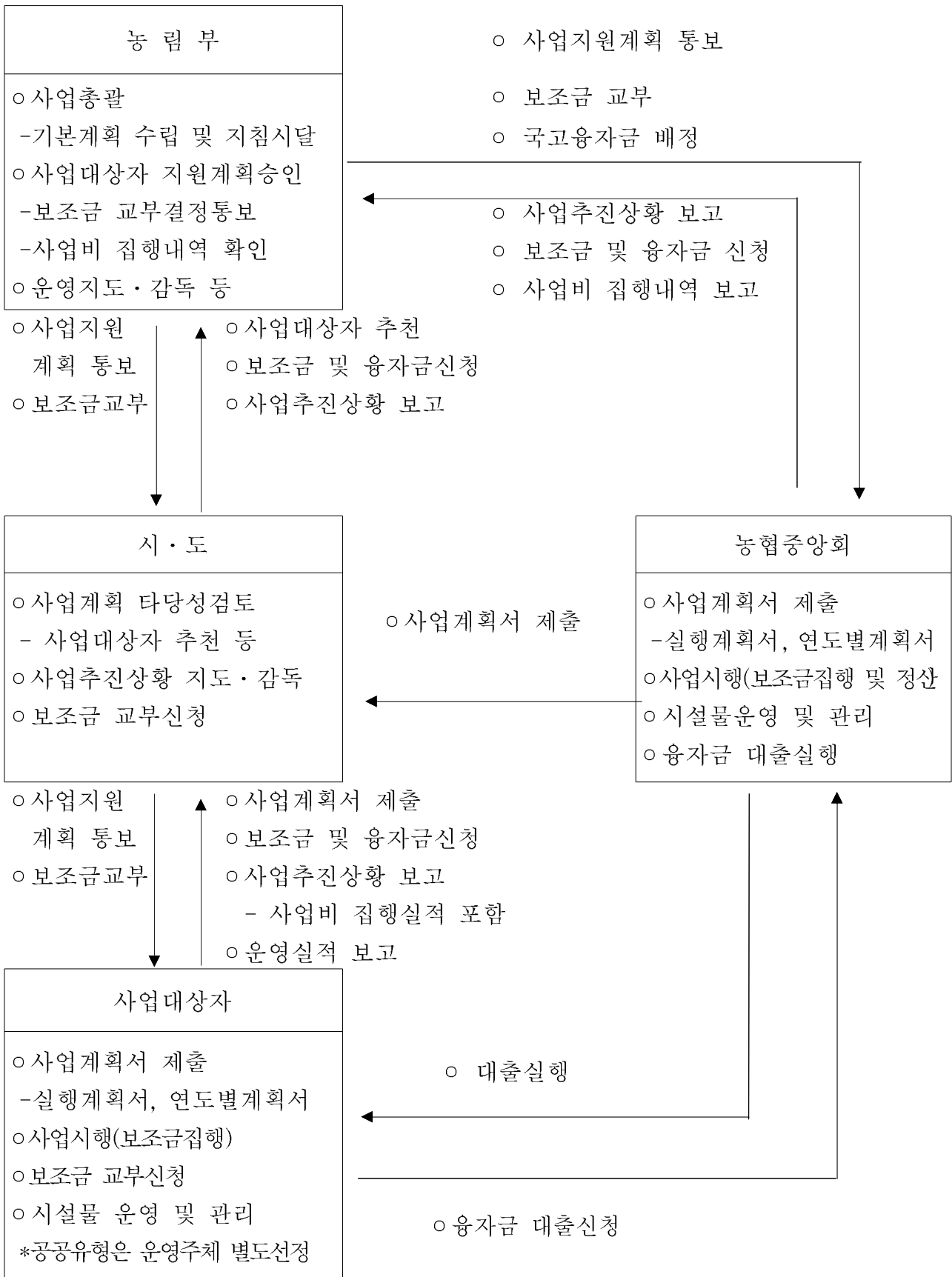
(4) 사업비 지원방법

-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는 기성고 등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 보조신청(총사업비의 85%범위내에서 공정실적 및 계획에 따라 개산급 가능)
- 시·도지사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5) 물류장비 구입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소유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유형 종합유통센터 장비의 구입 및 관리
 - 위탁받을 운영주체가 선정된 경우 운영주체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여 운영주체에 보조지원)하여 운영주체가 구입가능
- 운영주체가 집행한 간접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포함함

라. 사업시행체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 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짐.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책임자는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농림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 감독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 건물 - 물류설비	개 장 구입일	폐 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중 사정 변경으로 상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을 적용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년도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까지	2006	2007이후
○ 총사업비 - 국 고 - 시·도비 - 시·군·구비 - 용 자 -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까지	2006	2007이후
○ 부지매입비 '○ 건설비 - 설계비 - 감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통신공사 - 기계설비공사 - 소방공사 - 자재대금 ○ 물류장비 ○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괄

지목	계			'05까지			2006년			2007이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계 ·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매입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사업내역	물량	단가	사업비	비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당해연도)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운영주체 선정					
○ 조직 및 인원					
○ 운영준비사항					
-출하처 개발					
-거래처개발					
-전산시스템개발					
-운영시스템개발					
-기타 운영계획 등					

바. 월별·공종별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확인자 : 인
 감리자 : 인
 시공회사대표: 인
 작성자: 인

- 사업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공종별	최종승인액	05 까지정산액	07 이후잔사업비	06 년예산액	공 정 %	월 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② 소비자 밀착형직판장시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소비안전과(과장 심상인, 서기관 신영정)입니다.

1. 목 적

- 소비자단체의 소규모 물류시설 지원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도모
-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하여 소비자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물류 체계 개발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공급
- 주요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밀착형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직거래 확산체제 구축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 이후	
사 업 량	-	-	2	1	2	5	
사업비	계	-	-	1,000	500	1,000	2,500
	보 조	-	-	500	250	500	1,250
	응 자	-	-	-	-	-	-
	자부담	-	-	500	250	500	1,250

주) 2007년 이후의 지원계획은 변동 가능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2)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시설 : 농산물의 체계적인 유통활성화를 위한 집·배송장, 저온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부대시설 건설비 지원
 - 부지 구입비 및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은 사업비에 미포함
- 시설규모 : 200평이상 규모로 입지여건에 맞도록 설치
 - 사업자는 개소당 기본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자부담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비 : 500백만원/개소당(국고보조 250, 자부담 250)
 - 사업단가(기준) : 2.5백만원/평당(첨부1)

나. 2006년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 소비자 밀착형직판장 시설지원	2개소	1,000	500	-	-	500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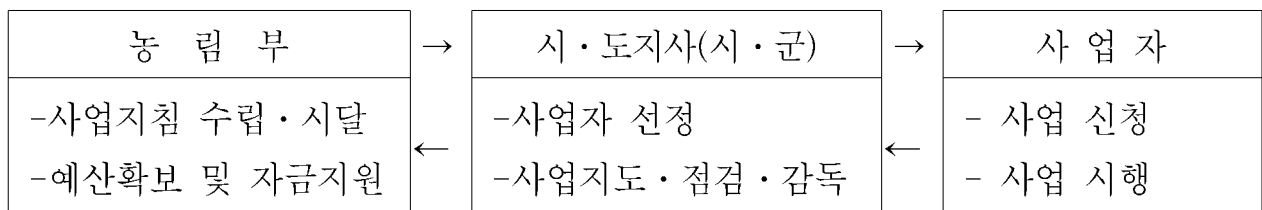
- 농림부 : 소비안전과 (02) 500-1841~2
- 시·도 : 농산물유통과 또는 농정과
- 시·군 : 농산물유통 담당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자의 사업동기·의지·수행능력이 우수한 단체
- 소비자 및 생산자회원이 많은 단체
- 최근 3개년간 사업실적 및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단체
- 출자금액이 많은 단체
-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 경력(기간)이 많은 단체
- 동 사업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라. 사업절차 및 집행



○ 사업타당성조사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첨부2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각도 농업기술원·농협·농유공 등 관련기관에 현지 사업성검토를 요청하여 검토내용을 사업자 선정시 반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보고, 농림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자금배정

마.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
-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성고 확인 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음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 사후관리기간 : 준공후 10년간
- 처분제한기준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타용도 사용 등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나. 보고사항

- 사업완료전에는 사업 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보고
- 동 사업 완료후 농산물 유통실적을 매 반기 종료후 익월 15일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기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6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첨부 1]

건축 단가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평당단가	비고	
건축	용역	건축설계	82	
		건축감리	45	
		전기·통신 설계	9	
		전기·통신 감리	14	
		소계	150	
	공사	건축공사	1,210	
		전기공사	127	
		통신공사	26	
		부대공사	60	
		소계	1,423	
	지급자재	건축자재	430	
		전기자재	83	
		통신자재	16	
		별도공사	30	
		소계	559	
부대시설	공구·기구·비품 등 기타	368		
합 계		2,500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배점 한도				등급기준	배 점
	A	B	C	D		
1. 사업 동기·의지·수행능력	20	16	12	10	A : 사업동기와 의지가 매우높음 B : 사업동기와 의지가 높음 C : 사업동기와 의지가 보통 D : 사업동기와 의지가 미흡	
2. 회원수(소비자단체기준 * ()생산자단체 기준)	20	16	12	10	A : 3,000명 이상(100명 이상) B : 2,000명 이상(70명 이상) C : 1,000명 이상(50명 이상) D : 1,000명 미만(50명 미만)	
3. 최근 3개년 평균 운영실적 (매출액기준)	20	16	12	10	A : 20억원 이상 B : 15억원 이상 C : 10억원 이상 D : 10억원 미만	
4. 친환경농산물 판매 비율(매출액기준)	10	8	6	4	A : 70% 이상 B : 60% 이상 C : 50% 이상 D : 50% 미만	
5. 출자금	10	8	6	4	A : 3억원 이상 B : 1억원 이상 C : 5천만원 이상 D : 5천만원 미만	
5. 유통사업기간	10	8	6	4	A : 5년 이상 B : 3년 이상 C : 2년 이상 D : 2년 미만	
6. 기존유통시설 보유 (판매장 포함)	10	8	6	4	A : 200평 이상 B : 100평 이상 C : 50평 이상 D : 50평 미만	

[별지 제1호 서식]

소비자 밀착형직판장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조직결성일		전 화 번 호	
목 적			
주 소			
회 원 수	○ 소비자 :	○ 생산자 :	

나. 자산 현황

동 산	부 동 산	차 입 금	출 자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기 운용중인 유통시설 보유현황

시설·장비						
평, 대수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및 소유자명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나. 사업기간 및 사업개시 예정일

- 사업개시일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다.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백만원(국고 , 자부담)

구분	내용		평당단가	비고	
건축	용역	건축설계 건축감리 전기·통신 설계 전기·통신 감리			
		소계			
	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부대공사			
		소계			
	지급자재	건축자재 전기자재 통신자재 별도공사			
		소계			
	부대시설	공구·기구·비품 등 기타			
	합 계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체자금	
○ 자부담금		○ 신규출자	
○ 운 영 비		○ 외부차입	
- 매취자금		○ 기 타	
- 관리비 등			

4. 사업계획

가. 농산물 수집 및 판매계획

류별	품목별		수집량		주요 수집처 (각 수집처별 비중)	주요 판매처
			물 량	금액		
합 계						
양곡류	쌀	일 반			00작목관(73), 00작목반(27)	
		친환경				
		계			00작목관(73), 00작목반(27)	
	보리	일 반				
		친환경				
		계				
소 계						
과실류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가공품						

나.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5. 기타사항

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제출양식은 “4. 사업계획 중 가항의 농산물 수집 및 판매계획” 양식을 적용하여 ‘02~’04년까지 실적을 제출

나. 농산물 출하 및 소비조직의 현황

출하조직의 현황

조직명	회원수	주요 출하품목	주 소

소비조직의 현황

조직명	회원수	주요 소비품목	주 소

다. 기타 첨부서류

- 회원명부 사본 1부.
- 위치약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1부.
- 최근 3년간 결산서 각 1부.
- 전년도 대차대조표 1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과장 신영숙, 지도관 오승영)입니다.

1. 목 적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 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
-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 관리
-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추진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6-'02년	2003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후
사업량		개소 604	140	140	108	158	275
사업비	계	27,770	7,000	7,000	5,400	7,900	13,750
	보 조	13,885	3,500	3,500	2,700	3,987	6,875
	지방비	13,885	3,500	3,500	2,700	3,913	6,875

* 2006년 신활력 지역(7개소 : 무주 1, 고창 2, 문경 4, 영덕 2)은 국비 보조율 10% 상향 반영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농부중 및 근골격계 질환 심화
- 농작업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을단위 피로회복 시설이 필요함
-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

(2) 사업기간 : 2006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마을

○ 기본조건

- 반경 3km이내에 피로회복 시설(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 등)이 없는 마을
- 지방비 지원, 마을기금 활용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마을

○ 우선순위

- 농작업환경이 열악한 마을
- 인근 피로회복 시설로부터의 거리가 먼 마을
- 운영비 절감 시설을 설치할 마을
- 전담 관리인을 배치할 마을
- 활용 가능한 농가인구수가 많은 마을
- 건강관리실 설치에 동의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마을
- 마을 주민간에 화합이 잘 되고 마을내 조직 활동이 활발하며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고 타 사업의 추진효과가 높은 마을

(4)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시설

- 피로회복시설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구비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샤워실 또는 목욕실
 - 권장시설 : 찜질방, 심야전기, 태양열이용시설, 조리실, 식품가공실, 게이트 불장, 노인실, 건강정보실(컴퓨터, 비디오, 도서) 등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 다음의 권장기구를 중심으로 마을민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피로회복 : 벨트맞사지기, 안마의자, 발맞사지기, 온열치료기, 찜질기 등
 - 체력단련 :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트위스트기, 아령 등
 - 건강측정 : 전자체중계, 자동혈압측정계 등

나. 2006년도 사업비 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158	백만원 7,900	3,987	3,987	-	3,913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031 - 299 - 2671)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마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우수마을 견학, 주민의견 수렴, 관련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변경확정 후 도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소장)을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변경사항을 제출

○ 사업비 집행방법

- 마을대표는 건강관리실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관리규약, 공동 사후 관리 책임 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마을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를 실시함
- 마을 운영관리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한 시설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며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 건강관리실 설치 완료 후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관리규약 및 운영관리위원 현황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

나. 보고·기타 : 2006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참조

6. 2007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마을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1) 기본 조건

- 반경 3km이내에 피로회복 시설(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 등)이 없는 마을
- 지방비 지원, 마을기금 활용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마을

(2) 우선순위

- 농작업환경이 열악한 마을
- 인근 피로회복 시설로부터의 거리가 먼 마을
- 운영비 절감 시설을 설치할 마을
- 전담 관리인을 배치할 마을
- 활용 가능한 농가인구수가 많은 마을
- 건강관리실 설치에 동의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마을
- 마을 주민간에 화합이 잘 되고 마을내 조직 활동이 활발하며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고 타 사업의 추진효과가 높은 마을

다. 예산신청 절차

(1) 마을단위 예산신청 (2006년 2월말)

- 사업 희망마을에서는 마을주민 과반수이상의 사업유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농업기술센터에 비치)

(2) 시군단위 예산신청 (2005년 3월말)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마을의 적합성 여부를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후 도농업 기술원(특광역시)에 신청

(3) 시·도단위 예산신청(2005년 4월말)

- 시도에서는 시군별 추천마을을 검토 조정하여 우선순위 결정
- 시·군의 신청, 지방비부담능력, 지역개발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예산 신청

(4)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2005년 5월말)

-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대하여 지자체간 중복성, 국가균형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
 - 시·도단위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안을 작성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신청서 검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시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

(6)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 기획예산처에서는 시도단위에서 제출한 예산신청에 대한 농촌진흥청과 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의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 협의 보완

라.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과장 신영숙, 지도관 김은미)입니다.

1. 목 적

-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화, 농촌 공동체문화 함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8년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 당 1개소씩 시범 조성 : 160개소
- 농촌·농업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현장교육
- 마을 특성별 테마 발굴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촌다운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어메니티의 유지 보전
- 사업성과 거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 각종 시범요인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선도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중앙 및 지방 등 내·외부 네트워크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후
사업량(마을)		9개소	18개소	18개소	21개소	31개소	63개소
		9	27(9+18)	36(18+18)	40(18+21)	50(19+31)	157(31+126)
사 업 비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900	2,700	3,600	4,000	5,000	15,700
	보 조	450	1,350	1,800	2,000	2,520	7,850
	지방비	450	1,350	1,800	2,000	2,480	7,850

*'06년 사업량 50개소는 기존 19, 신규 31개소임(연차적 1억원씩 2년간 지원)
 - 2005년 신규사업 21개소중 1개소(남제주)는 사업비 2억원 전액 지원
 - 2006년 신활력 지역(무주 2개소)은 국비보조율 10% 상향 반영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WTO 출범이후 농업생산 소득기반 약화에 따라 농촌 활성화 대책 필요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97.4%('90) → 76.2%('03)
 - 농이소득 비율('03) : 농가소득의 35%(이전소득 포함 60.7%)
- 주5일 근무제·수업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농촌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 전통지식의 보존을 위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 : 생물다양성협약 체결('92)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관리 능력 부족

(2) 사업방향

- 농업기술센터 등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로 마을 고유의 테마와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도농교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능력 배양
-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 및 마케팅, 품질 향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관련 시범사업의 우선 투입 및 연구결과의 적용을 통한 농촌관광 선도 모델 개발

(3) 사업내용

- 농업자원을 포함한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
-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
 - 볼거리, 먹을거리, 쓸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등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경관 조성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마을주민 교육 : 마을 경영 및 운영, 프로그램 실행방법, 시설물 관리, 농촌관광 마인드 및 서비스, 민박 운영, 마케팅 등

- 소득자원 개발 : 친환경 농특산물, 농산물 가공, 테마상품, 캐릭터 등
- 홍보·마케팅 :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동 지원, 이벤트 개최, 홍보물 발간 등
- 제시된 사업내용을 마을의 여건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1단계(기반 구축) → 2단계(체계 확립) → 3단계(자립화·성장 및 발전)
- 추진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빈집활용 지원, 가정원에 생활화 등 농촌 활력화 시범사업 및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나. 사업기간 : 1년

다. 사업량 : 50개소('05지정 : 19개소, '06 신규지정 : 31개소)

라. 지원조건

- (1) 지원금액 : 마을당 1억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전북 무주(2개소) : 국비 60%, 지방비 40%
 - ※ 지역여건과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2) 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의 합의가 된 마을로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 조건
 -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 농촌다운 마을경관과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이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
 -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마을운영에 참여할 인적자원이 있으며 마을 내의 조직 활동이 활발한 마을
 - 농촌지도기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투입되어 성과를 도출했던 마을

마. 2006년도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50개소	백만원 5,000	2,520	2,520	-	2,480	-
농촌진흥청 마을육성	50개소	5,000	2,520	2,520	-	2,480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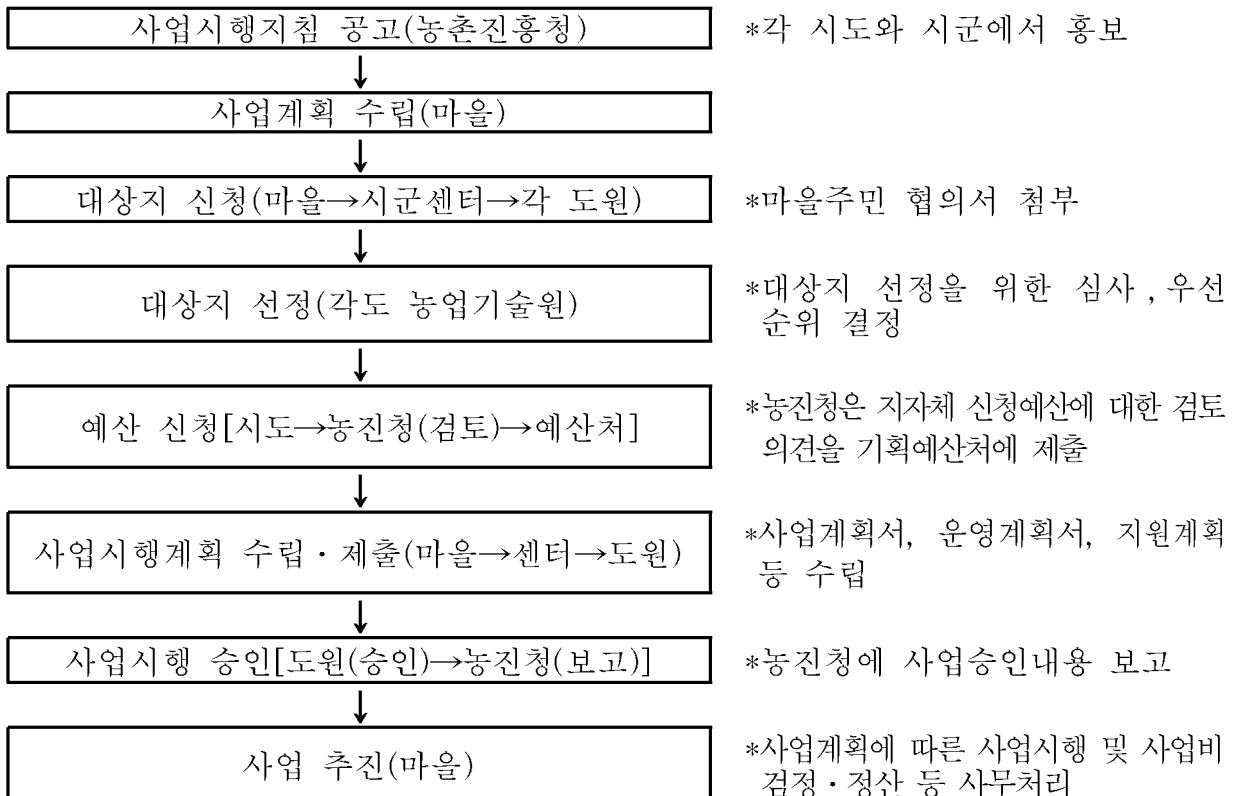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031-299-2676)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주체 : 마을 관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 (2) 사업추진절차개요



라. 사업시행 세부절차

(1)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 신청(마을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 받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주민총회, 마을협정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2)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도 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마을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지침 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도 농업기술원에 제출
 - 제반사항 검토하여 사업 신청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 가능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추천대상마을에 대한 행정지원계획을 입안, 첨부하여 도 농업기술원에 추천
 - 중앙·도·시군단위 시범사업 또는 행정기관의 관련사업 연계방안, 마을주민 교육계획 등

(3) 최종 마을선정(도 농업기술원)

- 각 도원에서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마을을 자체 심사계획 또는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 대상마을 선정 시 중점 검토사항 : 마을 중장기사업계획, 사업전망, 마을의 자원(테마, 농·특산물, 경관 및 환경, 지정학적 위치 등), 도농교류 수용여건, 마을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및 지도자의 능력, 마을 외부와의 지원체계 구축, 시군센터의 마을지원계획
- 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심사결과를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마을에 통보

(4) 사업시행

- 중앙-도-시군-마을별 지원체계 구축과 각급단위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 연계
- 선정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마을조성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군센터에 제출하고 시군센터는 도원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

- 시군센터소장은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마을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센터에서는 각급단위 기능과 역량에 따라 담당 공무원, 마을리더, 주민에 대한 교육 실시
 - 농촌진흥청 : 신규선정마을 사업협의 및 교육, 담당자 워크숍, 평가회 등 1~2일 단기 코스의 정책교육 실시
 - ※ 한국농업전문학교의 농업인 교육과정에 “농촌관광 교육과정” 운영
 - 지방 지도기관 : 마을주민, 민박농가, 부녀자, 사업 추진위원, 예비마을 주민 등 대상별, 과제별 교육 실시

(5)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비 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집행규정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개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지원을 지양하고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금 집행은 참여주민 협의에 의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 구입, 전문가 컨설팅, 설계비 등

<예외사항>

-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기 어려워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실사와 농진청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주민이나 기술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6) 기타사항

-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 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거쳐 도 농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업평가, 사후관리 및 지원, 행정사항

- 사업평가 : 농촌진흥청장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
-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착수연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
- 사후지원
 -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에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 발전 및 시범사업 성과 거양을 위한 공무원, 마을리더, 주민 등에 대한 교육, 연찬회, 워크숍 등을 실시
 - ※ 각종 교육행사 시 타 부처 지원마을의 주민 포함
 - 농촌진흥청은 소속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마을의 시범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결과 지원

나. 보고·기타 :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함.

6. 2007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마을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2006년 지원대상 및 조건과 동일함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2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라.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신청(마을 → 시군농업기술센터) : 2006. 2월말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2) 마을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 : 2006. 3월말

(3) 마을 선정(도농업기술원) : 2006. 4월 초중순

○ 시군에서 추천한 대상마을을 자체심사계획에 의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도 자체 심사계획에 의해 선정

(4) 예산신청(시도지사→ 농촌진흥청(검토)→ 기획예산처) : 2006. 5월

마. 선정기준 : 지침 상 지원대상마을의 선정조건과 도원의 자체심사계획에 의한 대상마을 선정계획에 따름

바.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전영미)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포함)에 대해 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민 방문객 유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과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정비된 마을 조성
- 자연경관, 농업, 주민의 생활문화 등 농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로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과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도록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2~'03	2004	2005	2006 (예산안)	2007~2013
사업량(마을)		850	44	32	47	67	660
사 업 비	계	170,000	8,800	6,400	9,400	13,440	131,960
	보 조 용 자	85,000	4,400	3,200	4,700	6,750	65,950
	지방비	-	-	-	-	-	-
	지부담	85,000	4,400	3,200	4,700	6,690	66,010
	자부담	-	-	-	-	-	-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 등을 마을에서 공동 시설로 이용하고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 부여

나. 사업기간 : 1~2년

다.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고50%, 지방비 50%)
-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라. 2006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7개 마을	13,440	6,750	6,750	-	6,690	-
○ 체험마을조성	67개 마을	13,440	6,750	6,750	-	6,690	-

< 추진체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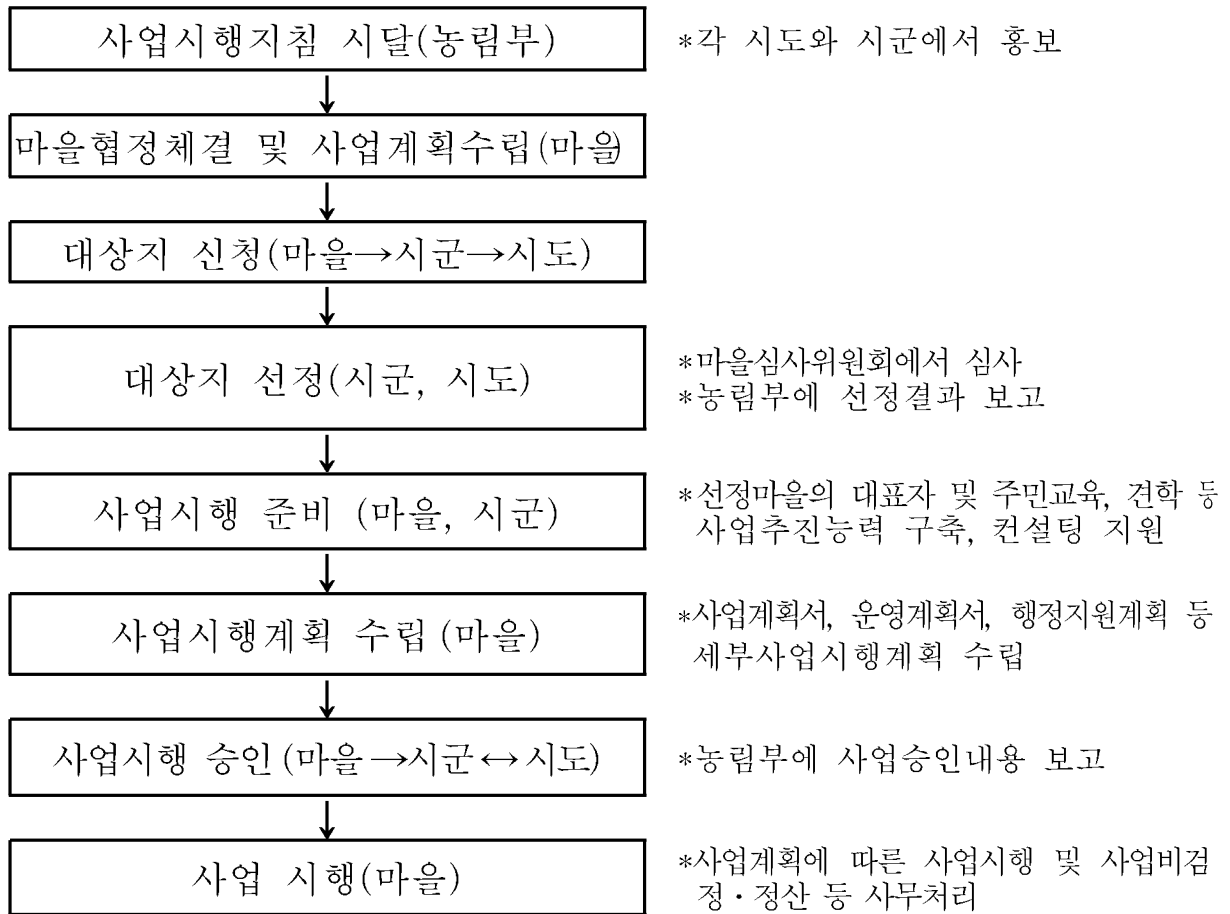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진흥과(02-500-1967)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농정과
- 시·군 : 농업담당과

다.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체계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선정에 앞서 각각 시·군,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 사업시행절차 >

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1) 대상마을 요건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전체 20호 이상으로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 마을 내 비농가도 마을협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 광역시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준농어촌지역의 마을에 한함
 - ※ 마을협정에서 정할 사항
 - 참여가구의 역할분담(농장·숙소 제공, 도시민 안내, 음식 등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료(산정기준),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원칙 등
 - 주민 자체의 노력부담·장비사용, 마을내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 마을협정 체결 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2) 대상마을 선정

(가) 사업신청(마을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참여자들의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별지서식1), 마을협정(별지서식2)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서식3)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 마을에서 시장·군수에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제출
- ※ 농협조합장,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나)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세부사업별 법상 제약요인 검토
-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의무포함사항]

- ①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 ② 체험마을 홈페이지 미구축시 홈페이지 구축 지원
- ③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희시설 활용계획

[권장포함사항]

-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 ⑦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지원계획

○ 추천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마을선정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마을선정(시·도지사)

○ 선정절차 및 방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류를 마을심사위원회에 송부
- 마을심사위원회는 (별지5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사업계획 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 기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심사위원회가 정함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 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10~15인)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전문가 참여비율 10%이상 의무화

○ 마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마을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 균특회계 예산한도의 시군배정과 관련, 지역사정에 따라 시군에서 대상 마을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방법을 준용하여 선정

(3) 심사결과 통보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농림부에 보고

나.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문가의 컨설팅지원을 통해 시·군의 행정지원 계획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장·군수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계획은 당해연도 및 중장기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마을 주민교육

- 시군 및 시·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예외사항]

○ 자재구입비 중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자재 공급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군 실사와 농림부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민이나 기능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 마을협정참여자의 노력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라. 기타사항

○ 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건물·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용도전환시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변경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마을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함

마. 자금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금은 3~4회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하여 소요액을 전액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정산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
 - 농림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매년 점검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나. 사후평가

- 농림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 마을심사평가기준(별지 5서식)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마을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다.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마을 선정 직후 결과보고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행정지원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를 제출 : 사업시작년도 1월 말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 익년 3. 20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06년 대상마을요건과 동일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2년
 -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기간이 2년일 경우 1억원씩 연차별 지원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마을 → 시장·군수) : '06. 1. 31일까지
-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06. 2. 28일까지
- 마을 선정(시·도지사) : '06. 4. 30일까지
- 예산 신청(시·도지사 → 농림부(검토) → 기획예산처)
- 선정된 마을대상으로 사전준비교육 등 실시(시·군, 시·도) : '06. 5~12월

마. 구비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마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선정

사.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사항에 농촌관광 관련 분야 포함

[별지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이장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시·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별지2]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 가. 마을의 역사
-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 준비계획 및 주민교육계획

- 사업계획수립 전 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을 위한 준비계획
- 사업추진단계별 주민교육계획
- 주민교육대상자별(마을 대표자, 참여주민, 사무장, 부녀자 등) 교육계획

6.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9. 녹색농촌체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자부담	보조	융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4]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
 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 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 · 미꾸라지체
 험 등
-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섯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별지5]

마을심사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점	내 용
	300		
① 관광자원 및 여건	1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농촌모습의 보전, 경관주택의 보유여부 ○ 자연경관의 조성현황 및 생태보전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문화유적 보유현황 및 연간 방문객수, 레저시설 연간 이용객수 현황)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여부 ○ 지역고유축제, 지역특산물, 향토음식 등 보유여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지 여부 - 교통편의 다양화 여부 - 연간 관광객수 및 민박관련 숙박시설 수 고려
② 주민합의와 사업추진 의지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발적인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준비 등 주민의 사업참여가 적극적인지 여부 ○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인가 여부 ○ 마을 토지이용조감도 작성·제출여부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10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부존자원의 활용 정도,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계획, 마을기반시설의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 여부 ○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사업계획서작성·교육·사후관리지원 등 농협 등의 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심사의 세부기준은 마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30점범위내에서)**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기초로 산출

② 계산식 도입

- {참여농가 중 친환경실천농가 비율 × (전체 참여농가수 / 마을 전체가구수)} × 30(점)

예시) 마을전체 100가구 중 50가구가 사업에 참여시, 35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 15가구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 - 계산식 : {(35÷50) × (50÷100) × 30(점)} = 9(점)

★ **농촌지역개발 교육과정(농림부 주관)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15점범위내)**

① 교육수료증을 근거로 산출

② 배점기준

- 리더십육성과정 수료자 2명 이상 : 6점

-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수료자 2명 이상(모듈별) : 4점

* 국외견학 모듈 제외

- 동기화과정 수료자 4명 이상 : 3점

- 공무원 특별과정 수료자 1명 이상(시·군단위) : 2점

★ **농촌마을CEO 1명 이상 참여시 가점 부여 : 10점**

89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공공)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한준희)입니다.

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 목 적

-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정주권 면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 등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
- 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위주로 추진 (national-minimum)

나. 장기사업목표

- 면정주기반확충사업('90~'13) :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800개면(15자치구포함)
 - 1단계 : '90~'04까지 770개면(15개자치구 포함)
 - 2단계 : '05~'13까지 800개면(15개자치구 포함)
- ※ 전국 1,209개면과 준농촌지역 15개 자치구 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면 361개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면 53개면,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800개면(15개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2003까지	2004	2005	2006 (예산안)	'07이후
사업량(면수)		800	616	152	-(338)	-(300)	800
사업 비	계	5,233,822	2,661,935	180,380	179,493	190,000	2,019,014
	국고(양여금)	4,183,125	1,456,500	128,863	163,918	190,000	2,019,014
	지방비	543,340	476,248	51,517	15,575	-	-
	융자	507,357	507,357	-	-	-	-

주1] 융자금은 '04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에 편성

주2] '90~'04까지 1단계 770개면 지원완료(지방양여금), '05년부터 2단계 800개면을 대상으로 지원(균특회계)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면개발계획수립

(1) 목적

-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 농어촌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로서의 역할
- 기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권개발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도록 함.

(2) 면개발계획수립 대상

- 2005년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개발면에서 제외되어 정주기반 확충사업 대상이 되는 137개면
- 기존에 타부문에서 면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한 면에 대하여는 기존 계획서를 활용하거나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3) 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계획수립비는 배정된 정주기반확충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

(4) 면개발계획 대상면 선정

- 농림부장관의 면개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면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정주권개발대상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승격등 변경이 예상되는 면은 계획수립 대상 후순위로 조정

(5) 중심마을생활권 설정

- 중심마을생활권은 주민편익·서비스기능을 갖춘 중심마을과 그 배후의 농지·임야등 농업생산기반 및 산업기반을 포괄하며, 중심마을의 편익·공공서비스에 직접 의존하는 동일 생활권내에 위치한 소규모 자연부락을 포함하며, 다음의 사항등을 공유하는 권역
 - 공공 서비스시설(관공서, 농협등 금융기관, 의료기관, 학교등 교육기관등)
 - 도로 및 교통의 연계성 및 접근
 - 중심마을은 50호이상의 규모 있는 거점마을
 - 시장·상가등 상업 및 유통기능
 -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
 - 중심마을의 공공·편익시설에 의존하는 배후마을
- 중심마을은 주거 생활의 공간으로서 관공소 및 공공시설, 학교등 교육시설, 금융기관등 서비스시설, 시장 및 공동이용시설등 편익시설 등이 갖추어진 중심권역의 거점마을로 배후마을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을
 - 마을 규모 50호 이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
 - 도로·교통등 접근성이 좋은 마을
 - 공공·기초서비스시설(관공소, 보건소, 농협, 의료시설, 학교등 교육시설)이 있는 마을
 - 시장, 상가등 유통기능이 있는 마을
 - 복지회관(마을회관)등 공동이용시설이 집중된 마을

(6) 계획수립절차

- 면개발계획 수립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별 중·장기 개발방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안) 작성

- 면개발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1단계 추진계획은 지원사업 비 범위내에서 중심마을 생활권(지역실정에 따라 3개내외)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과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와 단계별 추진계획이 중심마을에 집중투자 되도록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7) 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개발계획 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8) 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 이내로 함

- 시장·군수는 1년이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기 계약체결, 예산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

(9) 개발계획의 내용

- 정주생활권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개발방향
- 지역현황
- 농촌 정주체계 정비계획
- 중심마을 정비계획
-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
- 중·장기 투융자 계획 등(단계별 투융자계획)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자원조사 대상항목 중 농촌생활환경정비분야

(10) 개발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개발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아래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11)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수립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 투융자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작성하되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게 수립
 - 정주기반확충사업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대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
 - 타부문사업 : 단위사업별로 투융자계획 수립
 - 중심마을정비계획은 개발방향, 개발계획,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수립함
 - 도상계획(1:5,000도면)
 - 소요사업비
 - 상·하수도계획
- 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 등과 연계여 계획수립
- 경지정리, 생활용수개발,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문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사업은 당해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타부문계획으로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연계추진되도록 함
-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개발계획수립 참여자 명기

-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타부 문 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12) 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 의한 자원조사 기초자료 활용
- 농촌지역의 중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면단위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정주기반확충 대상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됨.

나. 정주기반확충사업

(1)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 농촌경관개선 :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 집의 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필요시 농산물유통, 작목반등 활용 및 주민정보화수준 향상 목적의정보통신기반 시설을 회관내에 설치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주택정비 : 주택의 신축 및 개량
 - ※ 타부문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제외토록 함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보조 : 면당 30억원 범위내에서 면별로 순환하면서 균형있게 지원
 - 융자 : 주택신축·개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한도액내에서 3년내 완료 위주로 지원
- 지원조건
 - 보조사업 : 국고 100%(균특회계)
 - 융자사업 :
 - 주택신축(개축) : 호당 3천만원이내, 연리 3.0%,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10백만원이내,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3) 2006사업비 내용

사업량 (면수)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균특)	지방비	자부담
300	190,000	190,000	-	-

※ 3년내에 30억원 지원을 위해 가급적 면수를 조정하여 집중 지원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71~2)

○ 시·도 : 농정국 농정과(충북), 기반조성과(충남), 농지개발과(전북)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제주)

자치행정국 새마을과(경북),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강원), 농업지원과(경남), 주택과(경기)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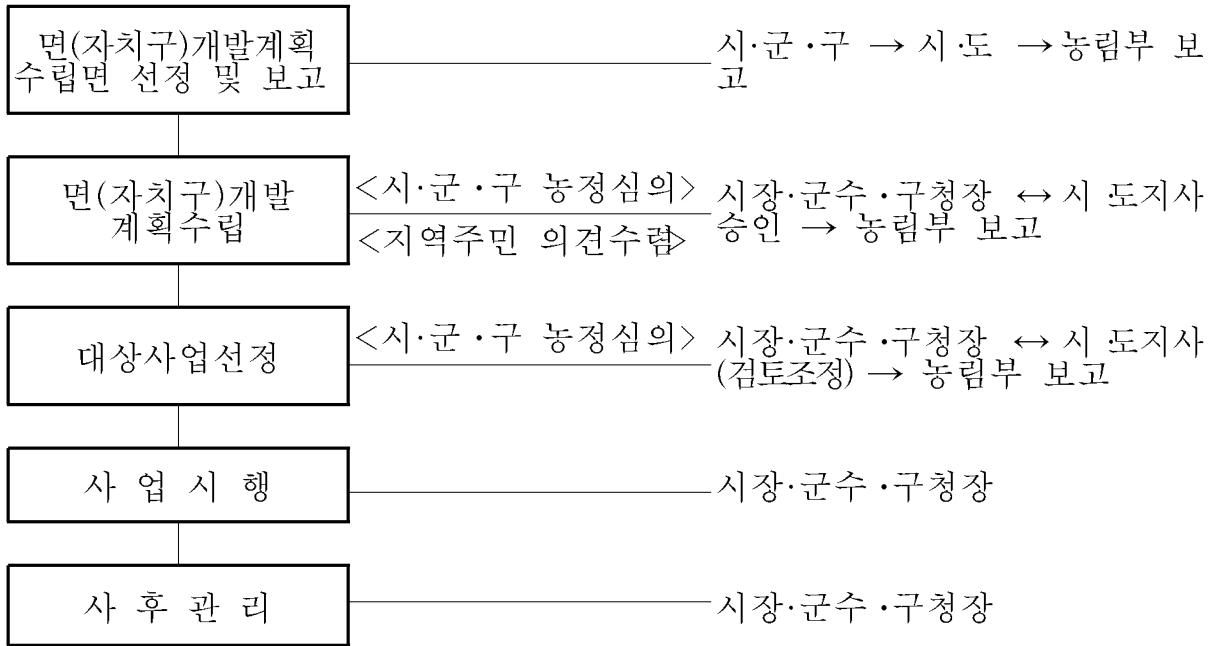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산)

○ 시·군 : 건설과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1) 대상사업선정

가) 사업대상면(또는 자치구) 선정

- 면(또는 자치구)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 면개발계획 수립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여건변동이 많은 면은 보완계획을 수립
 - 신규착수 대상면은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과 연계하여 선정함으로서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함
 - 사업기간이 3년이상(면당 30억원 한도 기준) 장기화 되는 면이 있는 시·군은 가급적 신규착수 억제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고시('05.6.13)된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면은 '06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다음연도부터 지원 중단
 - ※ 광역시 자치구중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조정으로 준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삭제하고 타지역으로 조정·시행
- 시·군내의 정주권개발 대상면 전체가 지원을 완료(면당 30억원)한 시·군은 동일한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 및 규모로 계획수립·시행

나)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구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등 타 분야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하거나, 완공 후 활용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
 - 마을내 도로 등 상위계획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후 시행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운용 민박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자연생태마을 등을 우선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구)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원회 등을 자치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에 한함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확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대상사업 선정시 면(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1의2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 선정함.

(2)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필요시 사업착수전에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시행
 - 보완계획 수립비용은 개발사업비에서 집행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규모(30억원 범위)에 맞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완공위주로 추진

<사업시행>

(1) 사업시행

가) 보조사업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시·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시행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부서에 협의·지원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 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후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함

나) 용자사업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사업자)
- 사업내용 : 주택신축·개량 등
- 용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용자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부문용자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등)은 대상자 선정시 용자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 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용자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용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건축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우선, 용자대상자를 변경하여 시행
 - 주택건축을 위하여 용자금을 신청하고 연내 주택건축을 실시하지 않아 대출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이후 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용자방법
 - 용자금 대출은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시설물수반시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에 따라 진도(기성고) 확인 후 자금지원
단, 용자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용자금 대출상황을 매 월말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관기관(읍·면, 시·군, 시·도, 농림부)의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별표 1)

(2)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법률』의 규정에 따름

(4)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행정사항>

(1)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의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위한 노력 여부
 - 신규사업 선정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여부
 - 사업시행 중 지나친 계획변경이나 임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2)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수탁시행자)은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공사실명제
 -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후 사업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3) 지역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추진

-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개발 시책사업 등과 연계추진도록 함
 - 타부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단위 지역개발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추진

(4) 보 고

- 면개발계획승인 결과보고 :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승인시(별지 제1호 서식)
- 면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2호 서식)
-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3호 서식)

- 면정주기반확충사업선정 결과보고 : 매년 3.10까지(별지 제4호 서식)
-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완료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보조사업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면 위주로 집중지원
 - 주택정비 등 융자사업은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7.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2005. 3.28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5. 4.31까지)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예산요구시 시·군별, 면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

(2) 신청자격 : 시장·군수

(3) 구비서류 : 본 시행지침의 <선정절차>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결과 보고서

[별표 1]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1. 용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권자
○전원마을조성사업	○전원(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의 입주예정자로서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주택신축	○정주기반확충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개축)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구청장
○주택개량	○정주기반확충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부분개량)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구청장

2. 용자지원조건

사업명	금리 (%)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계	거치	상환	
○주택신축	<u>3.0</u>	20	5	15	○호당 3,000만원 이내
○주택개량	<u>3.0</u>	10	3	7	○호당 1,000만원 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업명	자금의 용도	용자대상자
○주택신축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민, 시장·군수 또는 농기공
○주택개량	○부엌·목욕탕·화장실·담장 등 기존주택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민

* '04까지 착수한 문화마을조성은 동 기준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자치구) ○○면 면(자치구)개발계획승인 보고

1. 지역 일반현황

면적 (㎡)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부락 (개)	가구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비고
	소계	논	밭	과수원				

3. 개발지표

구 분	단위	총계획	현수준		1단계계획		2단계계획		비고
			물량	%	물량	%	물량	%	
계									
○도로부문									
-마을내도로	Km								
-농어촌도로	Km								
○하수도율	%								
-하수도시설	km								
○상수도율	%								
-상수도시설	개소(명)								
○하천정비	km								
○복지회관	개소								
○마을회관	개소								
○주택정비	동								
○경지정리	ha								
○수리답율	%								

4.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총계획	정주권개발계획				타부문 계 획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1·2단 계이후		
계							
1. 마을기반정비							
2. 농어촌도로정비							
3. 농어촌산업개발							
4. 생산기반정비							
5. 문화복지시설							
6. 농촌경관개선시설							
7. 환경보전시설							
8. 재해방지시설							
9. 농촌주택정비							
10. 기타지역개발							

5. 단계별 부문별·사업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1단계				2단계				1,2단계이후			
			사업량 (개소/ 물량)	계	보조	융자	사업량 (개소/ 물량)	계	보조	융자	사업량 (개소/ 물량)	계	보조	융자
계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Km	/			/			/					
	마을간도로	Km	/			/			/					
	연결도로	Km	/			/			/					
	인도포장	Km	/			/			/					
	단독교량	개소												
	상수도	개소												
	하수도	Km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소 공동주차장 기타	개소 개소 개소 식												
2.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개소	/			/			/					
	마을회관	개소	/			/			/					
	정보통신기반	개소	/			/			/					
	공원	개소	/			/			/					
	어린이놀이시설	개소	/			/			/					
	향토문화시설	개소	/			/			/					
	휴게소	개소	/			/			/					
	기타	개소 식	/			/			/					
3.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km	/			/			/					
	소공원	개소	/			/			/					
	체육공원 생태농림 기타	개소 개소 Km 식	/			/			/					
4.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개소	/			/			/					
	쓰레기처리시설	개소	/			/			/					
	분류박스	개소	/			/			/					
	축산정화시설 기타	개소 식	/			/			/					
5.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Km	/			/			/					
	소방시설 기타안전시설 지역배수	개소 개소 개소 식	/			/			/					
6.농촌주택정비	소계													
	주택신축	동	/			/			/					
	주택개량 빈집정비	동 동	/			/			/					
7.기 타	소계													
	지역개발 면개발계획수 립 기타	개소 개면 식	/			/			/					

[별지 제2호 서식]

총26-65

년도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시·도)

시·군·구	개발계획수립				
	계 (면수)	'05까지	'06		'07이후
			면수	면명	
계					

※ 사업대상면수는 2006기준 정주권개발면(오지면 제외)

※ 개발계획수립 완료면수는 정주권면에서 읍승격 또는 오지면으로 편입된 면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총26-61

2006년 생활환경정미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 면수	시행 면· 자치 구 (지구)	합 계				전원마을조성				정주기반확충						비고
			보 조			용자	보 조			용자	보 조			용 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주택 신축	주택 개량	
계									()						()	()	

※ ()는 주택호수등 물량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선정결과(추진실적)

1. 부문별 총괄

(시·도, 시·군·구, 면)

(단위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 위	2005까 지			2006 계 획				비 고	
			사업량 (개소/물량)	보조	용 자	사업량 (개소/물량)	보조				용 자
							계	국고	지방비		
계											
1.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기 내도로 상하수도 하천정비	Km 개소 Km 식	/// ///			/// ///					
2.농촌도로정비	소계										
	마을간 도로 연결 도로 정비 마을 도로 정비	Km 개소 Km 개소 Km 개소 Km 개소	/// /// /// /// /// ///			/// /// /// /// /// ///					
3.농촌산업개발	소계										
	농촌 산업 개발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개 소 개 소 개 소 개 소 개 소	/// /// /// /// /// /// /// ///			/// /// /// /// /// /// /// ///					
4.생산기반정비	소계										
	농촌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추진	Km ha 개 소 개 소 개 소	/// /// /// /// /// /// ///			/// /// /// /// /// /// ///					
5.문화복지시설	소계										
	문화 복지 시설 정비 사업 추진	개 소 개 소 개 소 개 소 개 소	/// /// /// /// /// /// /// ///			/// /// /// /// /// /// /// ///					
6.농촌경관개선	소계										
	농촌 경관 개선 사업 추진	km 개 소 개 소 km 개 소 개 소	/// /// /// /// /// /// /// ///			/// /// /// /// /// /// /// ///					
7.환경보전시설	소계										
	환경 보전 시설 정비 사업 추진	개 소 개 소 개 소 개 소	/// /// /// /// /// /// ///			/// /// /// /// /// /// ///					
8.재해방지시설	소계										
	재해 방지 시설 정비 사업 추진	Km 개 소 개 소 Km 개 소 개 소	/// /// /// /// /// /// /// ///			/// /// /// /// /// /// /// ///					
9.농촌주택정비	소계										
	농촌 주택 정비 사업 추진	동 동 동 동	/// /// /// ///			/// /// /// ///					
10.기타	소계										
	기타 사업 추진	개 소 개 소 개 소 개 소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시·도총괄, 시군구 총괄, 면 별 순으로 작성, '05까지는 기완료된면의 실적도 필히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총26-63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상황 보고

1. 면·자치구별 추진상황 총괄

(금액 : 백만원)

시군	면·자치구	2006 계 획			추진실적(월말 현재)			진도 (B/A) (%)
		계(A)	보 조	용 자	계(B)	보 조	용 자	
계								

2. 부문별 추진상황

(시·도, 시·군·구, 면) ※ 시·도총괄, 시·군·구총괄, 면별로 순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6 계 획			추진실적(월말 현재)			진도 (B/A) (%)		
			사업량 (개소/ 물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계	보 조	용 자		계		보 조	용 자
계											
마을기반정비	소계										
	마을내도로	Km	/								
	마을간도로	Km	/								
	연결도로	Km	/								
	인도포장	Km	/								
	단독교량	개소	/								
	상수도	개소	/								
	하수도	Km	/								
	버스승강장	개소	/								
	버스정류소	개소	/								
공동주차장	개소	/									
기타	식	/									
문화복지시설	소계										
	복지회관	개소	/								
	마을회관	개소	/								
	정보통신기반	개소	/								
	공원	개소	/								
	어린이놀이터	개소	/								
	향토문화시설	개소	/								
	휴게소	개소	/								
기타	식	/									
농촌경관개선	소계										
	세천정비	km	/								
	소공원	개소	/								
	체육공원	"	/								
	식생담 등	km	/								
기타	식	/									
환경보전시설	소계										
	오수처리시설	개소	/								
	쓰레기처리시설	개소	/								
	문물박스	개소	/								
	축산정화시설	개소	/								
기타	식	/									
재해방지시설	소계										
	하천정비	Km	/								
	소방시설	개소	/								
	기타안전시설	개소	/								
	지역배수	km	/								
농촌주택정비	소계										
	주택신축	동	/								
	주택개량	동	/								
빈집정비	동	/									
기타	소계										
	지역개발	개소	/								
	면개발계획수립	개면	/								
	기타	식	/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완료면보고

(시·도 시·군·구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지 원 사 업 비				비 고	
			사업량 (개소/물량)	보 조				용 자
				계	국고	지방비		
계							년도별사업비	
마을기반정비	소계						○계 :	
	마을내도로	Km	/				-보조 :	
	마을간도로	Km	/				· 년 :	
	연결도로	Km	/				· 년 :	
	인도포장	Km	/				· 년 :	
	단독교량	개소					· 년 :	
	상수도	개소					· 년 :	
	하수도	Km					· 년 :	
	버스승강장	개소					·	
	버스정류소	개소					·	
공동주차장	개소					·		
기타	식					·		
문화복지시설	소계						-용자 :	
	복지회관	개소	/				· 년 :	
	마을회관	개소	/				· 년 :	
	정보통신기반	개소	/				· 년 :	
	공원	개소	/				· 년 :	
	어린이놀이터	개소	/				· 년 :	
	향토문화시설	개소	/				· 년 :	
	휴게소	개소	/				· 년 :	
기타	식	/				·		
농촌경관개선	소계						·	
	세천정비	km	/				·	
	소공원	개소	/				·	
	체육공원	개소	/				·	
식생담	Km	/				·		
기타	식	/				·		
환경보전시설	소계						·	
	오수처리시설	개소	/				·	
	쓰레기처리시설	개소	/				·	
	론롤박스	개소	/				·	
	축산정화시설	개소	/				·	
기타	식	/				·		
재해방지시설	소계						·	
	하천정비	Km	/				·	
	소방시설	개소	/				·	
	기타안전시설	개소	/				·	
지역배수	식	/				·		
농촌주택정비	소계						·	
	주택신축	동	/				·	
	주택개량	동	/				·	
빈집정비	동	/				·		
기 타	소계						·	
	지역개발	개소	/				·	
	면개발계획수립	개면	/				·	
기타	식	/				·		

② 전원마을조성사업

1. 목 적

-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성화 도모
- 취미영농과 전원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농촌지역에 건전한 여가·휴양 및 주거 공간을 마련
- 도시은퇴자와 은퇴농업인 등이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도록 유도함으로써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안을 제시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도시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마을정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마을 조성
-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어촌마을
- 기존의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간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마을
- 농림업 관련 소득시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을
- 소도읍 및 중소 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의료, 문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
-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간에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 적극 참여

나. 개발형태에 따른 사업유형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농촌이 가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20~50호 규모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민간주도형 전원주거단지, 시·군주도형 전원주거단지 등

○ 체재형 주말농원

-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하여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소규모 농장과 20호 규모의 체재시설을 갖춘 주말농원 조성
 - 취미형 주말농원,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사원복지형 주말농원 등

○ 은퇴농장

- 노령자, 은퇴자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영농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는 농장 및 주거시설을 조성
 - 임대형, 분양형, 종합복지형 등

다. 개발목표

- 시·군당 1~2개소의 전원마을정비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은퇴농장을 연간 30개소 수준 조성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9조 내지 제42조, 제76조 내지 제85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9조, 제3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2003까지	2004	2005	2006 (예산안)	2007이후
사업량(지구)		499	155	21	16(51) <2(30)>	7(60) <1(53)>	297
사업비	계	1,005,000	678,800	37,158	40,898	30,684	217,460
	국 고	579,406	319,700	29,285	27,710	26,000	176,711
	지 방 비	168,994	102,500	7,873	13,188	4,684	40,749
	융 자	256,600	256,600	-	-	-	-

주1] 사업량은 완료기준, ()는 시행지구수, < >내서는 전원마을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시행의 원칙 >

(1) 주거단지 조성 및 주택 건축

- 주거단지의 조성은 농어촌정비법,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추진
 - 단지조성은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한 후 조성
 - * 건폐율 : 관리지역 20~40%, 농림지역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 * 용적율 : 관리지역 80~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 주거단지의 세대별 주택용지는 쾌적한 전원공간 조성을 위하여 충분히 확보
 - 맞춤형전원주거단지, 은퇴농장, 기존마을재개발 : 100 ~ 300평(330 ~ 990㎡)/호
 - 체재형주말농원 : 50평(165㎡)/호 내외
- 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한하여 건축
 - 주택의 층수는 농촌지역 경관보전을 위해 3층 이하로 한정함
 - * 「별표2」 경관주택 건립을 위한 권장사항 참조
 - 시·군에서는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건축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민간주도형의 경우 주거단지 부지알선 및 대상지선정, 입주자 모집,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자체가 지원

(2) 기반시설의 보조금지원

-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마을기반시설은 보조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주차장, 오폐수처리 시설, 사면·녹지 등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생활기반시설에 한함
 - 단지의 매입 및 조성, 주택건축 등은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
- 주거단지 인근의 기존마을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한도 내에서 연결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음
- 보조지원 하는 마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자가 됨

(3) 융자금의 지원

- 주택신축자금은 호당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
 - * 세부적인 융자대상자 선정 및 지원조건 등은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별표1을 참조

(4) 예정지조사·기본조사·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 대상지선정을 위한 예정지조사는 시·군 책임 하에 시행하며,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민간(입주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
-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주체(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사장)가 일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비는 보조금으로 지원
 - 소요사업비 산출은 마을기반시설 등 보조지원분과 민간(입주예정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작성
- 세부설계는 부지정리 등 민간(입주예정자) 부담분과 마을기반시설 등 보조지원분이 구분되도록 설계
 - 마을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비는 보조지원하고, 민간(입주예정자) 부담분의 설계비는 민간(입주예정자)이 부담

(5) 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은 시군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시군주도형 : 시·군(농업기반공사)에서 용지 확보, 입주자 모집, 마을기반시설 추진, 입주자는 단지 내 부지정리, 조정, 입주민공동편의시설 및 주택건축 등 추진, 필요시 시·군(농업기반공사)에서 일괄 시행 가능
 - 민간주도형 : 민간에서 용지 확보 및 입주자 모집, 단지내 부지정리, 조정, 주민공동편의시설 및 주택건축 등 추진, 시군에서는 마을기반시설 추진
- *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지원
- * 민간업자 또는 원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형태의 맞춤형전원주거단지조성은 보조지원에서 제외, 한계농지정비사업 등으로 추진

(6)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입주예정자)과 시·군 간에 협의하여 민간(입주예정자)이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민간(입주예정자)이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민간(입주예정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음

(7) 법령·지침 위반시의 조치

- 사업시행자, 입주예정자 등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8조 (허가취소등) 참조)

- 사업시행 중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마을정비구역 지정 취소, 보조금지원 중단, 사업준공의 유보 등 제재조치
- 사업시행 완료 후에 주택 건축, 임대 및 분양, 입주자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신축 용자혜택 배제, 관련 인허가의 취소 등 적절한 제재조치 강구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1)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추진방식)

- 교통여건, 수려한 자연경관 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규모의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에 따라 민간주도형, 시군주도형 전원주거단지로 구분

(사업유형 예시)

① 민간주도형 전원주거단지

- 직장인·친지·동호인모임 등 다양한 민간인 그룹이 사전에 입주자 및 개발대상 토지를 확보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주거단지를 조성
 - 개개인의 취향과 주택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조성

② 시·군주도형 전원주거단지

- 시·군이 주체가 되어 대상토지를 확보(용지매수)하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
 - 시·군에서 사업시행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

(2) 체재형 주말농원

(추진방식)

- 도시와 인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도시민들이 가족단위의 취미영농을 하면서 주말 등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20호 규모의 거주·숙박시설을 갖춘 농원을 조성

- 체재시설은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하되, 1실당 33㎡(10평)수준의 소형 단독주택으로 건축
 - 체재시설은 1년 단위의 임대 또는 주말 숙박시설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함
- 농장은 필지당 33㎡(10평)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사업유형 예시)

① 취미형 주말농원

- 도시근교에 농장과 체류시설을 갖춘 체재형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농장 또는 체류시설을 임대

② 휴양체류형 주말농원

- 공기가 맑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조성, 휴양 및 건강증진 목적의 수요자에게 장·단기로 임대

③ 사원복지형 주말농원

- 기업이 사원복지를 위해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조성하여 사원 및 그 가족에게 임대

(3) 은퇴농장

(추진방식)

- 도시은퇴자 및 노령자, 은퇴농업인 등이 농촌에서 지역주민과 어울려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영농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은퇴자용 농장과 주거단지를 조성
 - 주택과 농장은 임대하거나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
- 농장은 필지당 66~330㎡(20~100평) 규모의 작목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영농을 통해 건전하게 소일하고, 영농소득은 생활비에 충당
- 세대별 입주자 중 최소한 1인은 55세 이상이어야 함

(사업유형 예시)

① 임대형 은퇴농장

- 도시은퇴자 및 은퇴농업인 등이 주택을 임대하여 단지내에서 함께 거주·생활하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20호 이상의 저가형 주거단지(주택)와 농장을 조성하여 임대하는 방식
 - 도시은퇴자 또는 은퇴농업인을 대상으로 주택 및 농장부지를 임대해 줌으로서 소자본으로 입주 및 생활이 가능
 - 주거단지는 세대당 대지 330㎡(100평) 이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형태
 - 농장은 다양한 규모의 작목 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입주자의 능력에 맞도록 임대
- ※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과 복지시설 등은 인근지역 시설을 활용

② 분양형 은퇴농장

- 중산층 도시은퇴자 및 은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소규모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20호이상의 주거단지와 농장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식
 - 주거단지는 세대당 대지 1,000㎡(300평)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정원과 텃밭(온실·재배사 등)을 갖춘 형태로 조성하거나, 또는 별도의 농장을 조성하여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영농하는 방식도 가능
- ※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과 복지시설 등은 인근지역 시설을 활용

③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 도시은퇴자 및 노령자, 은퇴농업인 등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면서 취미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복지시설 등을 갖춘 20호이상의 복지주거단지(주택)와 농장을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여 의료 및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의 사업을 적극 유치
 - 사업시행자는 쾌적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내 녹지공간·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영농단지를 조성,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나. 지원조건

1)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구 분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보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 3년간 10~20억원 범위에서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호 이상: 20억원 ○ 국고80%, 지방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당 3년간 10억원 이내 - 20호규모 ○ 국고80%, 지방비20%
용 자	○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좌 동
보조지원 대상시설	○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주차장, <u>사면·녹지</u> ,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좌 동

※ 주택신축융자금 지원은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별표1의 용자지원 조건에 따름

2) 은퇴농장

구 분	은퇴농장
보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구당 3년간 10~20억원 범위에서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u> - <u>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호 이상: 20억원</u> ○ 국고80%, 지방비20%
용 자	○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보조지원 대상시설	○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주차장, <u>사면·녹지</u> ,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 은퇴농장의 유형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보조금은 단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 시·도 : 농정국
- 시·군·구 : 농정과,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마을기본시설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 부지정리, 조경, 입주민공동편의시설, 주택(체제시설)건축 : 입주자(민간),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라. 사업추진절차

- 후보지선정 → 대상지신청 및 선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준공 → 운영 및 유지관리

* 세부추진절차 : 별표 1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농어촌정비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중 면지역(농어촌노인복지단지과 연계한 은퇴농장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중 농촌동을 포함)을 대상으로 함
- 예정지역이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 국공유림 인접지역으로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 마을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저렴하고 용지확보가 용이한 지역
- 사업신청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한 지역
- 체재형 주말농장과 은퇴농장은 체재시설과 인접하여 농지가 분포되어 있거나 농장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
- 주거단지 또는 농장조성으로 인해 마을전체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
- 주거단지 조성시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제외
- 기존마을과 인접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 연계활용도가 높은 지역
-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
- 은퇴농장의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세대원 중 1인이 55세 이상일 것
- 도시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은 제외

(2) 선정절차(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시장·군수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은퇴농장, 체재형 주말농원, 기존마을 재개발을 위해 관련법에 의한 개발 제한이 없는 지역을 선정
 - 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알선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
- 사업신청자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함
 - 사업예정지 신청서에는 주택단지 및 농장의 토지확보상황(매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및 동의서 등), 토지이용계획(안)을 첨부
 - 맞춤형전원주거단지는 분양 및 임대계획(입주예정자 명부)을 첨부
 - 체재형주말농원과 은퇴농장은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 사업예정지신청서 작성시 전문적인 분야는 시·군에서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예정지 신청서를 기초로 인근 주민의 의견과 지역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자연경관 등을 고려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현지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예정지 조사보고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현황(호수, 인구 <농업인/비농업인>), 기존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현황, 인근 마을현황,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시설 현황, 의료·문화·편의·복지시설현황 등

- 대상구역의 면적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계획
 - 타부문 연계사업 계획
 - 사업 시행후 마을의 발전 전망
 - 입주예정자 및 토지매입현황
 - 단지조성구상
 -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프로그램
 - 전원마을 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 프로그램
 -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기타 필요한 사항
 -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개발계획도(1:5,000지형도)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지역발전 기여도,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한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구에 대하여 대상지로 선정(상향식 공모방식)하고 대상지 선정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지 선정시 자체적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 및 입지선정기준에 맞는 지역인지의 여부
 - 입지선정이 완료된 지역인지의 여부
 - 타법에 의하여 제약요인이 있는지의 여부
 - 용지확보를 위한 철차가 진행되었는지의 여부
 - 입주예정자가 적정하게 모집되었는지 여부
 - 입주예정자 모집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현재 모집정도 및 앞으로의 전망 등
 - 입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와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 기존마을과 인접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의 연계활용도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
 - 의료, 문화, 복지 시설과의 연계활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및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
- 토지가격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절한지의 여부
- 소요사업비 산출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기타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한 필요한 사항 검토

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

- 기본계획은 시·군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마을기반시설과 부지조성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을 일괄하여 수립함
 - 기본계획수립시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의 배치, 마을기반시설의 배치 등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현황, 입지여건 분석, 단지조성규모,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 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기존마을정비계획(주택정비 포함), 마을하수처리시설, 주택배치 계획, 입주자 모집계획(입주예정자),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 필요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관련된 지구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구비조건을 반영
 -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은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 등
 - 타부문에서 지원가능한 연계사업 추진계획
 -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계획
 - 전원마을 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 프로그램
 - 의료·문화·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가능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립은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환경부 하수 67712-3072

: 2004.10.13)에 부합되도록 수립함

- 마을하수도 시설의 처리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만족하도록 계획함
- 필요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보호법(제47조의2)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며, 마을단위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함
 -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경관형성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계획수립비와는 별도로 실비계상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82조)
 -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일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 마을정비구역신청시에는 환경성검토서, 관련부서 협의내용 토지확보상황, 입주자예정자 모집상황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 다음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
 - 기본계획서(필요시 환경성검토서 포함) 1부
 - 위치평면도(1:25,000 지형도) 및 사업계획평면도(1:5,000 지형도) 각1부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서
 - 사업비수지 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정비구역에 편입될 토지의 지번, 지목이 포함된 토지의 명세
-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함
 - 마을정비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지번, 지목 등을 포함하여 고시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조달계획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제87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6조의2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또는 시행계획 승인전에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 및 검토시 사업구역내에 국공유지가 편입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완료시 농어촌정비법 제93조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내용을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할 수 있음(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등에 의거 민간전문업체에 부분위탁가능)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비조달계획
 - 토지이용계획 등 단지조성계획
 - 편익·복지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계획
 - 보조사업(국고 및 지방비 지원비율)과 자부담(시·군 또는 민간) 계획

(3)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단지조성 형태는 획일적인 격자형을 지양하고, 가능한 원지형을 고려한 전원마을 형태로 조성을 유도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비

-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수립
 - 계획수립시에는 주변의 자연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계획수립시 입주예정자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 계획수립시 단지내는 입주예정자, 마을기반정비계획은 인근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함.
-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의 체재·주거시설과 농장은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시행>

가.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원마을 조성사업 준공시기와 연결하여 추진토록 함

나.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시 공정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계획 승인시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은 단지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맞추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함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농어촌정비법 제32조,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명칭의 변경
- 마을정비구역지정면적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 전원마을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택지의 용도 변경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사업계획의 내용 중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변경, 처리용량의 변경 (10%이상 증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용지확보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및 은퇴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체재·주거시설 부지 및 농장용지 등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동의서 징구 또는 가계약, 계약체결, 계약금지급, 중도금지급, 잔금지급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진입도로 등 마을 외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행
 - 마을내 보조지원하는 마을기반시설의 공공시설부지는 입주예정자(민간)가 확보하여 등기는 시·군 또는 입주자간에 협의하여 시·군소유 또는 입주민 공유지분으로 등기
-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별표3) 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마. 주택 등의 건축

- 주거단지의 주택건축은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건축하되, 마을전체 경관형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주민신청에 의한 주택건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자가 주택건축을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전원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을 고려하고,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적정운영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마을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추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건축을 할 수 있음

바.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7조)

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등 요율

- 시장·군수가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에 의함.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의 요율 범위내 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 추진 출장비, 소모품비 등)를 사업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음.

아.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 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마을기반시설등 보조사업은 시·군(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준공보고, 도지사는 준공검사하여 준공확정
 -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입주예정자부담분은 시·군에서 준공검사하여 준공처리

- 준공 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는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사업시행 인가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 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자. 전원마을추진위원회 구성

-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전원마을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전원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참여와 의사결정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참여확대
 - 추진위원회 구성은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시·군관계자, 농업기반공사 전문가, 기존마을 주민 등을 참여시킬 수 있음
 - 기본조사, 실시설계, 감리, 사업시행 등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에 참여
 - 입주예정자 모집 및 홍보
 - 입주자가 시행하여야 할 부지정리, 마을내 공원조성, 조경, 마을가꾸기, 건축형식, 건축추진시기 협의 등 의사결정
 - 입주예정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할측량 및 등기정리 등 공부정리비 등의 부담금 배분 및 정산 등 추진
- 전원마을추진위원회에서는 회의 및 의사결정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지원>

가. 예산지원

- 보조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
- 주택건축 융자금 지원은 입주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융자금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시장·군수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업자가 될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사업비(국고, 지방비)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소요사업비중 보조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융자금의 지원
 - 시장·군수는 주택자금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융자대상자는 당해 사업지역에서 체재·주거시설을 건축하고자하는 자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자임
 - 융자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시장이 주택을 일괄하여 건축하여 공급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융자금을 일괄하여 대출할 수 있음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이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동안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융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택건축이 가능하여 융자금 집행이 가능한자를 우선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음
 - * 주택건축을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하고 연내 주택건축을 실시하지 않아 대출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이후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대출상황을 매 월말 기준으로 해당 사업 주관기관(읍·면, 시·군, 시·도, 농림부)의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용자지원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 수혜 여부, 타부문 용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신축 용자대상 : 면정주기반확충사업의 용자기준 적용
 - 시장·군수가 용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개인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건축공사 착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자를 신청하면 용자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협의를 통해 용자금을 대출하되,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후취담보 적극 활용 등)하여야 함
 - 용자금 취급기관은 용자금의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함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범위 내에서 실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년도말 검정 및 예산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입주자 모집

-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의 입주자 모집은 대상사업 선정전에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 단, 체재형 주말농원과 은퇴농장형 전원마을 중 임대할 계획으로 있는 지구는 제외
- 입주자 모집은 도시민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도시민의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 도시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함
- 입주자 모집은 사업주도자(시군주도, 민간주도) 책임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주체로서 민간주도형의 경우도 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입주자 모집을 인터넷게시, 공고, 향우회 서한발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을 “복합생활공간추진단(농업기반공사)”을 이용

- 하여 모집하고자 할 경우 “복합생활공간추진단”에서는 적극 지원함
- “복합생활공간추진단”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위치, 조성면적, 계획호수, 토지가격 및 대금납부방법, 입주자격조건 등과 전경사진, 위치평면도 등을 “복합생활공간추진단”에 서면으로 신청함
 - 입주자 모집은 최소 기본계획수립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함
 - 마을정비구역지정신청시 입주예정자 모집 결과를 첨부
 - 시장·군수는 입주자 모집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입주자 모집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농업기반공사 또는 민간(입주예정자)은 입주예정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마을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주택건축 용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용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결과 보고시에는 성명, 성별, 연령, 전주소지, 직업, 동반가족수, 주택건축시기, 입주예정시기, 전원마을입주동기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자와 주택건축, 입주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전원마을 주택용지가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자 선정시 마을기반시설 완료 후 주택건축 및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주도형의 경우도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건축 시기, 입주시기 등 입주신청자가 실 수요자인지를 사전 검토하여 실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는 마을기반시설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마을하수도시설이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준공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수도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가 마을하수도시설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준공후 2개월 이후 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함
-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부서 및 해당 기술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필요시 시·군 조례를 정하여 조달 가능)
 - 현지 상주직원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주민 중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50m³/일 이상은 마을하수도로 전환 추진(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 참조 : 2004.10)
- 시설관리자는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질을 측정·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관리자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기타 마을하수도사업시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은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2004.10)의 규정 준수

다. 연계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 도지사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 연계사업은 새로 조성되는 전원마을 입주민과 기존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메뉴 이어야 함
- 시장·군수, 도지사는 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도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협의회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담당과와 연계사업 관련 실과의 장으로 구성하며, 연계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협의함
 - 연계사업의 협의를 통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계산업이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에서 조정 및 반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예산소요, 반영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연계사업의 예

- 농림부의 정주기반확충,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 생산기반정비 등, 행정자치부의 오지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하수도 등, 문화관광부의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등, 보건복지부의 의료·복지관련사업 등, 소방방재청의 소화천정비 등, 농촌진흥청의 장수마을조성 등, 산림청의 등산로개설, 산림욕장, 숲가꾸기 등

라. 전원마을 입주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 시장·군수, 도지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함
 -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프로그램
 - 전원마을 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 프로그램
 -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들의 일거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기타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 등

마. 사업의 평가

- 농림부장관은 지자체의 사업추진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
- 사업평가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신규지구 선정시 전문기관의 참여도 및 예정지 선정 적정성 여부
 - 주변경관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 보조지원되는 마을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적정한 수립·시행 여부
 - 인근마을 주민들의 호응도 등

바. 보 고

-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승인시 (별지 제2호서식)
-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변경시 (별지 제3호서식)
-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수립시 (별지 제4호 서식)
- 전원마을조성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전원마을조성 준공보고 : 준공시 (별지 제6호 서식)
- 전원마을조성 입주예정자 모집결과 보고 : 매분기 익월10일까지(별지 제7호 서식)
-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매년 1월말까지(별지 제8호 서식)

사. 기타

- 기타, 마을정비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 이 지침 이전에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봄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2006. 3.28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6. 4.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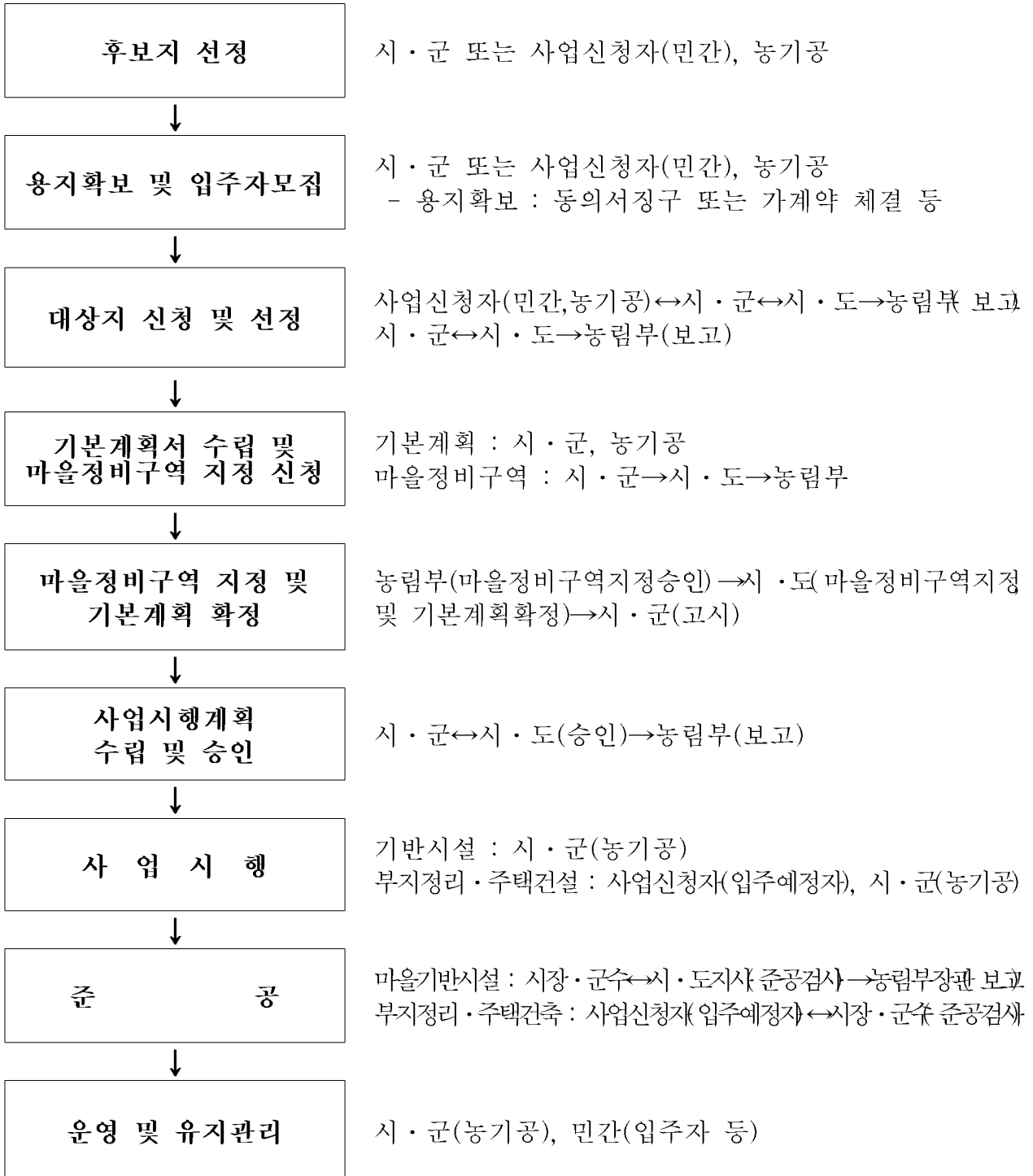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단지조성·주택건축은 토지소유자 포함)

-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시·군,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다. 구비서류 : 본 시행지침의 <선정절차>에 의한 예정지조사 보고서

[별표 1]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절차



[별표 2]

경관주택건설을 위한 권장사항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형태를 권장 ·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필지내 주택을 배치 · 해당 건축선을 유지하여 인접주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적절한 시야 및 일조를 확보하여 주거군 내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 · 주택내 각 실의 배치는 가족 구성, 방위, 공간별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도시주택과 구별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형 배치 고려 · 단지내 주택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계통의 색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벽체 및 지붕에 권장색을 지정 · 계획단지가 지역농촌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특색을 가질수 있도록 주택에 권장 마감(지붕, 벽)재료를 지정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단열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 · 외벽색은 명도 4~5이상, 채도 6이하로 자연 환경색채와 조화 · 외벽재료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뚝재, 자연석, 돌, 흙 등) 지역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재료(적벽돌 등)를 색채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용
지 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사(박공, 모임) 지붕형태를 적극 권장하며 그 외 곡면 지붕형태 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하나 평지붕(슬라브)형태는 되도록 사용 억제. · 물매는 연간 강수량등의 자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색채는 배경인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채사용은 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 명도(V)는 2~5.5, 채도(C)는 1~4로 함
개 구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광의 능동적인 유입과 외부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충분한 면적 확보 · 개구부 형태 구성시 장방형의 일정한 단위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고 차분한 주거환경 연출 · 창호재의 경우 금속재질 사용시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사용을 권장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과성의 재료를 권장하며,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여 거주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부여하고 또한 open space로 이웃과의 사회적인 교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 ·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오픈하거나 식재에 의한 생물타리를 권장, 인공재료 사용시(금속재질보다는 목재등의 재료 사용 권장) 주택외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
마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함.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_____군수(시장) 귀하

귀 시·군(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사업(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필요시 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내용 첨언함)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 면 적	비고
시·군	읍·면·동	리					

년 월 일

승락자 주소 :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호서식]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사업명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정비유형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								
지정대상 의요 개	지정목적 및필요성								
	위 치								
	면 적	㎡ (평)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p style="margin-left: 40px;">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자 : 도지사(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각 3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 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지형도)<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6. 사업비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정비유형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2. 추진경위

- 예정지 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마을하수도계획 협의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련

○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 고
신규택지	인구(인)				
	근린시설(m ²)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공공기관(m ²)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합 계(C+D)					

○ 계획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 처리수질

(단위 : mg/ℓ)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합계				
○보조 -국고 -지방양여금 -지방비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합계				
[마을기반조성]				
○공사비 -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용지매수 -보상				
○관리비 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예비비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6.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정비유형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 주요공사
-
-

2. 주요변경내용

3. 토지이용계획

(면적 :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 고
	면적(A)	구성비(%)	필지	면적(B)	구성비(%)	필지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 지 방 비 ○ 용 자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마을기반정비]				
○ 공 사 비 - -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농촌주택정비 등]				
○ 주 택 신 · 개 축 ○ 주 택 개 량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구명 : . . .
- 기본계획확정 : . . .
- 시행계획승인 : . . .
- 사업시행기간 : ~

(수입)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조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융자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출)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마을기반조성] ○ 공사비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 주택신·개축 ○ 주택개량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1. 총 관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지정년도	조성면적(m ²)	주택호수(호)	총 계획 (A)			까지(B)			계획						누계진도(B+D)/A (%)	비고	
				계	용 자		계	용 자		계 획(C)			()월말까지 실적(D)					진도(D/C) (%)
					보조	소계		단지조성	주택건축	보조	소계	단지조성	주택건축	계	보조			
시·군	면	리																
계																		

- * 1.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 2. 비고란에는 사업이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분양계획 등 기재

2. 주택건축 추진상황

시·군명	지구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백만원)		
		계(동)	신·개축(동)	개량(동)	착공(동)	완료(동)	미착공(동)	예산	자금배정	집행(대출)
계										

○○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마을하수도계획 협의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농장용지 - 농지조성부지 - 농업시설부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마을하수처리시설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련

○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 고
신규택지	인구(인)				
	근린시설(m ²)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공공기관(m ²)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합 계(C+D)					

○ 계획처리공법 및 처리수질

- 처리공법 :
- 처리수질

(단위 : mg/ℓ)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 보 조								
- 국 고								
- 지 방 비								
○ 자 부 담								
○ 용 자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비 (A)	준 공 사업비 (B)	증 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마을기반조성]								
○ 공 사 비								
-								
-								
-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주 택 정 비								
○ 기 타								
[농촌주택정비 등]								
○ 주 택 신 · 개 축								
○ 주 택 개 량								

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자모집 결과보고

1. 조성용지 분양 현황

구분	시·군	지명 (면)	착수 연도	분양 개월	분양계획(필지)					분양현황(필지)					분양 율 (B/A)	분양 실시 예정
					계 (A)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B)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분양계																
계획계																

※ 분양율은 분양이 실시된 지구 기준으로 작성, 분양계획지구는 분양계획과 예정일만 기재

2. 주택용지 분양 현황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분양 필지	거주지별(필지)			직업별(필지)					비고	
				면지 역	군지 역	기타 지역	농업	회사원	공무원	상업	기타		
계													

3. 지구별 조성용지 평균 분양가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단독주택용지			근린시설용지		비고
			계획필지	조성원가 (천원/평)	감정가 (천원/평)	계획필지	감정가 (천원/평)	
계								

※ 위탁시행자는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심사제외

○○도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위 치 :
- 처 리 용 량 :
- 설 치 연 도 :
- 가 동 개 시 일 :
- 처 리 공 법 :
- 유 지 관 리 부 서 :

수질검사 년 월 일	시설용량 (m ³ /일)	처리용량 (m ³ /일)	유입수질(mg/ℓ)					방류수질(mg/ℓ)				
			BOD	COD	SS	T-P	T-N	BOD	COD	SS	T-P	T-N
'04평균												
'05평균												
'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평균												

※ 수질검사기관의 성적표 첨부

<별 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자 희망신청서

- 사업유형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이주가족수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 신청지구 : 제1희망 : () 지구
 제2희망 : () 지구
 제3희망 : () 지구

대리신청시 기재사항

대 리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권리행사를 일체 포기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같이 입주를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2007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정지 신청서(예시)
(〇〇도 〇〇시·군 〇〇지구 : 〇〇유형)

2006.

- 신청인(대표)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동 예정지 신청 서식은 예시이므로 조사 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 할 수 있음

1. 예정지 일반현황

예정지 : 시·도 시·군 면 리

개발면적(예정) : m² (평)

사업예정지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m)								
구성비(%)								

토지소유자 현황

합 계	관내거주 (해당면)	관외거주			국·공유지	비고
		소계	연고	무연고		
명						
m ²						
()	()	()	()	()	()	

※ ()는 필지수

기간시설 여건

○ 도로상황

-

○ 상수도이용 현황(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농촌생활용수등)

-

○ 하수도현황(인근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시설 처리구역해당 여부, 없는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

□ 주변 공공 및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의 현황

구 분	1km이내	5km이내	10km이내	20km이내	20km이상
공공시설			○○면사무소		
교육시설		○○초등학교			
의료시설	○○보건지소			○○의료원	
금융기관			○○농협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 해당되는 시설명을 기재

○ 면소재지의 거리 및 공공 및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의 현황

○ 읍소재지의 거리 및 공공 및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의 현황

○ 거점도시의 거리 및 공공 및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의 현황

2. 사업시행여건

□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계획 검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
 - 용도구역별 현황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도면과 대장을 확인)
 - 농업진흥지역안 : m^2
 - 농업진흥지역밖 : m^2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상수원보호구역 등

□ 개발입지여건

- 마을의 현황 및 특징

- 입지여건 :

- 접근성 :

- 입주전망
 - 입주자모집상황(※입주자 모집방법, 입주자 예정수, 수요조사 및 추정 방법 등 기재, 입주예정자 리스트 별첨)

- 토지 확보 상황(원토지소유자와 용지 확보에 관한 진행 상황, 동의서징구, 계약 등 상세히 기재)

-

□ 면개발계획서상의 마을의 위치 (중심마을, 배후중심마을, 배후마을 등)

□ 지구내 토지가격

구 분	토지가격(원/m ²)		비 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평 균			
전			
답			
임			
대			
·			
·			

3. 개발계획개요

유형 : (맞춤형전원주거단지,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으로 구분)

사업시행주체 :

* ○○군 또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시행방법 :

* 시군주도형 또는 민간주도형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m ²	평		
계				
○ 주택용지				필지(평균 평/필지)
○ 공공용지				
-				
-				
-				
○ 하수처리시설				
○				

사업내용(*유형별 사업내용, 사업량은 시행주체별로 구분 표기)

- 토지매입, 단지조성(택지, 농지, 시설별 세분), 주택건축, 분양, 임대 등

.
. .
. .

(* 개발계획도 첨부 : 1/5000 지형도에 개략적인 계획 표시)

□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금액 :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산출내역)
계		
○ 보조		
- 국 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지방비		
- 민 자		

<지출>

(금액 : 백만원)

구분	단위	사업량	사업비소요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 조		융자			자부담
				국고 (80%)	지방비 (20%)				
계									
○ 전원마을조성									
- 부지정리	m ²								
- 진입도로	m								
- 단지내도로	m								
- 상수도	m								
- 하수도	m								
- 전기통신	식								
- 조경.녹지	m ³								
- 편의시설									
- 농지조성									
- 기타()									
○ 하수처리시설									
○ 용지확보	m ³								
- 주택단지내									
- 농장용지									
- 주택단지외									
○ 주택정비	동								
- 개량(기존마을)									
- 신축(주거단지)									
○ 기 타									
- 기본조사									
- 실시설계									
- 사업관리									
- 잡 지 출									
- 기 타									

* 사업여건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여 작성

4. 연계사업 추진계획

-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사업비(국비, 지방비 등), 추진시기, 소관부처 등

5.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필요시 덧붙임 가능)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프로그램

-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

전원마을 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 프로그램

의료·문화·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입주예정자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6. 관련기관 의견 및 주민호응도

구 분	의 견	비 고
면장 의견		
주민 의견		
토지주의견		
기 타		

7. 전문기관 의견

8. 시장·군수 의견

9. 도지사 의견

위치평면도 (1:25,000)

※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 도면은 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B4용지크기 이상)

지 형 도 (1:5,000)

- ※ 1. 1:5,000지형도에 국제법상 용도지역(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은 용도지구)과 농업진흥지역 등 표시(개발구역 경계를 표시)
- 2. 기존마을과 연계시는 개발계획을 스케치하여 표시(개략)
- 3.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계획내용 표시
- 4. 도면은 주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B4용지크기 이상)

지 적 도

- ※ 1. 개발구역 경계를 표시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지목
					주소	성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입주예정자현황

번호	성명	주소 (도,시군,읍면동)	연령	성별	직업	동반 가족 수	건축예 정시기	입주예 정시기	입주동기

예정지 전경사진(5"x7")

<근거리>

<원거리>

<별첨>

1. 입주예정자현황

- 입주신청서 등 증빙서류

2. 용지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자료

- 동의서징구서, 양해각서, 계약서 등 용지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참고가 될만한 자료

90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원량, 토목사무관 이성홍)입니다.

1. 목 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94~2014년까지 면지역의 농촌자연마을에 7,751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고소득 작목 포함) 외 축산용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 등 다목적으로 겸용 공급
- 광역·지방상수도계획과 중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유지관리조직을 운영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 관정의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 시설규모는 공급측면의 지하수부존량과 수요측면의 마을인구나 필요한 농업용수량 등 수요와 이용측면의 전기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4~2003	2004	2005	2006 (예산안)	2006이후
사업량(개소)		7,751	4,311	440	346	266	2,388
사 업 비	계	1,295,100	710,300	74,800	58,820	44,121	407,059
	국 고	822,990	355,150	59,840	47,108	35,297	325,595
	지 방 비	472,110	355,150	59,840	11,712	8,824	81,464

※ 2003까지 : 국고 50%, 지방교부금 50%, '04부터 : 국고 80%, 지방비 20%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내용

- 추진배경 :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은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기존의 우물·샘·간이상수도등은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심층지하수를 개발하여 깨끗한 용수문제 해결
- 사업내용
 - 수원공 개발
 - 지하수조사·개발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검사 등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 수원공시설 :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 이용시설 :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23조)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면지역의 농촌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 지원단가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
 - 수원공개발(지하수조사 포함)과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관정심도, 마을인구등)에 따라 조정지원
- 재 원 : 국고보조(농특세) 80%, 지방비 20%

나. 2006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계	예산액(백만원)			용자		
		계	국 고	용 자			
266	44,121	35,297	35,297	-	8,824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전화 : 02-500-1968)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농축산과, 주택과, 농산지원과, 농지개발과, 수자원 개발사업소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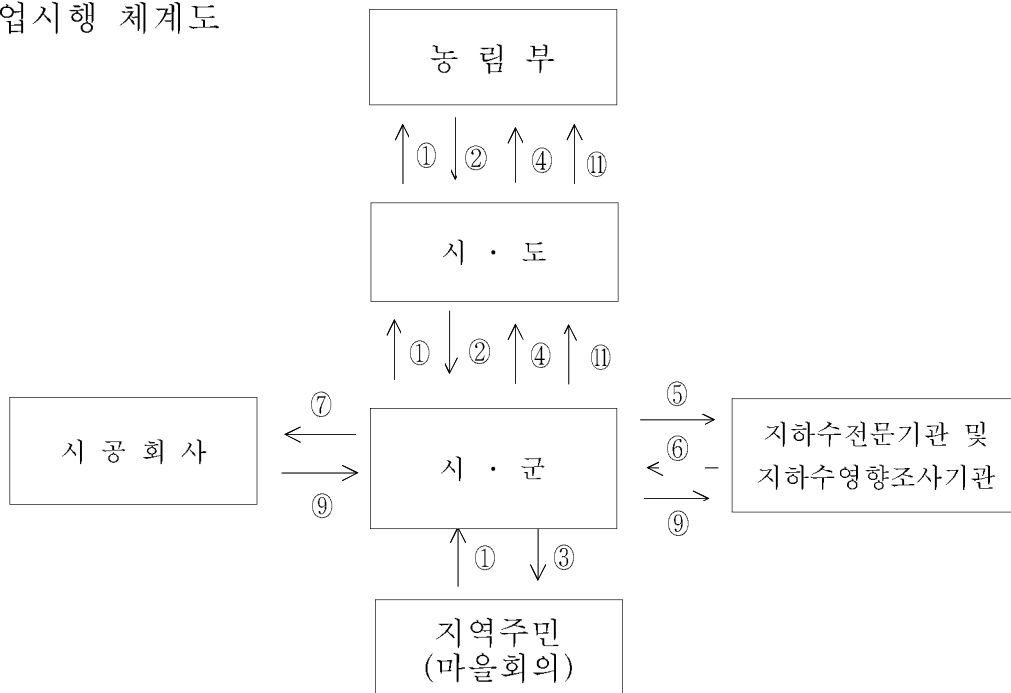
(1) 선정절차

- 사업희망마을(신청) → 면 → 시·군(예정지 선정) → 시·도(확정)
 - ※ 시군에서 수혜대상자의 의견수렴(마을회의) 후 사업예정지 선정
 - 생활용수 : 마을규모, 전기료부담 가능호수(호, 인) 및 인구
 - 농업용수 : 공급면적(논, 밭 구분), 필요시 축산용수 등 추가
 - 유지관리조직 구성가능성 및 대표자 선정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제출

(2) 사업시행순서

- 사업지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 지하수조사 → 지하수개발(우물) →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 수원공시설(수중모터펌프, 전기시설, 압상관) → 이용시설 → 송수관(수조 및 배수관시설) → 사업준공 → 간이상수도 등록 → 시설유지관리

(3) 사업시행 체계도



- ①사업후보지 선정 ②예산내시 및 실시요령 시달 ③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설명
 ④사업지구 선정 보고 ⑤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의뢰 ⑥조사성과품 제출 ⑦공사시행
 ⑧공사감독 위탁 및 승인 ⑨암반관정 준공확인 검사 ⑩사업준공 및 정산 ⑪사업 준공보고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사업지구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계획수립 또는 수립예정지는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제외 (상수도 부서와 협의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확인을 받음)
- 댐 수몰 예정지 또는 공해로 마을이전을 해야 하는 지역은 제외
- 우물, 샘 등 자연수 이용마을이라도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오염이 안 된 지역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 시 호응도가 높아 농가부담 내부배관시설을 설치하고,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전기료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장기적으로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의 변화가 적은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변개발지역을 검토하여 지하수부존 및 수질이 적합한 지역 선정
(섬, 해안, 간척지, 특수지질지역은 염분함유, 수량부족에 유의)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중)

- 시·도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추진계획 지구(농촌진흥과-483 : '04.3.3)
-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중 수질이 나, 수량이 부족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 수혜가구 및 급수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 제한급수지역등 상습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고 개발후 시설을 활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농촌정주기반확충, 농촌관광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마을

(3) 사업지구 확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의 지구선정이 기준(상수도계획과 중복여부 및 개발후 이용저조 예측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인구에 따라 시설규모가 적정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확정
- 시설 완공 후 이용이 저조하거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지원 사업량 축소방안 강구 (역 인센티브제)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마을회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을 첨부함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립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감안 지하수조사 및 개발(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원공시설 및 이용시설로 공종을 구분 수립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 공사 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3) 시행계획 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시행하고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부에 제출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함
- 농작물보상 등은 용지매수 및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함.

(5) 조사·설계 및 시공

(가) 지하수조사·개발

- 지하수조사는 일반적으로 답사 → 물리탐사 → 착정위치선정 → 시추(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 양수시험 및 간이수질검사 → 검증 (필요시) 순으로 하고 시추 결과, 성공공인 경우 확공하고 실패공일 경우 폐공처리함.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후, 실패시는 1공을 추가시추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조사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원격탐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계 조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국지적인 조사보다 광역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되도록 지하수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 등)에 과업을 지시하여 지하수개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조사분야중 시추조사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개발로 영향권내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하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 암반관정에서의 케이싱과 오염방지그라우팅 시공

-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케이싱 관입 깊이는 견고한 암반층까지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층 이하 0.5m 이상의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
- 그라우팅은 지표의 오염수 유입방지를 위해 미고결층과 암반 접촉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함
- 그라우팅을 한 후 주입재가 소요의 강도로 굳을때 까지 암반층에 충격을 주는 보링작업을 48시간 이내에는 하지 아니함.

- 그라우팅시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의 확인서 작성·비치
- 지하수(수자원)의 개발은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표로 하고 생활용수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350ℓ(특별한 경우 250~400ℓ)로 하며 농업용수는 지하수부존량과 가뭄피해 농지를 고려하여 정

- 하고 필요시 축산용수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도 공급 가능
- 지하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수층이 발달한 곳에 관정을 시설하며, 일반적으로 **적정양수량은 1일 100톤 이상**, 관정(우물자재)직경은 20cm로 함. 이 때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단계양수시험 (3~4 단계)은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 일반적인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양수량 확보심도까지 굴착하고,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시·도지사가 조정함
 - 마을규모(상주인구)가 적고 농업용수 수요가 적으나, 용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아 지하수 부존량이 적어서 지하수개발가능량이 1일 100톤 이하인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일 350ℓ의 생활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으면, 폐공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 이 때 지하수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 예방을 위하여 계획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량의 50%(안전율 2.0배)로 낮추고, 양수량이 적으면 관정직경을 축소하여 15cm로 할 수 있음.
 - 다만, 해수침입 영향을 받는 도서 및 유역이 작은 반도나 해안지역과 상습 제한급수지역 등은 공급기준을 1인당 1일 250ℓ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00톤 이하)에서 시추공의 성공여부 판단은 적어도 그 지역의 선구조도, 3지점의 물리탐사 (쌍극자 및 수직탐사) 자료와 당해 시추공 자료 (필요시 과거 시추실패공 자료 포함)를 시공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도·시군 담당공무원, 농업기반공사 환경지질부장 등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할 수 있음.
 - 우물의 확공은 안정수위 이하 심도까지 적절하게 계획·시공하며, 확공 후에는 공내청소(에어써징)를 하고 우물자재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며 이 때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수질검사용 원수채취를 확인한다.
 - 우물을 완공한후 지하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도법 관련규정 및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전항목검사를 실시함.
 -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추진
 - 시장·군수는 수원공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계획에 계상하여 수원공 개발과 별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공내TV검층, 양수시험, 수질검사, 규격자재 사용여부 판단 보고서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각종 시설 및 자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사업비산정기준(수리 51322-478, '94. 10. 12)을 참고하고 동일공종의 공인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나) 수원공시설

- 관정 및 이용시설계획은 마을규모등에 의한 계획수량에 따라 적정규모의 수중모타펌프, 송수관, 수조, 배수관 별로 각각 산정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비 51370-246('95. 7. 21)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설계요령”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정함.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용량은 필요한 용수공급측면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여력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식수부족은 심각하고, 유지관리비(전기료 등) 부담이 어려운 영세한 마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중모타펌프 및 전기시설을 생활용수 부분만 우선 계획하여 전력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 농업용수분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 전선 및 수전반 판넬을 계획할 수 있음
(극심한 가뭄시 수전반 내의 마그네트와 브레이크 등 일부 부품교체로 용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
<참고 : 수중모터펌프 규격 예시>

가 구 수(호)	30~50	51~100	101~150	비고
펌프규격(HP)	3~7.5	5~7.5	7~10	

(다) 이용시설

- 송수관은 생활용수공급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축산용수, 농산물세척가공용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송수관이 긴 경우 관마찰손실수두가 증가하므로 적정유속으로 관경을 계획하여 모타펌프의 동력이 과대하게 되지않도록 함(모타펌프 기종과 연계하여 계산).

- 케이싱 덮개 설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식 공법으로 설계
- 수조(물탱크)의 용량은 생활용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수조의 재질은 위생, 내구연한, 수온(저온)유지 등을 감안하고, 수질유지를 위하여 저류시간 단축 및 공기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종래의 콘크리트 수조, FRP 수조의 선택은 신중을 기함.
- 수조(물탱크) 용량은 관정의 고장시 인구 1인당 식수 80~100ℓ 정도를 공급할 수 있고 또한 Peak 시간대의 수급 조절용(1일 사용량의 20~30%)으로 사용하며, 수조의 용량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되 마을상주 인구에 비하여 과대크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고장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섬지역 등은 예비펌프를 확보하고 수조는 다소 크게 할 수 있음

<참고 : 수조 용량 예시>

가 구 수(호)	30~39	40~59	60~79	80~99	100~120호
인 구(명)	90~121	122~183	184~245	246~307	308~372
수조용량(m ³)	10	15	20	25	30

- 수조(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한 곳에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수조(물탱크)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토록 하고 (필요시 울타리시설)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는 시건장치를 하여 안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 재난시 비상급수 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시설 규격의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수량부족 또는 수질불량으로 발생한 폐공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시 발생한 폐공처리 (부록1 참조)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시장·군수는 수원공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시설 설치전에 지하수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나 먹는물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공내 TV검층, 장기양수시험, 수질검사 등 준공전에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준공전 확인검사는 당해 수원공 개발자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사자에 대하여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하수법에 의한 조치(법제25조 및 제29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 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를 시·도지사에게 건의
 - 지하수 영향조사 및 개발공사 입찰 제한
 - 허위 또는 부실한 확인검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실검사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지진 등 천재지변, 발파 또는 주변 굴착 등 인위적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수질수량의 변화
 -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공사완료 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시설완공후 생활용수 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전항목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재확인함.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발생 및 처리사항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사. 사업비 지원

- 지구당 평균지원단가 170백만원

- 국고보조(농특세) 80%, 지방비 20%
- 시·도지사는 마을규모, 관정심도, 송수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집행할 수 있음.
-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설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시설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적합한 공무원 (시·군 수도과 등)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생활용수유지관리조직(계) 대표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전 협의를 하지않아 간이상수도 등록이 어려운 시설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절차를 받아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

(2)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함.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로 등록하고 시·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개 보수비 등)를 징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액을 적립(지역주민자치로 운영)토록 지도함.
- 또한 시장·군수는 유지관리조직(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검사나 고장 수리 서비스지원 등으로 정상 운영시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이 용상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
-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유지관리조직(계)은 관정개발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영향구역 내 잠재오염원 (축산폐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함.
- 수질검사 :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2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거 시행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검사, 전항목 검사(년 1회)를 시행 (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관정시에는 사용을 중지토록하고 대체시설 개발 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시설물 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수조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 7호 서식)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철저
- 유지관리 실태확인
시장·군수는 수시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반기별(6월말, 12월말기준) 이용실태 (이용하지 않거나 저조한 시설은 지구명, 위치, 미사용 또는 저조한 이유 및 대책) 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3) 이용이 저조한 시설 또는 수질·수량 변화시설 등에 대한 대책

- 전기료 등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전력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시·군지원으로 소형모타펌프로 대체(기 설치된 모타펌프는 가뭄대비 보관, 타지구로 활용 전매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여건변화로 상수도가 개발되었거나 관정만 시설을 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지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수원을 개발 함.

나. 사업의 평가

- 농림부장관은 효율적인 지구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당국과 협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함
- 평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구선정시 농촌농업생활용수 중장기계획에 따라 선정되었는 여부
 - 사업시행인가 전 상수도 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여부
 - 광역 및 지방상수도계획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 사업준공후 적정한 수질검사 및 간이상수도 등록 여부
 -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구성 및 각종 대장 비치 활용 여부
 - 지하수이용시설 관리실태 (관정 및 송배수관, 정수시설 등의 관리)

다. 보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10월말까지
-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지구선정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공정계획 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매분기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기타

- 시장·군수는 농림업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평가내용과 항목을 준수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함.
- 선개발시설 이용 : 가뭄 등 긴급한 사유로 공사중에 지하수를 우선 식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이용함.
-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6. 2007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 간이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신청서 (별지8호 서식)
- 위치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부 록 1>

암반관정 폐공처리 유의사항

1. 관정개발 관련 법령 및 지침서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법 제82조, 영 13조, 시행규칙 82조)
- 지하수 영향조사 (법 제7조, 영 제9조 및 제12조)
- 허가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
- 원상복구 (법 제15조, 영 제24조)
- 준공신고 (법 제9조)

□ 지하수관련 지침서

-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 ('99. 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2003. 8 건설교통부 발간)
- 방치된폐공관리지침 ('99. 12 환경부 예규 제195호)

2. 폐공발생 예측 및 사전대비

- 착정위치는 지적도(1/1200 등)에 정확히 표시
- 폐공처리비 확보는 지구당 1개소를 우선 설계에 계상하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최종정산시 시도에서 일괄 가감정산처리 방안을 검토
- 시·군에서 지하수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 감독등을 직접시행할 경우는 착정의 주요공정인 케이싱 외부 밀크액 주입상태(그라우팅) 검사 및 폐공처리시 모래의 충전과 밀크액 주입상태 검사(표면처리공사 직전)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일부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
 - ※ 시군에서 전문기술 또는 인력 부족시 시·도는 농업기반공사(지사)가 지하수오염방지의 공익에 기여토록 실비로 주요공정만 감리를 협조 요청
- 폐공처리 작업시기는 착정장비 이동직전에 실시, 불확정공(수량 일부부

족 및 수질관련)은 성공공에 대한 우물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하고 폐공 처리 전경과 근접사진을 필히 촬영하여 보관

- 지하수전문기관에 공사감리를 위탁하지 않은 지구는 시공업체가 착정 장비를 현장투입한 때부터 철수시까지는 작업일지(착정위치, 공정, 착정심도, 실패공 되메움등 기재)를 매주 1회 이상 시·군에 제출토록 함
- 사업지구별로 사업관리자(군1인, 면1인)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가능한 착정장비 투입시부터 각자 주1회 이상 현지를 출장하여 시추위치 및 변경위치를 확인하고, 폐공처리 마무리는 표토를 되메움하기 전에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요청

3. 폐공처리방법

- 폐공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99.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page44~49와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2003. 8 건설교통부 발간) page279~310를 적용
- 케이싱은 가능한 인양하여 제거하되, 인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하 1m이상을 절단하며, 되메움 방법은 공의 구조, 지층의 성질, 재료 및 장비의 확보조건, 주변 우물에의 영향, 주변오염원까지의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함.
- 폐공 전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및 표면처리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적합하게 되메움을 실시
- 폐공처리 작업기간은 케이싱 제거, 모래충진, 밀크액(시멘트1:물1) 주입 등에 2일 이상 실시하며, 공내 되메움은 공동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주입재(모래등)를 2~3회에 나누어 충진하고, 24시간 경과 후 다짐상태 및 공동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표면처리공사를 시공
- 주입재가 분리현상이 심하거나 균열된 틈새로 침투가 어려우며, 빈틈메우기에 체적 팽창이 필요한 경우 벤토나이트를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고, 시멘트중량의 2%(부피의 3%)를 일반적으로 사용

4. 방치된 폐공의 처리

□ 폐공유무의 확인

- 개발을 신고한 지점과 준공처리 지점의 상이 여부를 우선 확인

- 폐공처리비가 당초(계획보완을 포함) 설계서에 계상여부를 확인
 - 지하수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않고, 민간업체 시공분은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폐공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지구는 주민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주민에게 탐문 확인)
- ⇒ 시·군은 미처리폐공을 발견한 즉시 규정대로 폐공처리 조치

□ 폐공처리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및 조치

- 폐공처리의 부적정 유형에는 모래·시멘트 주입은 했으나 상부매움 콘크리트 두께부족 및 타설불량, 모래·시멘트주입량이 부족하거나 처리깊이 부족, 모래·시멘트 주입없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시공상태에 대하여 주민 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 폐공처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확인하고 작업일지 등에서 폐공처리 작업기간(2일이상 여부)과 폐공처리 사진을 검토하여 전경과 근접사진 2매 유무 및 내용을 확인
 - 준공정산서에서 폐공처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법(투입재료 및 양)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 미흡한 곳은 포크레인등으로 굴착 확인하고 제대로 폐공처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

(○○시·군 ○○면 ○○지구)

1. 마을 작성용

- 마을위치 : 도 시군 면 리(○○마을)
- 마을규모 : 호 명
- 현재 이용시설현황
 - 간이상수도 개(인), 우물 개, 샘 개, 소형관정 개
 - 수질상태 : 양호 , 수질기준미달
- 마을회의 (일시 : 장소:)
 - 참석 : 대상 호, 참석 호(%)
 - 회의결과
 - 희망가구 : 호, 인 (마을인구대비 %)
 - 농업용수 : 논 ha, 밭 ha, 기타 :
 - 자체 유지관리조직(계) (대표 :)
 - 전기료 등 부담 가능여부: 호(인)

※ 월사용료 : 시군에서 이용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고. 추정금액을 해당마을 실정에 맞추어 사전 설명.

2. 시·군 작성용

-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 5000개소 대상지에 포함 여부(정비51370-10150호(2000.9.29))
 - 상수도 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인지 여부
 - 수혜인구수가 충분한지 (사업타당성)
 - 완공후 시설이용 가능성(전기료 부담 등)
- 시설규모 계획
 - 생활용수 : 톤/일 (호, 인)
 - 농업용수 : 톤/일 (논 ha, 밭 ha, 기타)
 - 시설규모 : 수중모터펌프 HP
 - 송수관 구경 mm, 길이 m
 - 수조용량 m³ (재질)
 - 추정사업비 : 총 백만원(수원공: , 이용시설:)

※ 상수도부서의 상수도계획 중복여부 확인서 공한사본 첨부

자체가26-5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개발공수	급 수 대 상						사 업 비 (백만원)				선 정 기 준		수 맥 조 사		비 고					
		군	면	리		총이용량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공업등	계	국 고	지방교부금	기 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 시	미 실 시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 작	전 작											국 고	지 방 교 부 금	기 타
계					공	m ³ / 일	m ³ / 일	호	명	m ³ / 일	ha	ha	m ³ / 일												

- ※ 1. 생활용수는 250ℓ -300ℓ/인/일 기준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3. 선정기준, 수맥조사는 해당란에 ○표
 4. 비교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 것)

자체가26-5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공년월일 :

(단위 : 천원)

	승인액		○년도 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기별 공정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 수 원 공	공													
○ 이 용 시 설														
- 양수장	m ²													
- 물탱크	m ³													
- 송수관	m													
- 기 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 리 비														
○ 기 타														

심사제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진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지	송배수관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m ³	m								

[별지 제5호 서식]

지하수개발 시설물 관리대장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지번: 관리자: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명)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착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m ³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m ³				
- 양 수 장 : 평				
- 송 · 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중)모타펌프				
- 구경 ()m/m, 설치심도 ()m				
- 마력 ()HP				
- 제품명 :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m	m			

○ 오염방지시설 조치현황

구 분	규 격
상부보호공	높이 : cm, 가로 : cm, 세로 : cm
	지표면에서 보호공까지의 거리 : cm
케 이 싱	구경 : cm, 심도 : m
그라우팅처리	처리심도 : m, 처리두께 : cm
기 타	우물자재 및 관정내 소독여부 (○, ×)
	유량계 설치 (○, ×)
	출수장치 설치 (○, ×)
	지하수위 측정관 (○, ×)
	상부보호공 반경 1m내 경사도 : 도

○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일자	검사의뢰기관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결과 조치사항

- 주) 1. 검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작성
 2. 조치사항란은 불합격시 조치사항을 기재

○ 이용현황 및 수위측정현황

이 용 현 황			수 위 측 정 결 과		
년·월·일	이용량(톤)	기록자	측정일자	수위(EL.m)	측정자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1-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 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재지	1일 평균 이용자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치내용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안내판

시 설 명	○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관리번호				개발년도			
위 치	시·군 면 리 번지						
관정구경	m/m	심 도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모타설치심도	m	동 력	HP		양수량	m ³ /일	
관 리 자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 (TEL)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 (TEL)						
수질검사 실시현황	일 자	의 퇴 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관	검 사 결 과		
<p><u>협 조 사 항</u></p> <p>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입니다.</p> <p>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와 관계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염행위 및 시설 이상을 발견시에는 ○ ○ 시·군 ○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군 수 (시장)</p>							

- 규 격 : 가로 40cm, 세로3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양수장 출입문 좌측 상단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안내판

알 림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 급수 시설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와 관리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 관리번호 :

○ 위치 : ○ ○ 시·군 ○ ○ 면 ○ ○ 리

○ 시설용량 : 톤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시행자 : ○ ○ 시장·군수

○ 관리자 :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TEL)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TEL)

※ 오염행위 및 시설이상을 발견시에는 ○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100cm , 세로80cm
- 재질 및 두께 : 스테인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배수장 울타리 출입문 옆 지상 1.2m

[별지 제9호 서식]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

지구명 :

시설점검기관 :

위치 : _____도 _____군 _____면 _____리 _____번지 시공업체 : _____
--

1. 수원공시설 현황

○ 관정위치 : 위도 _____° _____' _____", 경도 _____° _____' _____", 표고 _____m
○ 관정현황 : 관정구경 _____mm, 굴착심도 _____m, 케이싱 구경 및 설치심도 _____mm, _____m 우물자재 구경 및 설치심도 _____mm, _____m

2. 점검결과

TV검층	○ 우물자재 : 설치심도 _____m 설치상태 _____								
	○ 공내청결상태 _____ ○ 확인굴착심도 _____m								
	조치사항								
양수시험	○ 자연수위 _____m _____cm, 안정수위 _____m _____cm ○ 양수량 : _____m ³ /day								
	조치사항								
수질검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시료채취일자</td> <td style="width: 25%;">입회자</td> <td style="width: 25%;">수질검사기관</td> <td style="width: 25%;">검사결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____.____.____.</td> <td></td> <td></td> <td></td> </tr> </table>	시료채취일자	입회자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20____.____.____.			
	시료채취일자	입회자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					
	20____.____.____.								
조치사항									

3. 종합결과보고

--

※첨부자료 : 지구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군수 귀하

수원공시설 점검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항목

1. 수원공시설 점검방법

가. 공내 TV검층

- 우물자재 및 스트레나의 설치심도 및 배열상태 적정여부 확인
- 공내 청결상태 및 이물질 존재여부 확인, 굴착심도 확인

나.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 48시간 장기양수시험을 통해 일일적정양수량의 타당여부 확인
- 양수시험시 간이수질(수온, pH, EC 등) 측정으로 다른 대수층의 혼입여부 확인
- 자연수위, 안정수위 및 수리상수값 산출
- 적정양수량 양수시 Modelling에 의한 영향범위 산출

다.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2. 수원공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항목

가. 개요(위치 및 점검방법 등)

나. 수원공 현황

다. 공내 TV검층

라. 양수시험

마. 수질검사

바. 종합결과

- 첨부자료 -
 - 정호주상도
 - 공내 TV검층 영상자료
 - 양수시험 및 수위회복시험일보
 - 수질검사 성적서
 - 공정별 작업사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과장 서재연, 행정사무관 김중현)입니다

1. 목 적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농공단지 지정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부지조성비 지원확대, 계열화 및 전문단지육성, 세제, 금융 등 지원
- 중장기목표 : 2014년까지 400개소 조성

3.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예산안)	2007이후	
사업량(개소)	63	30(8)	32(9)	28(8)	(78)	
사업비	계	436,804	31,391	55,414	55,808	244,348
	국비보조	121,770	25,084	42,046	25,995	44,378
	국비융자	96,884	5,134	5,180	-	49,038
	지방비	218,150	1,173	8,188	29,813	150,932

※ ()내서는 완료지구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 (2)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공영개발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3)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 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시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12)
충 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 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9)	태안군, 청양군(2)
전 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 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 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	북제주군(1)	남제주군(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 ※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여수, 여천,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 ※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 공주, 보령, 서산, 아산, 남원, 정읍, 김제, 나주, 영천,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밀양, 통영, 사천시

(4) 지정제외지역

- 경기도, 광역시,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5)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이내(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0천㎡이내)
- 일반농어촌, 추가 및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수요의 증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330천㎡ 범위내에서 확대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30~330천㎡이내

(6)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 군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단지조성비 지원제한
 - 시·군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 산정시 단지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면적과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을 미분양면적으로 본다.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 분양대상면적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 때

나. 2006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보 조
		소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28	55,808	25,995	25,995	-	29,81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립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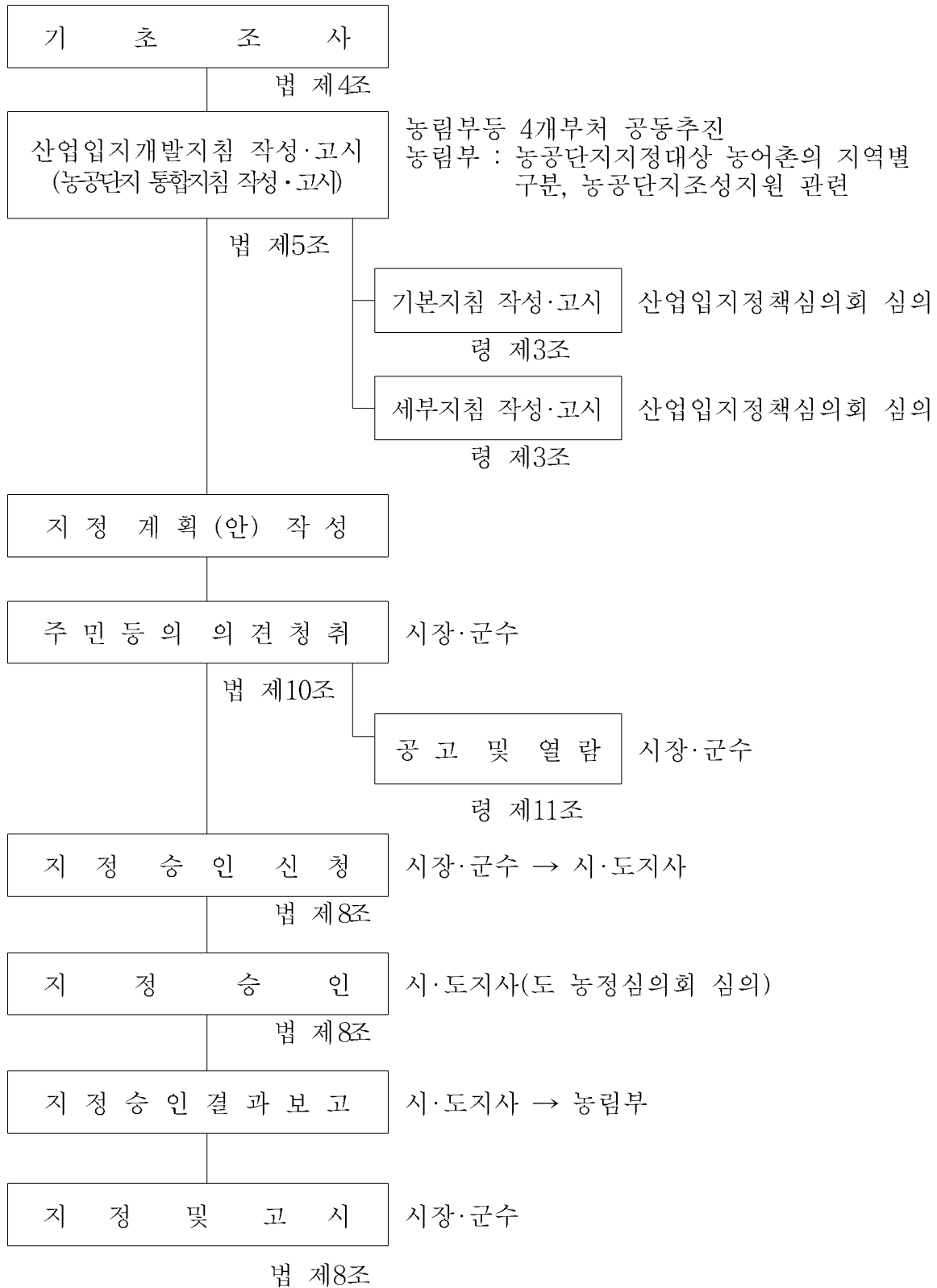
- 중 앙
 - 농 립 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02-500-2084~5)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담당관(02-2110-5093)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02-2110-8149-50)
 - 환 경 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02-2110-6846-9)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기업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425)
- 시·도 : 경제통상(산업)국 산업입지과(부산), 경제정책과(대구·울산), 산업진흥과(광주), 산업정책과(경기), 기업지원과(강원·충남·전북·경남), 첨단산업과(충북), 과학산업과(전남), 기업노동과(경북), 경제통상과(제주)
- 시·군 : 지역경제(공단조성)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기타사항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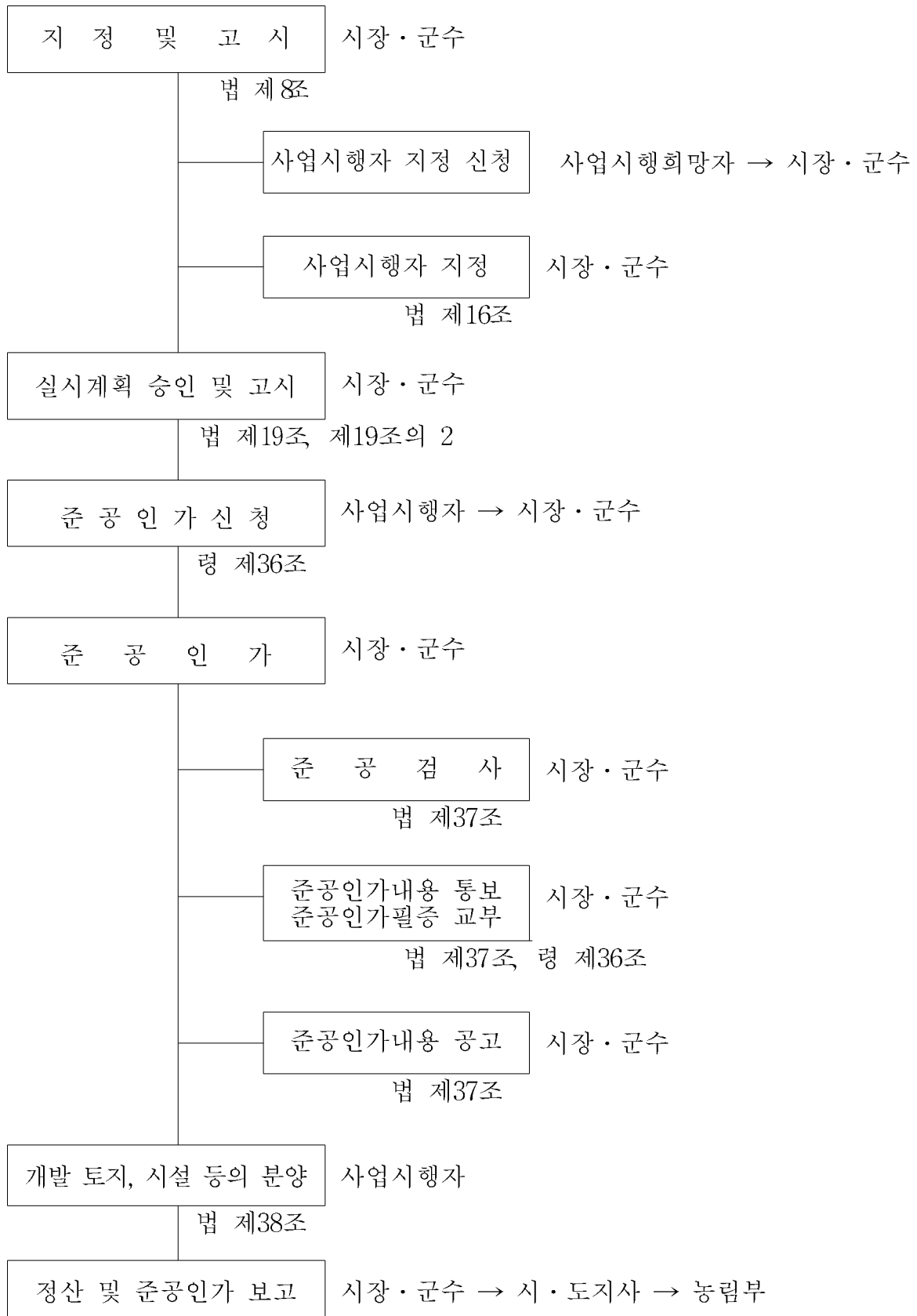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절차

< 지정절차 >



※ 법 또는 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 개발절차 >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사업대상지구 검토

-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지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나) 농공단지 입지제외 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지역)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다)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1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의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단지중심 5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1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업·농촌발전계획,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농공단지 선정시에는 지역적특성을 살려 업종별, 형태별,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주예정업체가 선호하는 적정 지역 일 것.

(2) 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5조(조사설계 및 시공 감리)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 관한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농림부장관이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세부설계실시 및 실시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후에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 관한통합지침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2)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실시계획변경

- 현지역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하되, 보조금이 10%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5)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함)가 담당하며,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지정면적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함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 지원

<부지조성비 지원>

-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도별		세부공종내용	
부지	용지취득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지시공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조성	부대시설	진입도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통신,용수,기타시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등
		기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분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전문단지등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어촌
· 국비보조	15	50	70	30	70
· 국비융자	10	20	20	10	20
· 지방비보조	5	10	10	10	10
합계	30	80	100	50	100

-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 3) 잔여소요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함
 - 4) 국비융자조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년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단, '98.1.1부터 시행)
 - 5)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 ※ 단지조성비 지원기준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개정 고시일 이후 지정승인된 지구부터 적용

(2) 자금의 운용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월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비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4) 사업의 평가

- 시·도지사는 대상사업 지정승인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사업시행 중 지나친 계획변경이나 임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 환경관리 : 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계, 관련업종유치,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근거 :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 4개부처 공동고시)
 -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농공단지 지정보고
 -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별지 3호서식)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별지 4호서식)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영개발인 경우

- 시장·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인 경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 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함
-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다.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공장분포, 취업 가능인력등 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서
 - 입지여건, 시·군내 농공단지 미분양면적·휴폐업율, 입주예정업체 수요조사서, 기본계획서등 포함)

[별지 1호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공 단지명	지정 승인일	실시 계획 승인일	부지 조성			예산재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	준공 예정일	보조	용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정액		(당해) 년 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 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별지 2호서식]

충공통-9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산현액				집행액										
							합계				실집행액						
농공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이월액					잔액 (불용액)				
					국비		지방비		국비
합계	보조		융자		합계	보조		융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용사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보조금제27조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

□ 연간계획

사업지구	사업기간	착수년도	완공년도	2006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보조	자담
					소계	보조	융자		
합계									
○○군○○									
○○군○○									
○○군○○									

□ 0/0분기까지 계획 및 실적

○ 사업추진실적

사업지구	0/0분기까지계획(A)	0/0분기까지 실적(B)	진도(B/A)
○○군○○ (신규)	공사발주(100%) 정지토공(30%)	공사발주(80%) 정지토공(20%)	80
○○군○○ (계속)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100
○○군○○ (신규)	관계기관협의를(100%) 농공단지승인(100%)	관계기관협의를(50%) 농공단지승인(0%)	40%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

사업지구	0/0분기까지 계획(백만원)			0/0분기까지 실적(백만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군○○						
○○군○○						
○○군○○						

※ 사업비(국비) 집행실적은 집행기관(시·군)집행실적 기준

□ 추진실적

○ 0/0분기동안 추진실적(건설공정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 구 분	지정면 적(평)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평)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맞기한	비 고
	착공일	준공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과장 심영만, 기술서기관 류주열)입니다.

1. 목 적

-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 및 우량 종자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우량 건전묘 생산 및 양묘산업의 생산성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세화된 양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우량한 산림용 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한 국가관리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산림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 이후	
○ 사업량						
- 간이온실(동)	30	17	9	9	15	
- 관 정(공)	40	22	10	10	-	
- 토양개량(ha)	99	98	62	51	31	
- 종자저장시설(동)		1	1	-	6	
사	계	2,610	2,017	1,218	763	3,147
업	보 조	1,347	1,060	629	390	1,483
비	지방비	783	685	445	229	1,424
	자부담	480	272	144	144	240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노임이 상승하여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양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묘목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산림용 우량종자 보급에 의한 건전묘를 생산·공급하고, 종자국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 지원이 필요

(2) 지원대상

- 보조사업 : 정부계획 조림용 지정 민간묘목생산자(간이온실, 관정, 토양개량)

(3) 지원조건

- 간이온실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 : 국고 70%, 지방비 30%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763	390	390		227	144
· 간이온실	9동	360	108	108		108	144
· 관 정	10공	162	114	114		48	
· 토양개량	50.6ha	241	168	168		71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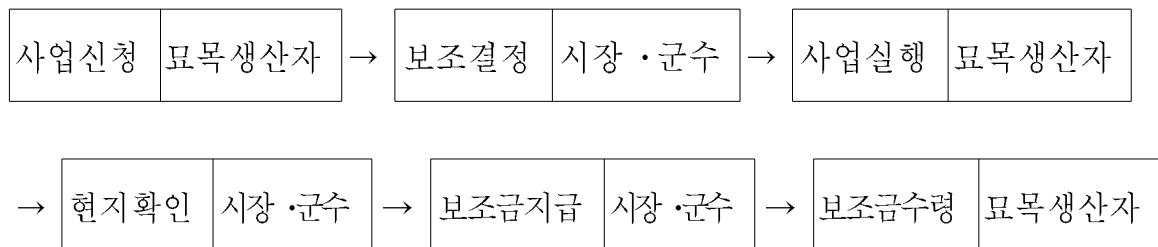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042-481-4189)
- 시·도 : 산림부서
- 시·군·구 : 산림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계획서 검토 및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여부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라. 사업비 지원방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주 체 : 시·군·구

(2) 사후관리 방법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시·군·구)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추진되고 있는 지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유지
 -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 2006 ~ 2010(5년간)
 - ※ 처분제한기준(5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적용

나. 보고 등 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회계년도 종료시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자격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 한 자 중 시·도지사로부터 정부조림용 묘목 대행 생산자로 지정 받은 민간 양묘업자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보조사업 희망자가 묘목생산지(양묘장)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정부조립용 묘목대행생산자 중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묘목생산업자(민간인)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묘목생산기반조성(간이온실, 관정, 묘포지토양개량)

2. 현 황

사 업 현 황	묘 목 생산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 소	거주지					
		사업지					
	면 적	총면적	m ²	자가포지	m ²	임차포지	m ²
묘목생산량 (지정기준)	성묘	천본		유묘	천본		
장비 보유 및 시설현황							

3.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동, 공, ha)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과장 류광수, 행정사무관 진현무)입니다.

1. 목 적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산림·산촌을 통합하는 개발방식 유도
- 소득원개발, 정주환경개선, 전통문화계승,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 산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촌진흥 도모
- 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의 추진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를 통한 정체성 있는 개발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04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03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업 량		(93)	45 (15)	45 (10)	53 (20)	49 (15)
사 업 비	계	136,238	16,225	20,364	25,629	24,612
	보 조	87,984	11,634	14,539	18,279	17,178
	용 자	14,349	-	-	-	-
	지방비	33,905	4,591	5,825	7,350	7,434
	자부담	-	-	-	-	-

※ ()는 완료마을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촌 구현
- 산촌과 산촌주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하는 산림·산지·산촌의 종합개발의 추진

(2) 자금지원대상자 : 당해년도 개발대상 산촌마을

(3) 지원단가 및 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00백만원(사업기간 2년)
 - 보 조 : 1,400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전설계 : 마을당 63백만원(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4)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배분기준
계			100%
보조금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반조성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농어촌도로 등 ○ 문화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주민공동휴식시설 등 ○ 환경정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배수로) 정비 등 ○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토목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절개지 복구, 사방, 제방 등 재해 방지시설, 등 	40%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배분기준
	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 산림산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 산촌체험 및 녹색관광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촌체험숙박시설, 산림욕장, 임업및산촌체험시설 등산로 등 산촌관광기반 조성 	60%

※ 비고 : 국고 보조금 배분기준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2006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마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53	25,629	18,279	18,279	-	7,350	-
마을조성	35	24,500	17,150	17,150	-	7,350	-
사전설계	18	1,129	1,129	1,129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042-481-4193~4)
- 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대상자

- 산촌개발 예정 마을

라. 사업시행

(1) 담당공무원 및 마을주민의 사업추진능력 구축

- 산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결성과 법인등록, 시설물 부지확보 등 사업 기반구축
- 마을지도자의 리더쉽 및 운영역량강화
- 주민들과 담당공무원을 각종 지역개발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산촌개발사업 경영마인드를 함양

(2) 개발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거나 대학의 연구소, 농산어촌 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계약하여 수립하게 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 사업대상지의 산림 및 휴양, 문화, 역사, 경제활동 자원(특산물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을 철저 조사
 - 사업대상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명확한 개발목표와 중점투자방향 설정
 - 중장기 개발계획 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를 검토
 - 타부처 및 우리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 계획 검토
 - 공동판매,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시에는 생산량 및 판로확보 등 시장규모와 시설의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서(안) 확정 전 마을주민대표, 설계업체, 산촌관련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심사평가회를 개최하여 개발방향, 계획사업 및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여부와 특히,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확정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후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개발계획 승인 후 산림청장에게 보고
 - 도지사는 연관사업의 지원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승인

(3) 개발계획의 내용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 대상지 산촌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방향
- 사업의 효과
- 부분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사업수지 분석)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기타 사업대상지 지역자원 현황 및 주민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

(4) 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개발계획은 도·농어촌 발전계획,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및 다른 부문의 개발계획과 조화되게 수립
- 법적 제약 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과 활용가능성이 적은 불필요한 시설물 도입 또는 투자가 과도한 대형사업에 편중, 단편 사업을 지양
- 지역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다 개발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급적 자연친화형 개발방식을 도입
-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 이용 시설 등은 유사시설의 분포상태, 수요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 검토 후 계획 수립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 개발마을과 주변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수립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부처 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시설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자부담 확보 추진
- 마을소개 홈페이지 구축 및 녹색관광 추진 등 도시와의 교류촉진방안 반영

(5) 실시설계

- 개발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산림, 산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립
 - ※ 산촌개발마을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환경친화적이며 산촌 이미지에 맞는 경관 조성이 가능하도록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경관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여 계획 수립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부문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6) 사업시행

- 개발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타부처 개발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승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조감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산촌개발사업 조감도를 마을입구 또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산촌개발 주요사업의 건축·공작물 등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투자비용, 사업내용, 시공자, 자금지원기관 등이 포함된 사업안내표지판 설치
 - 산촌개발 총 시설물 종류별 관리번호 부여 및 부착

(7)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거나 감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8) 사업비 지원방법

- 마을단위로 정액지원을 원칙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 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사업에 투자
- 예산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이 신청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사업 등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신청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종물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사후관리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제한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가 불가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및 제35조, 시행령제15조)

- ※ 기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04호, '03.1.17)」 제17조·제18조 규정에 의함.

나. 보 고

- 사업비 정산 보고 : 2007. 1월말까지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선정기준

- 산촌진흥지역(산림청장 지정·고시)내 마을 중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주변 산촌마을의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자연부락중 집단마을
 -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
- ※ 타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가가 높아 수년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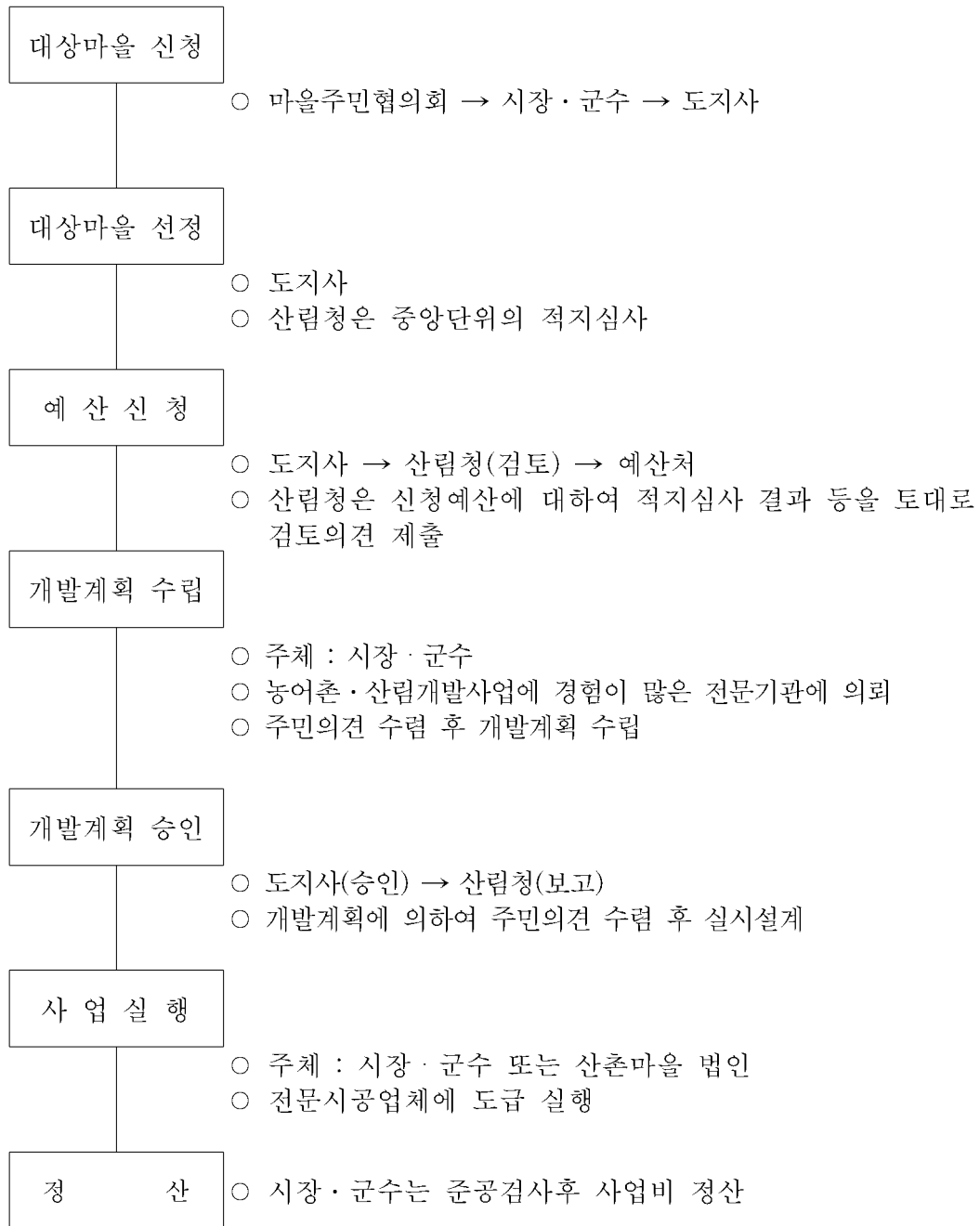
(2) 우선순위

- 뚜렷한 산림소득원(개발가능성)이 있어 임업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개발후 임업경영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
 - 자연휴양림, 협업체, 영림단 조직과 연계되는 산촌마을
 - 임산물 주산단지 또는 특산임산물이 풍부하여 이용가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산촌마을
 - 청·장년층의 수가 많은 산촌마을
- 연관사업의 투자가 용이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등
- 마을 공동시설 부지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3)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촌마을 대상지 선정 적지평가 기준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은 신청 산촌에 대하여 중앙단위의 전문가에 의한 적지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점수 이하인 산촌의 경우 기획예산처 균특예산 검토시 의견 제시

(4) 사업추진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산촌마을 대상지 선정 적지평가 기준표

- 마을명 : 시·군 읍·면 리·동 마을
 평가년월일 : 년 월 일
 평가자 :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세부항목		평가점수
			기준	점수구성	
산림의 분포 및 이용	15	3	임업용산지비율	70%이상(3),69~60(2),59~50(1)	
		6	산림자원활용가구수	80%이상(6),79~70(5),69~50(4)	
		6	협업체,영농체및영립단	구성·활동(6),구성·미활동(4),구성중(2)	
마을의 분포 및 인구현황	20	5	개발마을규모	60호이상(5), 59~40(4),39~30(3)	
		6	개발마을구성	단일마을(6),2개마을(5),3개(4)	
		3	지도자급평균연령	40이하(3), 41~50(2),51~60(1)	
		6	청장년층인구	30%이상(6),29~25(5),24~20(4),19~10(3)	
녹색관광 자원 등	25	6	관광연계성 등	마을권내(6),연접(5),경유지(4)	
		3	마을주민 정보화능력	가능(3),어느정도 가능(2)	
		6	특산품(임산물) 및 향토음식 등 보유	3종이상(6),2종(5),1종(4),개발중(3)	
		4	정주환경	좋음없음(4),좋음1개(3),좋음2개(2)	
		6	연관사업 유·무	3종이상(6),2종(5),1종(4)장기계획에반영(3)	
사업수행의 효율성	30	6	공동시설부지 확보 (임야,전,답 포함)	1ha이상확보(6),0.9~0.5확보(5),0.4~0.1확보(4), 0.1미만 확보(3), 확보추진중(2)	
		3	평균지가변동율 (시·도평균과 비교)	변동율감소(3),증0~3%(2),증3.1~8%(1)	
		6	마을기금조성	5천만원이상(6),3천~5천미만(5),1천~3천미만(4), 1천미만(3)	
		5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구성(5),구성중(2)	
		6	주민참여도	90%이상(6),89~80(5),79~70(4),69~60(3), 59~50(2)	
		4	담당공무원 수행능력	산촌교육수료(4),산촌경험자(3),교육계획중(2)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10	5	지방비 지원 계획	지방비지원계획 등(5~1),	
		5	자치단체장 관심도 등	자치단체장 관심도(5~1)	

※ 점수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점수는 반올림 및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

①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이용과(과장 배정호, 임업사무관 전덕술)입니다.

1. 목 적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만드는 체험 기회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
- 주요 건축물은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국산재를 우선 사용
- 국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장 이용프로그램 마련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 산림법 제55조2(목재의 이용증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업량	-	2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3개소)	4개소
사업비	계	2,224	5,200	5,040	28,420
	보조	1,112	2,600	2,520	14,210
	융자	-	-	-	-
	지방비 자부담	1,112	2,600	2,520	14,210
		-	-	-	-

※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은 3차년도 사업으로 '06에 신규사업 1개소, 계속사업 3개소 실시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

나. 지원대상자 : 시·도(시·군)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토지 매입 및 보상은 제외)

라.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목재제품야외전시장	4개소	5,040	2,520	2,520	-	2,52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1~2)
- 시·도(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도(시·군)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시·도(시·군)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산림청에 보고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조성관리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사업추진상황보고 :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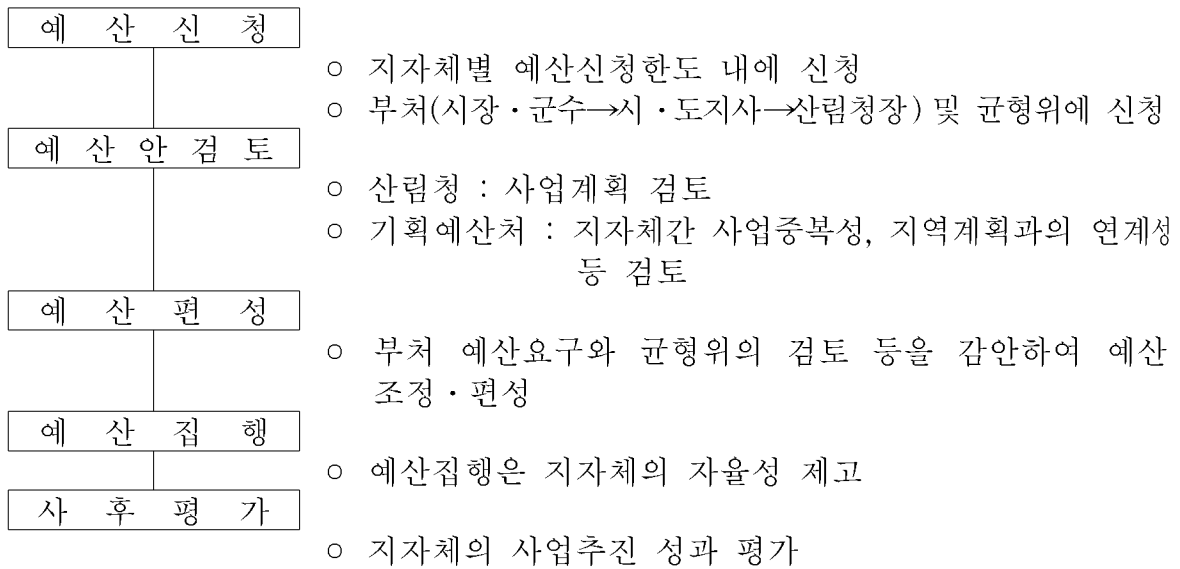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사업대상지 선정

- 접근성이 우수하여 야외전시장 조성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
- 지역 특색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다. 신청절차



라.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지 최종확정

마. 기타사항

- 목재제품야외전시장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
 - 조정사유 : 1차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실시하였으나 지자체의 기반조성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
 - 조정내역 :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기본설계비 포함)하고 기반조성 사업은 2차년도에 실시

(단위 : 백만원)

연차별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예산안 (국고기준)	사업내용	예산안 (국고기준)
계		2,556		2,598
제1차 년도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556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98
제2차 년도	건축물 시설	1,300	기반조성 및 건축물 시설	1,800
제3차 년도	야외 시설 및 전시물 설치	700	야외 시설 및 전시물 설치	700

【별지 제1호서식】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 추진상황보고

(○○○○년 ○반기말 현재)

총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사업진도(%)	
		계	국고	지방비	계획	실적

※ 설계, 기반조성, 건축물시설, 야외시설, 전시물설치 등으로 분리

세부 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포함)

사업추진상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

【별지 제2호서식】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조성대상지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사후관리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②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이용과(과장 배정호, 임업사무관 성기주)입니다.

1. 목 적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을 보완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 및 국산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목재집하장을 목재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국산목재 유통 중심지로 육성
- 국산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지원 및 국산재 이용 촉진

3.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 산림법 제55조2(목재의 이용증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 업 량		1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3개소
사 업 비	계	860	1,360	126	250	750
	보 조	344	544	50	100	300
	용 자	-	-	-	-	-
	지방비	258	408	38	75	225
	자부담	258	408	38	75	225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전국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17개소의 목재 및 목제품 생산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 보완 필요

나. 지원대상자 : 지역 산림조합(목재집하장)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라.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 자		
○ 목재집하장시설보완	1개소	250	100	100	-	75	7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임산물이용과(042-481-4204~5)
- 시·도(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지역 산림조합(목재집하장)

라. 사업시행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도(시·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시설보완 추진상황 점검
 - 시설보완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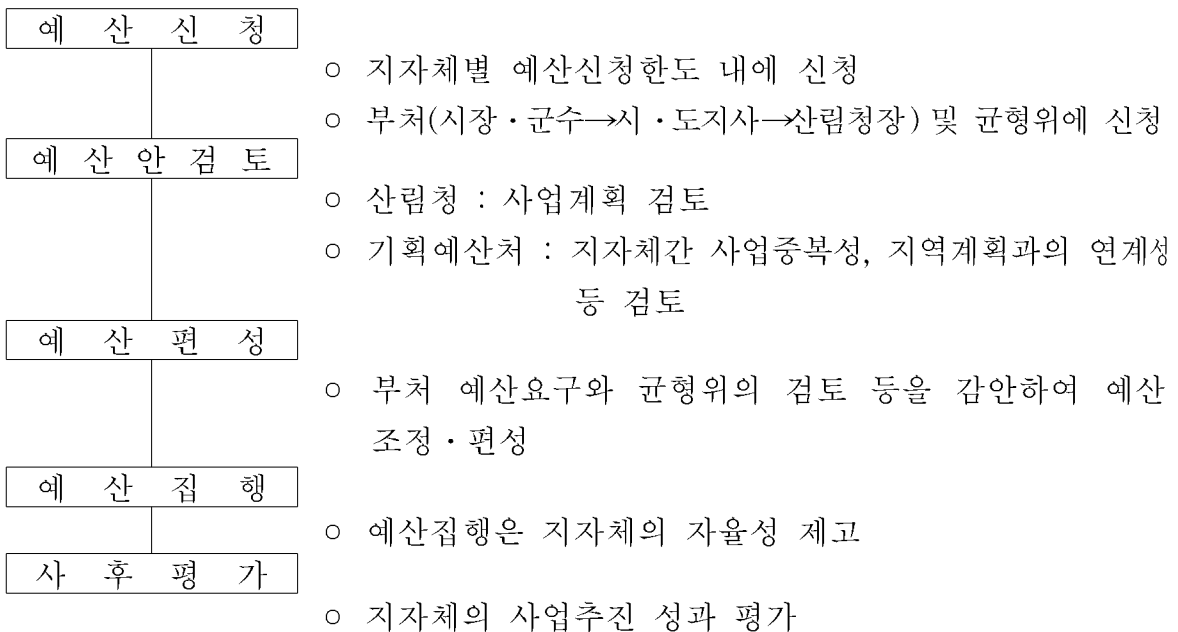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사업대상자 선정

- 목재집하장 시설을 보완하려는 산림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신청

다. 신청절차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시설보완 필요성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산림청에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자 최종확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과장 김상균, 임업사무관 최영태)입니다.

1. 목 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림 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 내에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급증할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 일반국민이 즐겨 찾는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확충
- 권역별 수요를 감안한 산림휴양권역간 균형 발전 유도
-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간 확충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1조~제33조,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 요령(산림청예규 제514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 업 량		130	15	15	13	120
사 업 비	계	133,760	18,577	22,564	31,682	226,200
	보 조	37,960	9,924	10,973	18,255	129,000
	용 자	15,556	-	420	-	2,940
	지방비	73,577	7,953	9,411	12,727	93,090
	자부담	6,667	700	880	700	1,260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함.

○ 지원대상자

- 공유림 국고보조(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 시·도, 시·군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인 자
- 사유자연휴양림 용자 :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지원단가 및 조건

- 공유자연휴양림 조성 : 개소 당 30억원을 2년간 분할 지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공유자연휴양림 보완 :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유자연휴양림 용자 : 12억원을 기준 설계금액의 70%까지 2년간 분할 지원
(10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0%)
 - 용자방법 : 사업실행 전 사업계획 공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사후에 사업실적을 확인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 자연휴양림 운영상태에 따라 조정 지원
-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조성 :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시설종류

- 자연휴양림 :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
- 산림욕장 : 주차장, 전망대, 벤취, 자연관찰원,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 등
- 숲속수련장 : 단체숙소, 강의실, 회의장, 산림을 이용한 학습·심신단련 시설 등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공유:균특, 사유 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1	31,682	18,255	18,255	-	12,727	700
· 공유자연휴양림 조성	41	30,282	17,555	17,555	-	12,727	-
· 사유자연휴양림 보조	14	1,400	700	700	-	-	700

* 용자조건 : 연리 3%, 10년 거치 후 10년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시·도,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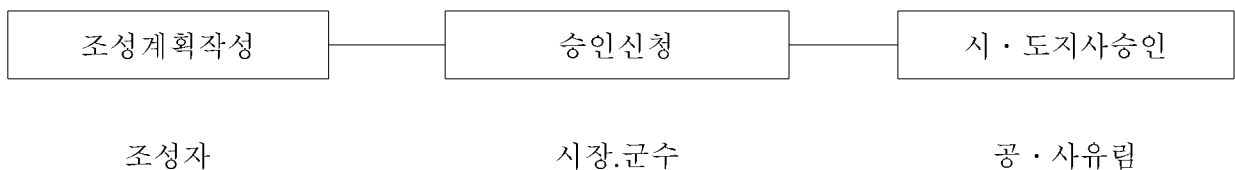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산림휴양정책과(042-481-4212)
- 시·도 : 산림관련부서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시·도, 시·군 및 개인자연휴양림 조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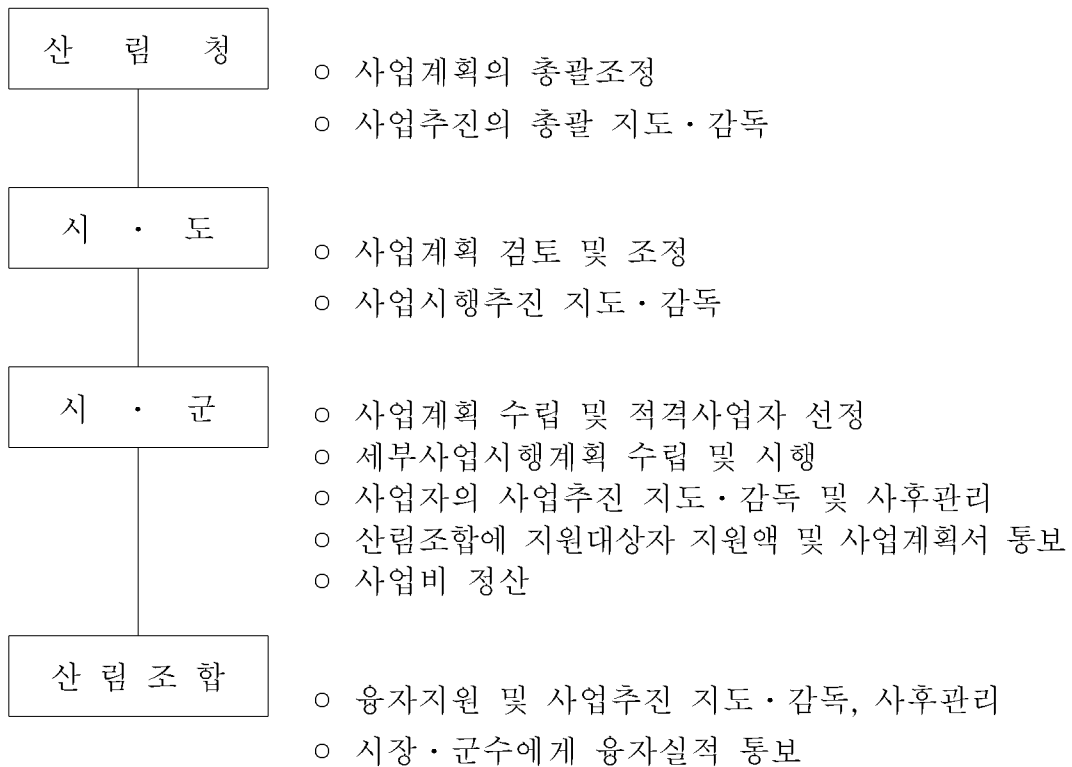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자연휴양림(용자)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보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관할 산림조합장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운영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 사유자연휴양림 용자실적보고 (시·군→시·도→산림청)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신청자격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으로서 배후도시의 휴양수요, 인근 산촌마을 소득향상, 기타 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보완사업>

-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 숙박시설 확충 위주로 실시하되 자연휴양림별 집중 시설보완 방식으로 추진

○ 사유림 자연휴양림

<용자사업>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 유무에 따라 선정 지원

<보조사업>

-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조성 운영하고 있는 사유자연휴양림 중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연휴양림 지원

○ 산림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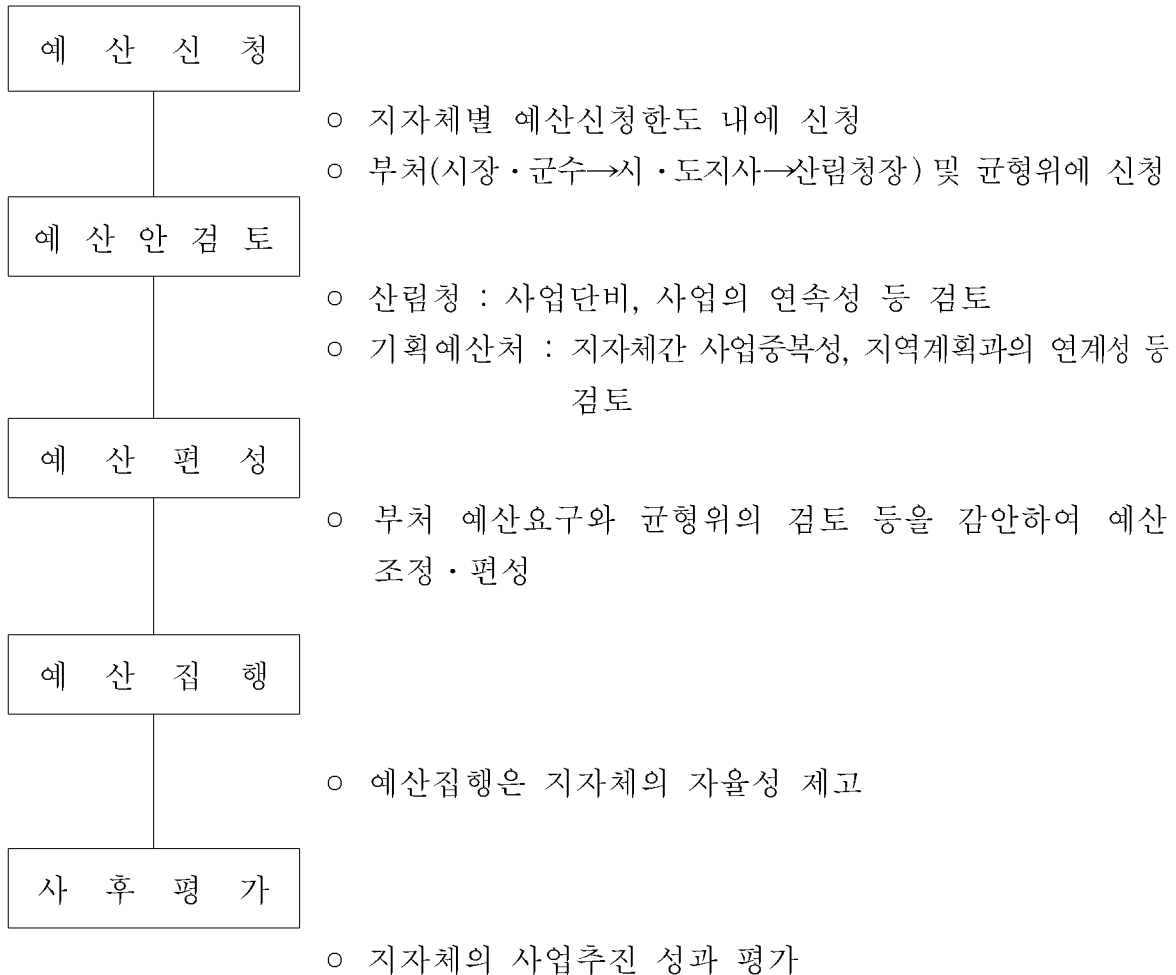
-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당일 방문이 가능한 5ha 이상의 공유림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 숲속수련장

- 운영중인 공유림 자연휴양림 중 청소년의 심신순화 및 심신수련의 장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다. 신청절차(균특)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 대상지 최종확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산림청장 귀하 </div>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과장 김상균, 임업사무관 고연섭)입니다.

1. 목적

- 도시숲 확충과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 생태계 기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정비
-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를 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확대에 의한 성과 제고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	도시숲(개소)	-	70	81	70	75	80
	가로수(km)	-	433	380.51	1,480	1,900	1,707
사업비	계	-	25,526	42,064	26,755	28,092	30,936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10,819 14,707	17,894 24,170	11,148 15,607	11,705 16,387	12,890 18,046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급속한 도시개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 부족
- 도시숲 관리부실로 생태적 건강성 및 기능 저하
- 도시숲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 증가

○ 지원대상자

- 도시숲 조성·관리 : 시·도(시·군)
- 가로수 조성·관리 : 시·도(시·군)

○ 지원단가 및 조건

- 공유지도시숲 조성
 - 단가 209,712천원/1ha(국고 50%, 지방비 50%)
- 가로수 조성
 - 단가 : 조성 41,396천원/km(국고 30%, 지방비 70%)
- 도시산림공원 조성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42,064	17,894	17,894	-	24,170	-
공유지도시숲 조성(개소)	71	15,287	7,643	7,643	-	7,644	-
가로수 조성(km)	380.51	15,693	4,709	4,709	-	10,984	-
도시산림공원 조성(개소)	10	11,084	5,542	5,542	-	5,542	-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산림휴양정책과(042-481-4218)
- 시·도(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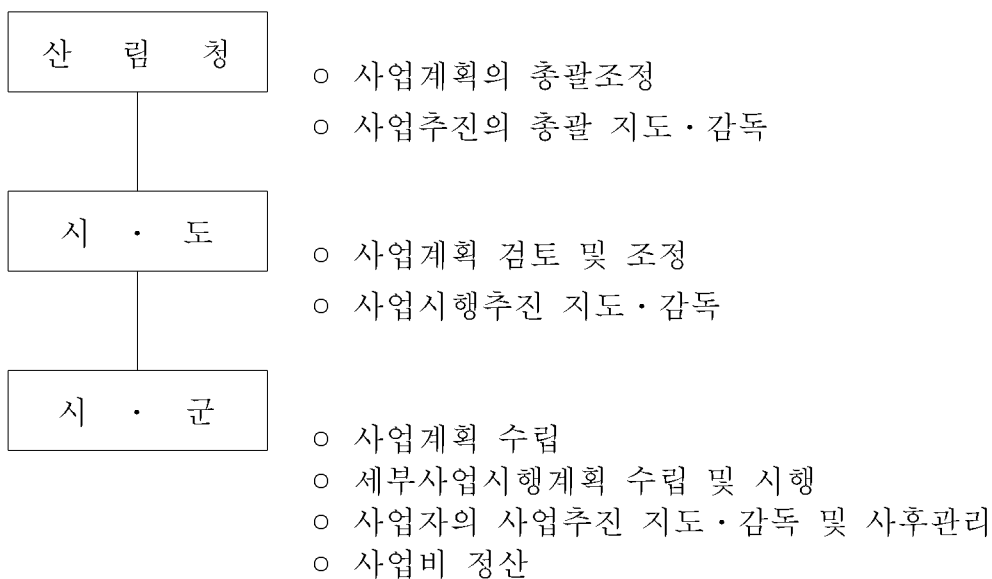
- 시·도(시·군)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시·도(시·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보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조성관리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나. 사업대상지 선정

<공유지도시숲 조성>

- 행정구역이 읍(면)이상인 지역의 도심지내 자투리 녹화 대상지
- 이용자가 많은 생활 주변 지역 선정
- 토지매입비는 불가, 대단위 편의·위락시설은 배제

<가로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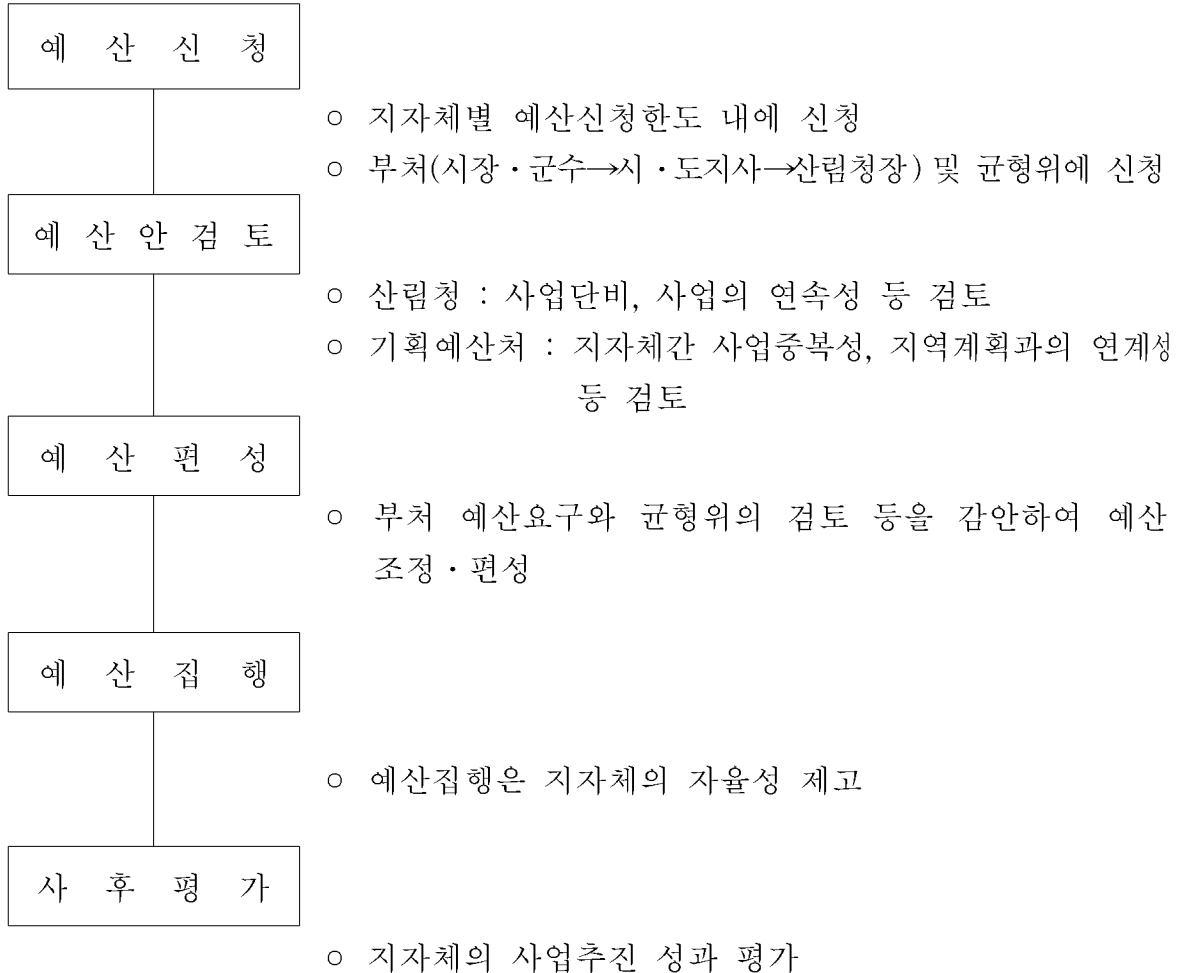
-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한 가로수 조성계획지

<도시산림공원 조성>

- 행정구역이 읍(면)이상인 지역에 조성하는 대규모 생태형 종합 테마숲
- 개별 계획을 검토 반영

다. 신청절차(균특)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보조)



라.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요구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또는 심사하여 지원대상지 최종확정

【별지 제1호서식】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원 여 건	민원 해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div style="text-align: center;"> <p>년 월 일</p> <p>산림청장 귀하</p> </div>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김성륜, 임업사무관 박산우)입니다.

1. 목 적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으로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국립수목원 확충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를 위한 산림박물관 건립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2조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 업 량	21	22	23	27	27	
○ 국립수목원(개소)	14	18	16	21	21	
○ 산림박물관(개소)	7	4	7	6	6	
사	계	154,296	22,735	25,110	34,034	61,458
업	- 보 조	70,341	11,568	12,555	17,017	30,729
비	- 용 자	-	-	-	-	-
	- 지 방 비	83,955	11,167	12,555	17,017	30,729
	- 자 부 담	-	-	-	-	-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과 UN의 생물다양성협약('92)에 따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유출방지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보전, 확보, 이용을 둘러싼 경쟁 심화됨
- 식물유전자원과 산림사료를 보전하고 희귀·특산식물 등 유용한 자생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함으로써,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전한 산림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

○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공립수목원

- 증식 및 재배시설 : 묘포장, 증식온실 등
- 관리시설 : 관리사, 연구실 등
- 전시시설 : 교목·관목·초본식물전시원,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등
- 편익시설 :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 산림박물관

- 전시관 및 산림사료, 산림생물표본 등 내부전시물, 자연학습교육자료, 기타 각종 부대시설로서 공립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조성

○ 개소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공립수목원 : 1년 설계, 3년 시공, 60억원 규모(국고 50%)
- 산림박물관 : 1년 설계, 2년 시공, 40억원 규모(국고 50%)

※ 총사업비는 개소별 사업계획 및 설계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7	34,034	17,017	17,017	-	17,017	-
○ 공립수목원	21	27,934	13,967	13,967		13,967	
- 설 계	1	500	250	250		250	
- 조 성	8	16,138	8,069	8,069		8,069	
- 확 대	4	8,600	4,300	4,300		4,300	
- 보 완	8	2,696	1,348	1,348		1,348	
○ 산림박물관	6	6,100	3,050	3,050		3,050	
- 설 계	-	-	-	-		-	
- 조 성	3	3,800	1,900	1,900		1,900	
- 확 대	-	-	-	-		-	
- 보 완	3	2,300	1,150	1,150		1,150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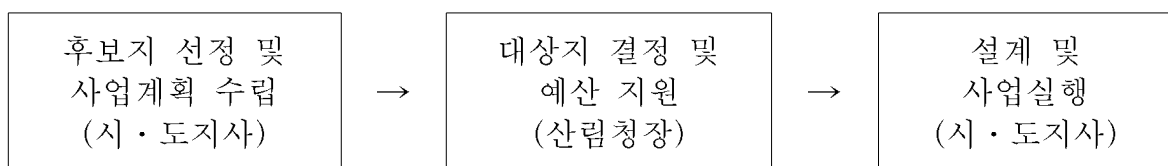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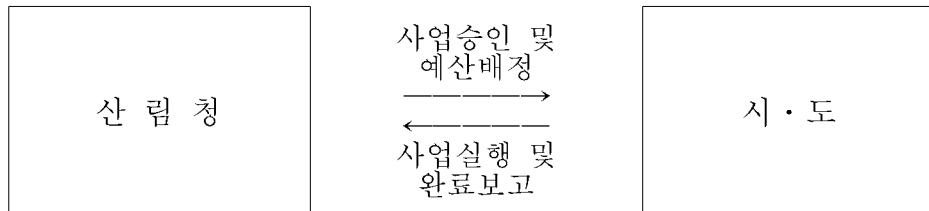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산림보호과(042-481-4248~9)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수목원, 박물관의 시설 유지·관리와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2005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 외국의 수목원·관련기관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신고(시·도→국립수목원)
-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및 교류상황 보고(시·도 → 산림청)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대상지 선정

○ 신규 조성 대상지 선정

- 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한 후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시 예산반영 여부를 산림청 의견으로 제출
 - 타당성 심사시 수목원진흥위원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등 전문가 자문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 가능성,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제출

○ 수목원은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전시에 적합한 산림 또는 토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10ha이상인 공유림으로 선정

○ 산림박물관은 산림사료, 산림생물표본 등 전시물의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한 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조성

○ 보완·확대사업 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가 부지확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제출
- 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한 후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시 예산반영 여부를 산림청 의견으로 제출

※ 수목원 보완·확대 사업비는 개소당 기준단비 60억원(국비 50%) 및 조성 후 6년간 보완 사업비 매년 2억원 초과 예산신청 불가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 · 산림박물관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 · 도, 시 · 군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 · 허가 명	인 · 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 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p style="margin: 0;">년 월 일</p> <p style="margin: 0;">산림청장 귀하</p>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김성륜, 임업사무관 박산우)입니다.

1. 목 적

- 산림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과 산림문화공간으로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 연구를 위한 생태숲 조성
- 각종 행정절차(인·허가 등) 완료 및 사업부지 확보된 개소 우선 지원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 업 량		8	12	17	21	21
○ 생 태 숲(개소)		8	12	17	21	21
사 업 비	계	11,365	10,101	15,020	24,068	49,559
	- 보 조	6,449	5,411	7,939	12,320	27,883
	- 용 자	-	-	-	-	-
	- 지 방 비	4,916	4,690	7,081	11,748	21,676
	- 자 부 담	-	-	-	-	-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과 UN의 생물다양성협약('92)에 따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유출방지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보전, 확보, 이용을 둘러싼 경쟁 심화됨
- 식물유전자원과 산림사료를 보전하고 희귀·특산식물 등 유용한 자생 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함으로써,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전한 산림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

○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유용식물원, 시험전시림,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복원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 해안, 계곡, 고산습지, 동굴생태 등 식생여건에 따른 생태관찰원
- 탐방로, 관리사, 증식·재배온실, 시험양묘포지 연구기반 시설 등

※ 관리사, 연구동 등 각종 건축물의 시설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개소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생 태 숲 : 1년 설계, 5년 시공, 50억원 규모(국고 50%)

※ 총사업비는 개소별 사업계획 및 설계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1	24,068	12,320	12,320		11,748	
○ 생 태 숲	21	24,068	12,320	12,320		11,748	
- 설 계	3	628	314	314		314	
- 조 성	18	23,440	12,006	12,006		11,434	
- 화 대	-	-	-	-		-	
- 보 완	-	-	-	-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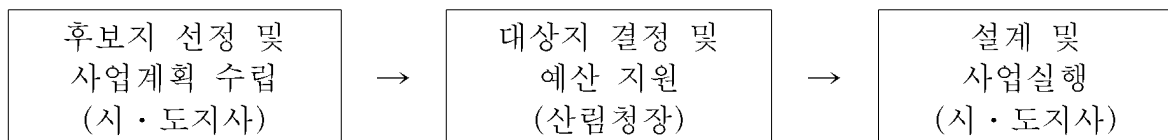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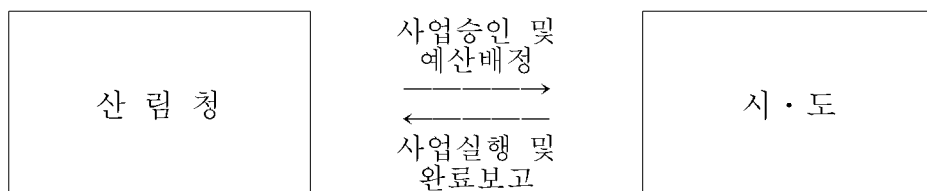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산림보호과(042-481-4248~9)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생태숲의 시설 유지·관리와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2005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대상지 선정

- 신규 조성 대상지 선정
 - 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한 후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시 예산반영 여부를 산림청 의견으로 제출
 - 타당성 심사시 수목원진흥위원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등 전문가 자문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 가능성,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제출
- 일단의 면적이 50ha 이상인 공유림으로서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선정
 - 대상지내 특이한 소생물권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의 서식처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대상지내 교목류, 관목류,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종류(종, 아종, 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이상의 식물종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역사성·문화성의 보존과 전통적 생물자원의 원식생 복원으로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지역별, 기후대별, 식생천이별 등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수익권이 확보된 사유림도 가능
- 보완·확대사업 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가 부지확보, 관련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등 사업추진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에 제출
 - 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한 후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시 예산반영 여부를 산림청 의견으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생태숲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시·도, 시·군

입 지 장 소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 지: 자 %		
지방비 부담계획 (부지매입비 포함)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부 지 면 적(ha)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외의 부지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 · 허 가 의 종 류	인·허가 명	인·허가 관계 전망		
민원 처리 계획	민원 여 건	민 원 해 소 방 안		
국토이용계획				
기 타 사 항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년 월 일</p> <p style="margin: 0;">산림청장 귀하</p>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과(과장 최덕호, 지방임업사무관 고중인)입니다.

1. 목 적

-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기존임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철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신 설
 -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 구현을 위하여 품질우선의 임도를 설치
 -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대상지에 우선 설치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간선임도 위주로 설치
- 구조개량·보수
 -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구조개량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재산피해 및 경관저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본계획)
- 산림법 제1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임도설치 등)
- 산림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3-'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 이후	
○ 사업량(km)						
- 신설	8,479	90	232	243	350	
- 구조개량	3,449	985	757	716	1,164	
- 보수 등	2,429	817	712	844	1,000	
사업비	계	681,333	69,436	63,274	63,820	95,974
	보조	340,531	55,550	50,618	51,056	76,779
	지방비	277,885	13,810	6,328	6,383	9,598
	자부담	62,917	76	6,328	6,381	9,597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요

- 조림·육림·벌채·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오지 교통개선 및 농산촌지역개발을 위하여 산림안에 임도(숲길)를 설치
-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확대로 재해방지 및 활용도 제고

○ 지원대상

- 신설 : 당해연도 간선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임도 예정노선으로서 임도 시설계획이 확정된 임도
- 구조개량·보수 : 가옥·농경지·주요시설 등 피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 지원규모

-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현실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3,820	51,056	51,056	-	6,383	6,381
○ 신 설	243	30,388	24,310	24,310	-	3,039	3,039
○ 구조개량	716	29,339	23,472	23,472	-	2,934	2,933
○ 보 수 등	844	4,093	3,274	3,274	-	410	40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치산과(042-481-4270~6)
- 시도 :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부서

다. 예정지선정

- 신 설
 - 선정기준
 -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농산촌 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선정방법
 - 간선임도설치계획이 수립된 임도중 산림법 제10조의5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노선
- 구조개량·보수
 - 구조개량사업계획에 의한 피해우려지역과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

라. 사업시행

- 신설임도의 경우 사업시행 전년도에 임도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
- 실시설계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년도에 완료

마. 실행체계

- 산림청 : 국고 소요예산(균특)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도
 - 익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임도의 타당성평가 실시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자체 사업계획수립 시·군에 사업지시
- 시·군·구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산주자부담금 확보 및 사업설계·발주, 실행지도·감독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정산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2005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행정사항>

- 사후관리 : 국고보조로 설치한 임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임도시설 입지심사 요구서

시행 도 :

사 업 계 획	총사업비(천원)	보 조 율	조성기간	주요시설 내용
		국:80 지:10 자:10%	1984년~계속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지방비 부담계획	의회 승인여부 (증빙서류 붙임)	년 차 별 지 방 비 부 담 계 획		
		('05)6,328백만원, ('06) 6,382백만원,		
임관선 1km이내 임상	천 연 립	km, 국고	백만원	
	혼 효 립	km, 국고	백만원	
	인 공 립	km, 국고	백만원	
임관선 1km이내 영림계획 작성 여부	기 영림계획 작성 지	km, 국고	백만원	
	3년이내 영림계획 작성계획지	km, 국고	백만원	
	영림계획 작성 계획이 없는 임지	km, 국고	백만원	
임도시설 목적 등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산림경영기반 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o 기존 임도의 활용도제고를 위한 유지·관리철저 		
	타당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산림법제1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는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설치하고 있음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산림청장 귀하</p>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과(과장 김성륜, 임업사무관 박산우) 입니다.

1. 목 적

- 지리산 축소모형에 수목, 야생화를 식재하여 작은 지리산을 조성하고 산행전 사전답사와 현장체험 교육장 및 생태문화 관광명소로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야생화를 식재하여 현장체험 및 생태문화 관광명소 조성

3.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3~'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안)	2007년이후
사 업 량(개소)					1	
○ 야생화타운					1	
사 업 비	계				1,000	
	- 보조				500	
	- 융자				-	
	- 지방비				500	
	- 자부담				-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지리산 축소모형 성토 및 작은 지리산 조성
 - 지리산 식생수목, 야생화식재
 - 환경 웰빙시대에 부응한 기능별, 성분별 식재 상품개발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	1,000	500	500		500	
○ 야생화타운	1	1,000	500	500		500	
- 설 계	-	-	-	-		-	
- 조 성	1	1,000	500	500		500	
- 확 대	-	-	-	-		-	
- 보 완	-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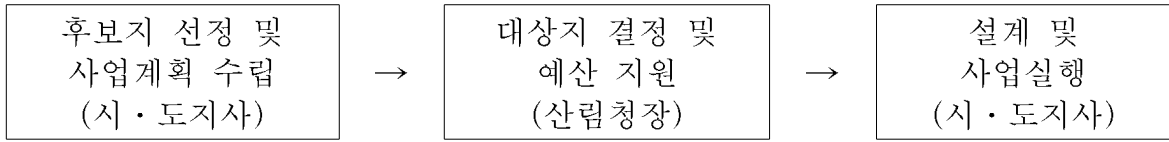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산림보호과(042-481-42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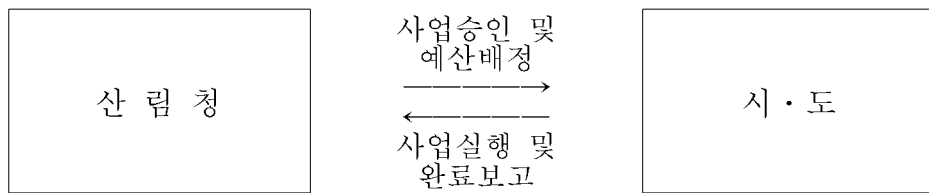
- 시·도 : 산림(녹지)관련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 2005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반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구조정책과(과장 김성민, 행정사무관 이정형)입니다.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지원
-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 및 품목을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혁신 활동 유도
-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된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 지역농업클러스터 :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産·學·官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 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성요소 : 과학기술체계, 생산체계, 기업지원체계와 같은 핵심요소가 연계되는 가운데 이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시켜주는 시스템 연계기관, 기획·조정기관, 혁신인프라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 제44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4. 연도별 지원계획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 지역농업 클러스터	계	24,000	40,000	120,000	192,000	1,348,000
	국 고	12,000	20,000	60,000	96,000	674,000
	지방비	12,000	20,000	60,000	96,000	674,000

※ 투융자계획은 잠정적인 계획이며, 시범사업('05~'07, 20개소)을 통해 클러스터 정책 및 사업성 검증 후 2013년까지 100개소 육성계획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 개요 >

가. 2006년도 예산

- 국고 예산 총액 : 20,000백만원(운영비 150, 용역비 200, 사업비 19,650)
 - 사업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 3,150, 자치단체 자본보조 16,500
- 사업량 : 20개 클러스터사업단

나.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사업단, 위원회, 포럼 등 다양), 조직형태는 지방의 자율의사에 의해 결정 - 구성범위 : 시·군, 복수시·군, 도 단위의 산·학·관으로 구성 - 역할 : 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 클러스터 사업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업시행주체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

다. 지원조건

- 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자부담을 부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라.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
 -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농지 활용형 생산기반정비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개발 및 관리, 농산물이력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
-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은 현재사업과 연계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유도

- 지원 배제 및 제한
 - 부지매입비
 -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가능
 - 행사성 경비.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 경상사업비의 10%범위내에서 가능

마. 사업신청

- 1개 시·군 범위 사업단 : 해당 시·군에 신청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 초광역 범위 사업단 : 거점 시·도에 신청
- ※ 2006년도는 '05년 선정된 20개 사업단의 계속사업비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선정하지 않을 계획임(다만, '05~'07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정책 검증 후 '07년부터 선정할 계획임)

< 사업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범사업에는 특별시·광역시 제외)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총괄) : 구조정책과(02-500-2022)

※ 클러스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 담당과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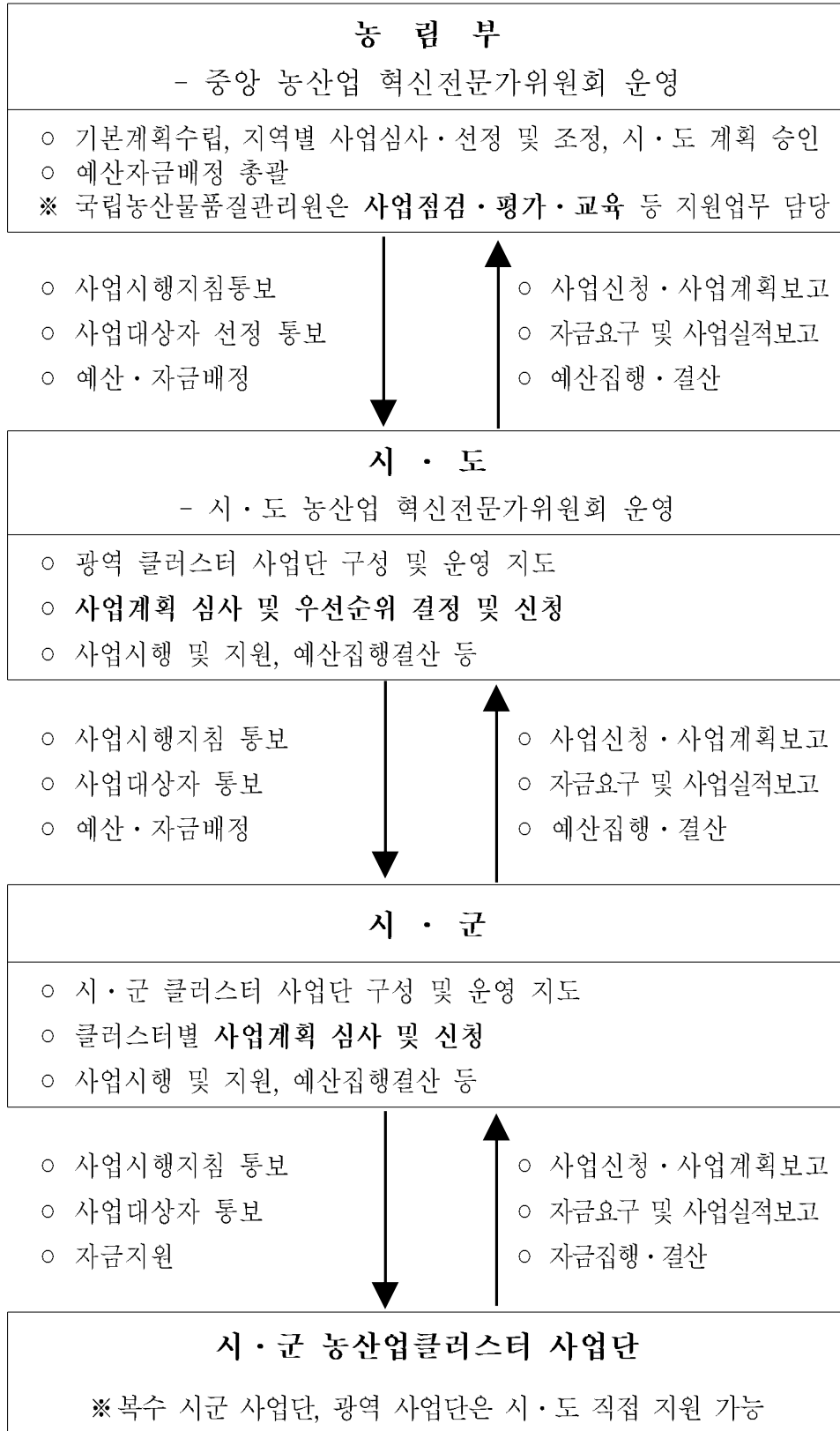
○ 시·도 : 당해 직제에 따름(농정, 농산 등 정책총괄 부서)

○ 시·군·자치구 : 당해 직제에 따름(농정, 산업 등 정책총괄 부서)

다. 사업시행체계

○ 사업시행지침 마련(농림부) → 클러스터사업 계획수립(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자율심사·평가(시·도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 사업신청서 제출(시·도)
→ 사업심사·선정 및 사업비 조정(농림부) → 예산 및 자금배정(농림부→시·도→시·군)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시·도, 시·군,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 사업시행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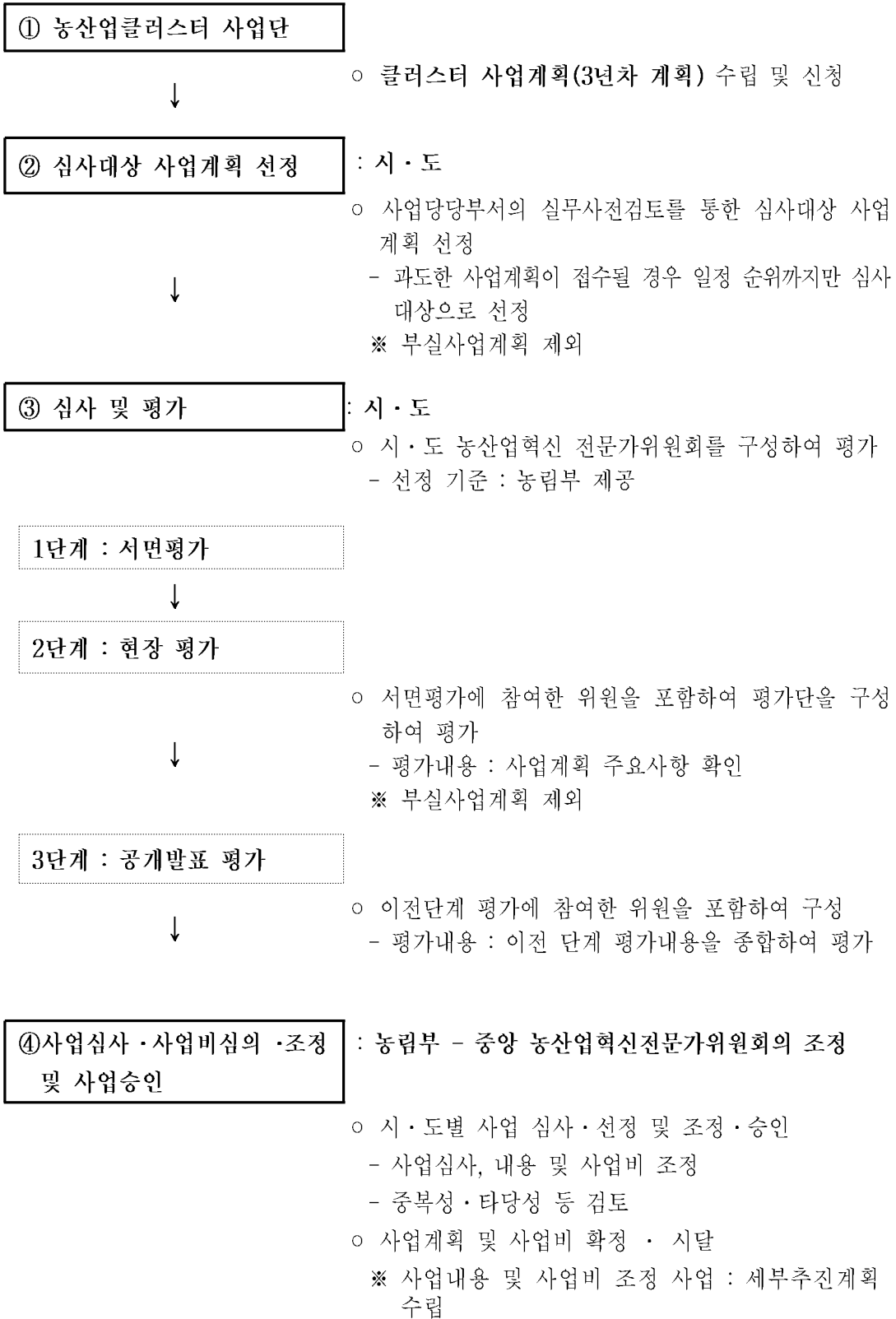
< 사업의 선정 >

가. 선정기준 : 중앙제시 선정기준(70점)에 지방 자체 선정기준(30점)을 지표로 활용

○ 중앙제시 선정 기준(예) : 배점 및 심사기준 별도 제공

1.사업의 필요성	1-1. 지역농업 발전 가능성(대표성)
	1-2. 지역농업의 활성화(특화·부존자원 활용) 정도
	1-3. 해당부문(상품)시장의 성장 및 확대 가능성
	1-4. 자본의 지역내 축적가능성
2.사업계획의 적정성	2-1. 사업목표의 명확성
	2-2. 추진전략의 구체성·적정성
	2-3. 혁신요소의 적정성 (혁신성, 대표성)
	2-4. 세부사업간 합리적 연계성 및 기존시설의 활용성
	2-5. 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3.사업추진주체 (너더 외) 적합성	3-1. 추진주체의 구체적 선출 및 책임성
	3-2. 추진주체의 경력·사업추진능력(혁신성)
	3-3. 구성주체의 연계성 및 응집성(대표성)
4.사업의 유효성	4-1. 현재까지 추진실적 (자발성)
	4-2. 타 사업과 연계정도(투자효율성)
	4-3. 심사평가/피드백시스템
	4-4. 성공가능성

나. 선정 절차와 방법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유형

①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

- 기초단위 : 단일 시군구 또는 복수 시군구 클러스터
- 광역단위 : 광역 시도별 1개 또는 복수의 클러스터
- 초광역단위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클러스터

② 주도적 혁신주체에 의한 구분

- 대학·연구소 주도형 : 대학·연구소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 농산업을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형성
- 생산자단체 주도형 : 생산자단체 및 연합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수출·유통부문 등이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
- 산업 관련기업 주도형 : 농산업 관련기업들을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형태
- 지자체 주도형 : 지자체가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도·구축하는 전형적인 지방 농정형

③ 특성화 정도에 따른 구분

- 생산·유통 주도형 클러스터 : 특정 품목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의 수평적 참여형태
- 가공 주도형 클러스터 : 특정 품목의 가공업체(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의 수평적 참여형태
- 테마 주도형 클러스터 : 하나의 공통된 테마를 중심으로 관련주체의 수평적 참여 형태

< 사업시행 >

가. 사업 시행 및 계획 변경

- 농림부에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확정된 사업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지원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나.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사업비의 20% 범위안에서 이월할 수 있음

다.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농산업클러스터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라.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서식 별도 통보]

마.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 농림사업실시규정 참고

< 사업점검 및 평가 >

가. 자체평가

- 평가 주체 : 시·도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말까지
 - 평가 방법 : 사업선정에 참여한 평가단 활용
 - 평가 방향 : 자체 평가지표의 적정성,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 평가결과 농림부 제출

나. 중앙평가

- 평가 주체 : 농림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익년도 2월)
 - ※ 중간평가 기능
 - 평가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 평가단 평가(필요시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성과분석 용역 의뢰)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지자체별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행정사항 >

가. 보고 · 기타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06년도는 신규사업 선정계획이 없으므로 신청할 필요없음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로 제출)
- 월별 자금배정 요구 :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 → 농림부 : 전월 15일
- 사업추진 실적보고 :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이월 현황보고 : 익년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결과보고 : 익년도 3월 20일까지 [서식 별도통보]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07년 정부예산(안) 확정 후 별도 안내할 계획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8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면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4, 오른쪽25.4,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농림자료실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 청 자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					
	클러스터사업단	기관명	주소				
	총괄책임자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명	전화	Fax
참여기관		(총 개)					
신 청 내 역	사업명						
	사업유형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안) 유형 참조					
	사업목표						
	연차별 투·융자계획	구분		'07	'08	'09	계
		보조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분야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핵심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농산업클러스터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20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귀하

[첨부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3개년 계획)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클러스터 추진 동기를 포함
- 사업내용
- 현재까지 활동 및 추진실적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분야는 별도 표시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자체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 클러스터 사업 이전과 사업시행후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변화를 포함하되 단계별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II. 사업운영계획

- 분야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작성
- 연계지원 분야 및 추진 방안
 - 타 농림사업 분야 등
- 사업추진일정

Ⅲ. 재원조달계획

Ⅳ. 당해년도 사업계획

Ⅴ. 중장기 발전계획

- 현재의 단계를 스스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단계별(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 ※ 단계별 구분(예) : 준비 → 도입 → 성장 → 도약(변화) → 안정

Ⅵ.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현황

- 각 기관의 현황 및 역할을 작성

[첨부2] 예시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 협약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들의 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 및 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 1.
- 2.
- 3.

200 년 월 일

(지자체장)	_____	(인)	직인
(총괄책임자)	_____	(인)	직인
(참여기관장A)	_____	(인)	직인
(참여기관장B)	_____	(인)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2006년도 00월 국고보조금 자금 신청서

(○○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교부 결정액	자금배정			사업 추진 진도
			기배정	금회 배정	누계	
합 계						

※ 시·도지사는 사업진도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점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별지에 작성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실적(년 분기말 현재)

00 시·도

(금액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세부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진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합 계									

※ 단위사업까지 분리하여 작성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조치 결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이월 현황

〇〇시·도

(단위 : 백만원)

위치 (시군)	사업명	총사업비				이월액				이월사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A4 횡서식으로 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작성 보고

- 1) 이월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준수
- 2) 이월사유는 6하원칙에 준하여 자세히 기술(별지사용 가능)